



통합 편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통합 편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발간사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가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실질 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자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중국과의 FTA는 그 어떤 FTA 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FTA교역 규모가 전체 교역규모의 60%를 넘어섬으로써 이제,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운명과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기업, 그 중에도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FTA 활용이 기대한 만큼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의 핵심인 원산지증명서를 원활히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초자료 관리에서부터 원산지결정을 위한 품목분류 확인, 관련 서류의 작성법까지 상세한 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의 100대 주요 수출물품을 선정하여, 농림수산물·가공식품, 화학, 섬유 및 의류, 기계·자동차 산업 등 각 분야별로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해설과 같은 실제적인 활용방법을 수록한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책자를 최대한 이용하여 'FTA 활용 첫 단추'가 되는 원산지 기초 자료 작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관세청장 김낙희

CONTENTS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01	냉동 홍게살 (제1605.10호)	14
02	파스타 (제1902.19호/제1902.30호)	19
03	유자차 (제2008.30호)	27
04	된장 (제2103.90호)	34
05	조미 김 (제2106.90호)	39
06	알로에 음료 (제2202.90호)	45
07	홍삼드링크 (제2202.90호)	52

화학산업 편

08	윤활제 (제2710.19호)	60
09	부탄가스 (제2711.13호)	66
10	프로필렌 글리콜 (제2905.32호)	72
11	디프로필렌 글리콜 (제2909.49호)	79
12	열전사지 (제3212.10호)	84
13	잉크 (제3215.19호)	91
14	립스틱 등 (제3304.10호)	98
15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제3304.20호)	105
16	바디워시, 세안제 (제3405호)	111
17	접착제 (제3506.10호)	119
18	토너 (제3707.90호)	126
19	직물발수제 (제3809.91호)	132
20	콘크리트용 조제점결제 (제3824.40호)	138
21	햇팩 (제3824.90호)	144

CONTENTS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

22	L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제3901.10호)	152
23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제3901.20호)	158
24	폴리프로필렌 (제3902.10호)	164
25	폴리스티렌 (제3903호)	170
26	폴리카보네이트 (제3907.40호)	177
27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제3907.60호)	182
28	PVC(폴리염화비닐) 타일 (제3918.10호)	188
29	플라스틱제 접착테이프 (제3919.10호)	194
30	PVC(폴리염화비닐) 필름 (제3920.43/49호)	201
31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제3920.62호)	209
32	폼 보드 (제3921.11호)	215
33	플라스틱 용기 (제3923호)	220
34	플라스틱제 밀폐용기 (제3924.10호)	226
35	가황한 고무제품 (제4016호)	231
36	패션 에코백 (제4202.92호)	236

섬유·의류 산업

37	합성필라멘트사 (제5402호)	244
38	합성모노필라멘트 (제5404.19호)	250
39	나일론 직물 (제5407.42호)	255
40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5407.10호)	263
41	합성필라멘트 직물(합성필라멘트 85% 이상) (제5407.72호)	272
42	아세테이트 직물 (제5408.22호)	279
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제5503.20호)	286
44	재생 · 반합성 스테이플 직물 (제5516.22호)	292
45	라셀 레이스 직물 (제5804.21호)	300
46	자수 직물(Embroidery Fabric) (제5810.92호)	308
47	폴리우레탄 직물 (제5903.20호)	314
48	광택 직물 (제5907호)	320
49	파일 편물 (제6001호)	326

CONTENTS

50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제6004호)	333
51	경편직 직물 (제6005호)	339
52	합성 · 반합성의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제6006호)	347
53	유아용 양말 (제6111호)	356
54	타이즈 (제6115.29호)	362
55	양털 양말 (제6115.94호)	369
56	면 양말 (제6115.95호)	375
57	합성섬유제 양말 (제6115.96호)	381
58	플라스틱 피복 장갑 (제6116.10호)	388
59	나일론 장갑 (제6116.93호)	394
60	청소용 포(Wiping Cloth) (제6307.10호)	400

기계·자동차 산업 편

61	연마지 (제6805.20호)	408
62	손톱광택기 (제6805.30호)	413
63	글래스 록(Glass Lock) (제7013.49호)	419
64	모조다이아몬드(Rhinestone) (제7018.10호)	425
65	금 장식용품 (제7113.19호)	430
66	모조신변장식용품 (제7117호)	435
67	알루미늄 주방용품 (제7615.19호)	442
68	프레싱 · 스탬핑 · 펀칭용 공구 (제8207.30호)	448
69	밀링용 공구 (제8207.70호)	455
70	손톱깎이 (제8214.20호)	460
71	금고 (제8303.00호)	466
72	플렉시블 튜빙 (제8307.10호)	473

CONTENTS

기계류와 전기기기

73	액체펌프 (제8413.30호)	480
74	냉장 및 냉동기구 (제8418.69호)	487
75	냉각기 배양기·가열기 등 온도변화장치 (제8419.89호)	497
76	물 정화기 (제8421.99호)	508
77	포장기계 (제8422.40호)	514
78	사출식 금형 (제8480.71호)	522
79	밸브 (제8481.80호)	529
80	인버터 (제8504.40호)	536
81	축전지 (제8507.80호)	542
82	시동발전기 (제8511.40호)	550
83	샤우나 캐빈 (제8516.79호)	558
84	유무선 송수신장치 (제8517.62호)	567
85	휴대용 오디오 (제8519.81호)	575
86	CCTV 카메라 (제8525.80호)	581
87	산업용 모니터 (제8528.59호)	590
88	안테나 (제8529.10호)	598
89	전기제어용 패널 (제8537.10호)	605
90	전기절연 케이블 (제8544.42호)	612

광학용품 및 잡품

91	콘택트 렌즈 (제9001.30호)	620
92	안경렌즈 (제9001.50호)	626
93	램프 (제9405.40호)	632
94	조립용 키트 (제9503.00호)	639
95	클레이 샌드 (제9503.00호)	644
96	러닝머신 (제9506.91호)	649
97	칫솔 (제9603.21호)	656
98	화장용 브러시 (제9603.29호)	663
99	마커 (제9608.20호)	670
100	화장용 스펀지 (제9616.20호)	675
	부록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특혜 수출입실적 농림수산물 / 화학산업 / 섬유 · 의류 산업 / 기계 · 자동차 산업	681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01 냉동 홍게살 (제1605.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16류에는 육 또는 설육, 피 및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가장 흔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새우와 보리새우·바닷가재(lobster)·가재(crawfish·cray fish)·홍합·문어·오징어 및 달팽이가 있다.

호	소호	품명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0	게
	2	새우류
	21	밀폐용기에 넣지 아니한 것
	29	기타
	30	바닷가재
	40	기타 갑각류
	5	연체동물
	51	굴
	52	가리비와 조개 (여왕가리비와 조개를 포함한다)
	53	홍합
	54	갑오징어와 오징어
	55	문어
	56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
	57	전복
	58	달팽이 (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호	소 호	품 명
	59	기타
	6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61	해삼
	62	성게
	63	해파리
	6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게는 다리가 10개인 절지동물로 국내에 대게, 참게 등 다양한 종류의 게가 서식하며 뛰어난 맛으로 유명하다. 홍게 살이란 게를 익혀 살만 분리시킨 것으로 게는 익히면 그 안의 색소와 반응하여 주황색을 띠게 되는데 이로 인해 홍게 살로 불린다.

HS
제1605.10호

품명
냉동 홍게살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	100	홍게(냉동하거나 냉동하지 않은 것)
2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	100	정제수
3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2501	100	소금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공정

냉동 홍게살은 홍게의 껍질을 제거한 후 이를 소금과 함께 자숙하고 이를 냉각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다시 동결하는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	제품 품번	FTA-BOM-01
	제품명	냉동 홍게살
	HS Code	160510
	EXW(KRW)	930
	FOB(KRW)	950
	중량(kg)	3

원재료 명	부품 품번	FTA-BOM-01-01	FTA-BOM-01-02	FTA-BOM-01-03
	부품명	홍게	정제수	소금
	소요량	1	0.1	20
	단 위	Kg	ℓ	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업체명	A-001	A-002	A-003
	구매단가(KRW)	600	80	100
	HS Code [2012]	030614	220190	250100
	HS Code [2007]	030614	220190	250100
	HS Code [2002]	030614	220190	25010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비 고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한-터키
FTA)

제1605.10호에 분류되는 홍계 살에 적용되는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2-4 : 특정 류로부터 생산+특정 류 완전생산 '결합기준'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한-EU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제3류에 분류되는 원재료는 체약상대국에서 완전생산된 원산지물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냉동 홍계살의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홍계는 제0306호에 분류되므로 홍계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이어야 하는데 동 사례의 경우 홍계의 원산지가 역외산이므로 사례의 홍계살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EU 및 한-터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홍계를 역내산으로 대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정제수 및 소금 등 역외산이 사용되어도 무방하다.



02 파스타 (제1902.19호/제1902.3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1902호에는 파스타가 분류되는데 조리여부와 파스타의 속을 채운 것인지에 따라 분류한다. 제1902.19호의 파스타는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로서 국수, 당면, 냉면 등이 분류되며 제1902.30호에의 파스타에는 조리한 것을 포함한 인스턴트 면류 등이 포함된다.

호	소호	품명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1	조란을 넣은 것
	19	기타
	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	기타의 파스타
	40	쿠우스쿠우스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1902.19호

품명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국수)



HS
제1902.30호

품명
인스턴트
라면



제1902호에 분류되는 국수와 면(Noodle)은 라면, 국수, 우동 등에 사용되는 식자재 원재료로서 주로 밀가루와 소금 등을 반죽하여 길고 가느다란 형태로 뽑아 이를 건조한 후 기름에 튀기거나 열을 가하는 방식을 통하여 소매판매용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파스타의 일반적인 소요자재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와 인스턴트라면에는 공통적으로 밀가루와 소금, 물 등 밀가루반죽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원재료가 사용된다. 인스턴트 라면의 경우 면의 점성을 높이기 위한 전분, 맛을 돋우기 위한 각종 조제식료품, 그리고 보관과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동식물성 기름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30	50	beaf
2	육과 식용 설육(脬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脬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0210.20	50	beef powder
3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 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20	50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	50	whey powder
5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100	onion powder
6	후추[파이퍼(Piper) 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캡시쿰(Capsicum) 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 속의 열매	0904.12	100	black pepper powder
7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1.00	100	wheat flour
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13	50	patato starch
9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19	33	히드록시프로필 인산이전분
10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 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 (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2	100	guargum
11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90	50	soybean oil
12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90	100	palm oil
13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90	100	emulsified oil
14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1603.00	50	beef extract
15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100	sugar
16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림[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90	50	sugar solution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7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90	100	vegetable flavor enhancer
18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10	100	water
19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 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2501.00	100	salt
2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	100	calcium phosphate
21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	100	sodium carbonate
22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39	100	
23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100	citric acid
24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100	disodium succinate
25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20	50	lecithin
26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 관능화합물	2924.19	50	MSG
27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6.23	50	riboflavin
28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100	modified starch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9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50	disodium
30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	100	paper cup
31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료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20	50	powder soup bag

※ 비중(%) = 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파스타는 밀가루와 소금을 반죽하여 큰 덩어리 형태의 것으로 만든 후에 이를 20~25℃의 온도에서 6시간 정도 숙성시킨다. 숙성된 밀가루 반죽은 얇고 넓게 편 후에 길고 가느다란 면 형태로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인스턴트면의 경우 이것을 물 또는 기름에 튀겨 장기간 보관에 알맞도록 한 후에 소매용의 것은 적절한 양으로 계량하여 동결하고 검사 및 포장을 거쳐 출하한다.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제2류, 제3류,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제1001호 및 제1101호의 것은 제외한다)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1. 국수 (듀럼밀 새몰리나의 것은 제외한 분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서 조리되지 않고 건조된 그리고 속을 채우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1. 국수 (듀럼밀 새몰리나의 것은 제외한 분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서 조리되지 않고 건조된 그리고 속을 채우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모든 호 (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02				
	제품명	파스타				
	HS Code	190219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02-01	FTA-BOM-02-02	FTA-BOM-02-03	FTA-BOM-02-04	FTA-BOM-02-05
	부품명	건조한 채소	후추	밀가루	팜유	구아검
	소요량	100	10	800	0.1	20
	단 위	g	g	g	ℓ	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240	80	350	100	80
	HS Code [2012]	071290	090412	110100	151110	130232
	HS Code [2007]	071290	090412	110100	151110	130232
	HS Code [2002]	071290	090412	110100	151110	130232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칠레 FTA)

제1902.21호에 분류되는 인스턴트면의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2-1 : 4단위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1902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1902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5% 이상이거나,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1902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1902호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동 사례의

경우 투입원재료 중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1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은 가능하며,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5% 이상이거나,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530(350 + 100 + 8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53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48.0\%$$

따라서 파스타의 부가가치비율은 48%로 한-칠레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비율 45%를 초과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03 유자차 (제2008.3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2008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이나, 설탕, 잼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제2008호의 물품은 설탕대신 합성감미료(예 : 소르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2008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병(jars) 또는 밀폐용기·통·원통 또는 유사한 용기에 포장된다.

호	소호	품명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 (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	낙화생
	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0	파인애플
	30	감귤류 과실
	40	배
	50	살구
	60	버찌

호	소호	품명
70	복숭아(넥타린을 포함한다)	
80	초본류 딸기	
9	기타	
91	팜 하트	
93	크랜베리(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97	혼합물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유자차는 유자를 재료로 만든 차를 말하며 신맛이 많고 신경통, 관절염 등에 유효하며 주독을 풀거나 소화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자차는 엷게 저민 유자 두세 쪽을 끓은 물 한 잔에 넣어 우려 마시는 경우와 껍질을 달여 마시는 경우가 있지만, 유자청(柚子淸)을 이용한 차가 가장 널리 쓰인다.

HS
제2008.30호

품명
유자차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천연꿀	0409.00	100	꿀(honey)
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60	100	과당(fructos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14	100	구연산 (citric acid)
4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닌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9	75	카라기난
5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11	75	정백당 (sugar)
6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90	75	정제수
7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90	75	유리병 (glass bottle)
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15	50	구연산 나트륨
9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6.27	50	비타민C
10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31	50	카복시메틸셀로스 나트륨
1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50	paper label
1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90	25	올리고당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3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90	25	폴리덱스트로스
1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62	25	루땡
15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20	25	카톤박스
16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007.00	25	병마개 (bottle cap)
17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25	병뚜껑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제2008호의 유자차는 당침유자를 꿀, 과당, 카라기난 등의 첨가제와 배합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이후 살균과 포장, 냉각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된다.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식1 및 주식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¹⁾
터키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 (제20류의 주식1)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음(건조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포함한다)한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은 채소·과실 및 견과류(신선한 것에 한정한다)가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제20류의 주식2> 복숭아, 배 또는 살구를 포함(단독 또는 다른 과일과 혼합하여 사용된 것도 포함한다)하는 제2008호의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03
	제품명	유자차
	HS Code	200830
	EXW(KRW)	980
	FOB(KRW)	1,000
	중량(kg)	3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03-01	FTA-BOM-03-02	FTA-BOM-03-03	FTA-BOM-03-04
	부품명	꿀	과당	당침유자	구연산
	소요량	0.5	1	1	0.1
	단 위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구매단가(KRW)	400	150	250	30
	HS Code [2012]	040900	170260	200830	291814
	HS Code [2007]	040900	170260	200830	291814
	HS Code [2002]	040900	170260	200830	291814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인도 CEPA)

제2008.30호에 분류되는 유자차의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2-2 : 4단위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008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2008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008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2008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유자차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2008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당침유자(FTA-BOM-03-03)는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하나 역외산 원재료가 사용되어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680(400+250+3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0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80)}{\text{FOB 가격}(1,000)} \times 100 = 32.0\%$$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2.0%로 4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 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꿀(FTA-BOM-03-01)을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72.0%로 높아지게 되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꿀(FTA-BOM-03-01)을 역외산물품을 투입하고 나머지 원재료들을 역내산 물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0.0%로 높아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동 사례의 경우 한-인도 CEPA에서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완제품과 동일 세번인 당침유자(FTA-BOM-03-03)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40%로 상승하게 되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동시 충족이 가능하다.



04 된장 (제2103.9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 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

호	소호	품명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10	간장
	2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30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2103.90호

품명
된장



된장은 메주로 장을 담궈 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로 만든 장으로 메주에 소금물을 알맞게 부어 익혀서 장물을 떠내지 않고 그냥 만들기도 한다. 된장은 간장과 함께 예로부터 전해진 우리나라의 조미식품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데 기본이 되는 식품인데, 나물을 무치는 조미료나 토장국 등을 끓이는 데 이용되고 여러 반찬을 만드는 데에도 이용된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90	100	콩
2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90	100	정제수
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30	100	겨자가루
4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80/10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20	100	알코올
5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2501.00	100	소금
6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90	100	용기
7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49	100	접착지
8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100	레이블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제2103호의 된장은 제1201호의 대두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를 소금과 함께 증기를 이용하여 찐 후 효모를 이용해 발효과정을 거친다. 약 50일 전후의 발효과정 이후 플라스틱 개별포장을 통해 완제품으로 출하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1.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혼합조미료, 제2103.90.9090호의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04
	제품명	된장
	HS Code	21039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04-01	FTA-BOM-04-02	FTA-BOM-04-03	FTA-BOM-04-04	FTA-BOM-04-05
	부품명	콩	정제수	겨자가루	알코올	소금
	소요량	6	1	0.3	0.5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20	30	200	120	80
	HS Code [2012]	120190	220190	210330	220720	250100
	HS Code [2007]	120100	220190	210330	220720	250100
	HS Code [2002]	120100	220190	210330	220720	250100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2103.90호에 분류되는 된장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10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2103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07류 및 제09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원산지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

HSK : 제7류

품명 :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Edible vegetables and certain roots and tubers)

HSK : 제9류

품명 : 커피·차·마테 및 향신료(Coffee, tea, mate and spices)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으로 HS 제07류 및 제09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 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10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2103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07류 및 제09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된장의 원재료 중에는 겨자가루가 제2103호에 분류되므로, 겨자가루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사례에서의 겨자가루는 역외산이므로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한다. (최소허용기준 10% 초과)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으로 HS 제07류 및 제09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320(200 + 120) 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2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68.6\%$$

따라서, 한-아세안 FTA 협정상 된장의 부가가치비율은 68.6% 이며 40%를 초과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05 조미 김 (제2106.90호)²⁾

1 관세율표 분류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알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제2106호에 분류되는 조미 김은 식용으로서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HS
제2106.90호

품명
조미 김



2) 조미김은 우리나라에서는 제2106호에 분류되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2008호에 분류하고 있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 [복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2.21	100	마른 김
2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2	75	실리카 겔, 방습제 기능
3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50	포장 out box
4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20	25	동식물성 유지, 참기름, 들기름, 옥배유 등
5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도체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2501.00	25	정제염
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90	25	포장지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공정

수확한 생김을 건조한 후 이를 1차로 초벌 구이한다. 이후 참기름 등 식물성 유지와 소금을 첨가한 후 다시 2차 구이를 하여 조미김을 완성하고 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포장한 후 출하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 제1212.20호의 것,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4. 제2106.90호의 당시럽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6.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8.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p>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05			
	제품명	조미 김			
	HS Code	210690			
	EXW(KRW)	930			
	FOB(KRW)	950			
	중량(kg)	1.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05-01	FTA-BOM-05-02	FTA-BOM-05-03	FTA-BOM-05-04
	부품명	마른 김	살리카 겔	정제염	동식물성 유지
	소요량	100	10	10	10
	단 위	EA	g	g	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구매단가(KRW)	500	30	100	150
	HS Code [2012]	121221	281122	250100	151620
	HS Code [2007]	121220	281122	250100	151620
	HS Code [2002]	121220	281122	250100	15162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HS 2012와 2007 상이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2106.90호에 분류되는 조미김에 적용되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2-3 : 부가가치기준+특정물품 안전생산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 ② HS 제1211.20호, 제1212.20³⁾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①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3) HS 제5차 개정에 따라 제1212.21호로 변경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50, 비원산지재료가격이 280(30+100+1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5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280)}{\text{FOB 가격}(950)} \times 100 = 70.5\%$$

따라서 한-아세안 FTA 협정상 조미김의 부가가치비율은 70.5%이며 40%를 초과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② HS 제1211.20호, 제1212.21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조미김에 사용된 원재료 중 제1211.20호, 제1212.20(제1212.12호)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 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제1212.21호의 물품이 포함되었으나 원산지가 한국이므로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다.



06 알로에 음료(제2202.9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가한 광수(천연 또는 인조), 레모네이드, 오렌지수, 콜라 등과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가 포함된다. 제2202호에 있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한다. 따라서 제220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알코올의 용량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호	소호	품명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10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알로에는 알로에속(Aloe)에 속하는 식물 전체를 가리키거나 그 중 한 종을 가리킨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전 세계에 약 300종이 있다. 관엽식물로 온실에서 재배하거나 약으로 쓰려고 가정에서 기르기도 하는데, 세균과 곰팡이에 대한 살균력이 있고 독소를 중화하는 알로에틴이 들어 있으며 궤양에 효과가 있는 알로에 우르신과 항암효과가 있는 알로미틴이 들어 있다고 한다.

HS 제2202.90호

품명
알로에 음료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그 밖의 당류(糖類)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 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 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	100.0	corn syrup
2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 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99	100.0	aloe vera gel
3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100.0	젖산 칼슘 (calcium lactate) 구연산 나트륨
4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	100.0	알로에 향 (aloe flavor)
5	천연중합체(예 :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 경화 단백질, 천연고유의 화학적 유도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90	100.0	젤란검 (gellan gum)
6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	85.0	물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7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6.27	71.4	비타민 c
8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71.0	sugar
9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50	42.9	cap
10	산소헥테로고리 화합물	2932.19	28.6	수크랄로스 (sucralose)
11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30	28.6	pet
1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28.6	box
13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90	14.3	natural aloe flavor
14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黓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3.00	14.3	베타 카로틴 (beta carotene)
15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	14.3	라벨
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 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90	14.3	aluminum can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주요 제조과정

알로에 음료는 원재료인 알로에 껍을 설탕과 구연산과 배합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데, 원재료를 적절히 배합한 후 살균과정을 거쳐 용기에 주입된다. 이후 다시 한 번 살균과정을 거친 후 박스 포장 되어 완제품으로 출하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일 것 4.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재료일 것 4.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06
	제품명	알로에 음료
	HS Code	22029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06-01	FTA-BOM-06-02	FTA-BOM-06-03	FTA-BOM-06-04	FTA-BOM-06-05
	부품명	곤 시럽	알로에 베라 겔	젓산칼슘	알로에 향	젤란 검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150	480	150	40	30
	HS Code [2012]	170219	200899	291815	330210	391390
	HS Code [2007]	170219	-	291815	330210	391390
	HS Code [2002]	170219	-	291815	330210	39139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HS 2007, 2002 (신설)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
한-터키
FTA)

제2202.90호에 분류되는 알로에 음료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특정 류 부가가치충족+특정 호 원산지물품+특정 소호 완전생산 ‘결합기준’

아래의 결합된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202호가 아닌 호로부터 HS 제2202호로 변경되어야 하고,
- ② 제17류에 해당하는 당과 설탕과자를 비원산지물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투입되어야 하며,
- ③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HS 제2009호의 과일주스 중 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을 원료로 하는 과일주스를 제외한 모든 과일주스는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 한-터키 및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HS 제2009호에 해당하는 과일주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되, HS 제17류에 해당하는 재료가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된 경우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30% 미만이 사용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원산지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

HSK : 제2009호

품명 :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Fruit juices(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s, unfermented and not containing added spirit,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다만, 파인애플과 라임 또는 자몽을 원료로 하는 주스는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어도 무방

- ④ 원재료로 투입되는 HS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물품은 완전 생산된 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산지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

HSK : 1211.20

품명 : 인삼(Ginseng roots)

HSK : 1302.19

품명 : 기타(Others)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202호가 아닌 호로부터 HS 제2202호로 변경되어야 하고,

- 알로에 베라 겔의 원재료에는 제2202호에 속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한다.

② 제17류에 해당하는 당과 설탕과자를 비원산지물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투입되어야 하며,

- 알로에 베라 겔의 원재료 중 콘시럽은 제1702호에 분류되며 역외산 재료이다. 따라서 콘시럽 재료가격은 공장도가격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투입되어야 한다. 물품의 공장도가격은 1,000이며 콘시럽의 가격은 150이므로,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15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15.0\%$$

- 콘시럽의 공장도가격 비중은 15% 이므로 30% 미만에 해당된다.

③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HS 제2009호의 과일주스 중 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을 원료로 하는 과일주스를 제외한 모든 과일주스는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 알로에 베라 겔의 원재료에는 제2009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원재료로 투입되는 HS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물품은 완전생산된 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알로에 베라 겔의 원재료에는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사례의 알로에 베라 겔은 한-EU 및 한-터키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07 홍삼드링크(제2202.9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가한 광수(천연 또는 인조), 레모네이드, 오렌지수, 콜라 등과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제2202호에 있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라 함은 20℃에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한다. 따라서 제220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알코올의 용량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호 소 호	품 명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10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홍삼이란 수삼을 찌서 말린 붉은 인삼으로 중추신경에 대해 진정작용과 흥분작용이 있으며, 순환계에 작용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면서도 조혈작용과 혈당치를 저하시켜 주고 간을 보호하며 방사선에 대한 방어효과가 있고 피부를 보호하며 부드럽게 하는 작용도 있다.

HS 제2202.90호

품명
홍삼드링크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	100	홍삼
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 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	100	fructose
3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	100	정제수
4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100	구연산 (citric acid)
5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6	100	비타민
6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100	트레이
7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100	케이스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821	100	라벨
9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	100	바이알
10	천연꿀	0409.00	50	벌꿀
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10.00	50	생로알젤리
1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닌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9	50	reishi extract (ganoderma)
13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품	2106.90	50	프로폴리스
14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50	홍삼 향 (flavour)
15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007.00	50	bottle cap
16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k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10.00	50	오프너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제2202호의 홍삼드링크는 원재료인 홍삼을 균질화하는 공정을 통해 생산한다. 홍삼과 함께 로얄제리, 벌꿀 등을 배합하고 이것이 골고루 혼합되도록 균질화 한다. 이를 병에 충전하고 마개를 덮어 완제품으로 출하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일 것 4.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06.90호의 알코올성 함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p>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재료일 것 4.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07
	제품명	홍삼드링크
	HS Code	22029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07-01	FTA-BOM-07-02	FTA-BOM-07-03	FTA-BOM-07-04	FTA-BOM-07-05
	부품명	홍삼	fructose	정제수	구연산 (citric acid)	비타민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40	180	50	100	80
	HS Code [2012]	121120	170260	220190	291814	293621
	HS Code [2007]	121120	170260	220190	291814	293621
	HS Code [2002]	121120	170260	220190	291814	293621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2202.90호에 분류되는 홍삼드링크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기준+특정물품 완전생산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이면서,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10(180+50+ 100+8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1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59.8\%$$
 - 역내부가가치비율은 59.8%로 원산지 기준 40%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 ② HS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되는 경우 완전생산된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홍삼드링크의 원재료 중 홍삼은 제1211.20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원재료인 홍삼은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홍삼은 역내산이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화학산업 편



208

209



08 윤활제 (제2710.1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및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된다. 윤활유는 원유를 상압증류하고 남은 잔사유를 감압증류하여 얻는다. 감압증류에서 윤활유는 저점도윤활유, 중점도윤활유, 고점도윤활유의 순서로 증류되는데 각종 용도에 맞도록 첨가제를 가하여 여러 종류의 윤활유 조제품을 만든다.

호	소호	품명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1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9	기타
	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9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윤활제란 서로 접촉해서 미끄러지는 두 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마찰에는 윤활제를 넣은 두 면 사이의 유체마찰, 고체와 고체가 접촉해서 미끄러지는 고체마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활제는 마찰 상태에 따라 그 성상이 각각 다르다. 온도와 압력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산화·열분해·중합·취발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좋다.

보통 사용되는 것은 액체로 된 윤활제인데, 특히 석유계 기름·동식물유·합성 윤활유 등이며, 이들을 기름 이외의 것과 구별해서 윤활유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체 윤활제로는 그래파이트가 있다.

HS
제2710.19호

품명
윤활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19	100	윤활기유
2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 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 [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 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1.21	100	점도조절제
3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90	20	Molysulfide technical fine
4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2810.14	20	HP H2
5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31	20	para toluidine
6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 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90	20	Trls[O-Cresyl] Phosphate
7	아민관능화합물	2921.30	20	cyclohexylamine
8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20	cosmonate-ph
9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30	20	포장용기

※ 비중(%) = 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제2710호의 윤활유는 제2709호 및 제2710호의 석유로부터 생산되나 대부분의 윤활유 제조업체는 외부에서 윤활유를 구입하여 여기에 각종 첨가제를 첨가하여 완제품을 만든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같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 또는 감압증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08
	제품명	윤활제
	HS Code	271019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08-01	FTA-BOM-08-02	FTA-BOM-08-03	FTA-BOM-08-04	FTA-BOM-08-05
	부품명	윤활기유	점도조절제	Molysufide technical fine	HP H2	para toluidine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 (KRW)	280	180	50	120	220
	HS Code [2012]	271019	170260	220190	291814	293621
	HS Code [2007]	-	170260	220190	291814	293621
	HS Code [2002]	-	170260	220190	291814	293621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HS 007, 2002 (신설)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2710.19호에 분류되는 윤활유제의 한-미국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공공정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HS 제2710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상압증류 또는 감압증류를 거쳐 HS 제2710.19호의 물품이 생산된 경우,
- ②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710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2710호로 변경된 물품. 다만, HS 제2207호가 원재료로 투입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원산지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

HSK : 제2207호

품명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80/100 이상 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Undenatured d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80% vol or higher, ethyl alcohol and other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

- ① HS 제2710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상압증류 또는 감압증류를 거쳐 HS 제2710.19호의 물품이 생산된 경우,
 - 사례물품 윤활제의 원재료 중 윤활기유(제2710.19호)는 최종 제품과 동일한 호에 속한다. 이러한 윤활기유 원재료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상압증류 또는 감압증류를 거친 후 최종제품인 윤활제로 제조되어야 한다.
- ②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710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2710호로 변경된 물품. 다만, HS 제2207호가 원재료로 투입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원재료 중 윤활기유는 윤활제와 동일한 제2710.19호에 속한다. 따라서 해당 윤활제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두 가지 조건 중 두 번째 조건인 4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되므로 첫 번째 조건과 관계없이 해당 윤활제는 원산지를 충족한다.



09 부탄가스 (제2711.13호)

1 관세율표 분류

제2711호에는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의 탄화수소가 분류된다. 이러한 석유가스는 원유를 구성하는 성분을 증류하여 제조한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의 경질제품과 운할유, 광물성 왁스에 포함되어 생산된다.

호	소 호	품 명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1	액화한 것
	11	천연가스
	12	프로판
	13	부탄
	14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부타디엔
	19	기타
	2	가스 상태인 것
	21	천연가스
	2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액화 석유 가스로 가정용 버너의 연료 등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사용 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취급에 주의를 요망하는 물품이다.

HS
제2711.13호

품명
부탄가스



환경산업
기공식품

환경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00	프로판 가스, 부탄가스
2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50	100	cap (사출물)
3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0	85	석판, 주석도금강판
4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	84	밸브
5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 (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10	57	락커, 안료
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	57	수축필름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90	42.857	수축필름
8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4.42	42.857	포장박스
9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90	28.571	안료
10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 섬유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 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28	carton box
11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60	14.286	컴파운드
12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3	14.286	라바
13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14.286	석도강판
14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90	14.286	스프링
1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4.286	하우징
16	구리의 선	7408.21	14.286	동선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제2711호의 부탄가스는 크게 용기를 제작하는 공정과 부탄가스를 주입하는 공정으로 구분된다. 주석도금강판 등으로 용기를 제작한 후 안전을 위한 누설검사를 진행한 후 몸체를 진공상태로 하여 가스를 충전하고 다시 한 번 누설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외관에 프린팅과정과 보호캡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09
	제품명	부탄가스
	HS Code	271113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09-01	FTA-BOM-09-02	FTA-BOM-09-03	FTA-BOM-09-04	FTA-BOM-09-05
	부품명	부탄가스	캡	석판 주석도금강판	밸브	락커, 안료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 (KRW)	340	80	250	100	80
	HS Code [2012]	271113	392350	721011	848180	320810
	HS Code [2007]	271113	392350	721011	848180	320810
	HS Code [2002]	271113	392350	721011	848180	32081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2711.13호에 분류되는 부탄가스는 한-미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711.1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2711.13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2711.29호가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원산지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

HSK : 제2711.29호

품명 : 기타(Others)

-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711.1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2711.13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2711.29호가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부탄가스의 원재료 중 제2711.13호(부탄가스)가 역외산 재료이며 완제품과 동일 세번에 속하므로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 따라서 당해물품이 한-미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탄가스가 역내산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10 프로필렌 글리콜 (제2905.3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2905호와 산소관능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탄화수소 화합물의 결합구조에서 수소가 산소로 치환됨으로서 탄소와 산소가 직접 결합한 화합물을 의미한다. 제2905호는 알코올과 그들의 할로젠화 유도체 등이 분류되는데 알코올은 히드록시기(-OH)가 결합된 형태로 R-OH의 일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호	소호	품명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1	포화1가알코올
	11	메탄올(메틸알코올)
	1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14	그 밖의 부탄올
	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그이성체
	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19	기타
	2	불포화1가알코올
	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29	기타
	3	2가알코올
	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 2-디올)

위	소	호	품	명
39	기타			
4	그 밖의 다가알코올			
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 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42	펜타에리트리톨			
43	만니톨			
44	다-글루시톨(소르비톨)			
45	글리세롤			
49	기타			
5	비환식알코올의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산화유도체			
51	에스클로비놀(INN)			
5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프로필렌글리콜은 탄소 수가 세 개인 2가 알코올이다. 흡습성이 강한 무색의 액체로 프로필렌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데, 녹이기 어려운 약물의 용매, 부동제, 의약, 합성 원료 따위로 쓴다.

HS
제2905.32호

품명
프로필렌
글리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비환식탄화수소	2901.22	67	프로필렌
2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90	34	물
3	비환식탄화수소	2901.21	34	에틸렌
4	환식탄화수소	2902.20	34	벤젠
5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70	34	ADM
6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34	N-OCTANE
7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90	34	O-ACIDC
8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0.20	34	프로필렌 옥시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프로필렌 글리콜은 에틸렌과 벤젠을 혼합하여 만든 에틸벤젠에 산화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 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1. 메탈알코올레이트(이 호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올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905호의 비원산지 메탈알코올레이트의 총가격이 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원산지결정기준

관세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서류법)
터키	<p>1. 메탈알코올레이트(이 호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올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p>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905호의 비원산지 메탈알코올레이트의 총가격이 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p> <p>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p> <p>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p>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p> <p>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p>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제품	제품 품번	FTA-BOM-10
	제품명	프로필렌 글리콜
	HS Code	290532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재료	부품 품번	FTA-BOM-10-01	FTA-BOM-10-02	FTA-BOM-10-03	FTA-BOM-10-04	FTA-BOM-10-05
	부품명	프로필렌	물	에틸렌	벤젠	ADM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 (KRW)	340	10	250	200	50
	HS Code [2012]	290122	220190	290121	290220	284170
	HS Code [2007]	290122	220190	290220	290220	284170
	HS Code [2002]	290122	220190	290220	290220	28417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HS 2002 대분류	-	HS 2002 대분류	HS 2002 대분류	HS 2002 대분류

3) 결정기준
해설
(한-EU
FTA)

제2905.32호에 분류되는 프로필렌 글리콜의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일 호 일정비율 이내 포함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해당 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해당 호로 변경되어야 하나, 해당 제품과 동일 호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물품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② 투입된 비원산지물품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가격비중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해당 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해당 호로 변경되어야 하나, 해당 제품과 동일 호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물품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 프로필렌 글리콜의 원재료는 모두 제2905호 이외의 품목번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원재료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생산된 프로필렌 글리콜은 원산지를 충족한다.

② 투입된 비원산지물품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가격비중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 투입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은 790(모든 비원산지 재료비의 합)이며 공장도가격은 1,000 이므로,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9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79\%$$

-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비중은 85% 이므로, 원산지기준 50%를 초과하여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기 두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례의 프로필렌 글리콜 (제2905.32호)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이다.



11 디프로필렌 글리콜 (제2909.4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2909호는 산소관능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탄화수소 화합물의 결합구조에서 수소가 산소로 치환됨으로서 탄소와 산소가 직접 결합한 화합물을 의미한다. 제2909호에는 에테르 등과 그들의 할로젠화 유도체가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1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11	디에틸에테르
	19	기타
	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4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디골)
	43	에틸렌글리콜의모노부틸에테르와디에틸렌글리콜의모노부틸에테르
	44	에틸렌글리콜의 그밖의 모노알킬에 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밖의 모노알킬에테르
	49	기타
	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60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디프로필렌글리콜이란 프로필렌글리콜이 두 개가 붙어있는 분자구조를 말한다. 분자구조가 크기 때문에 프로필렌글리콜보다 피부에 침투가 덜 되고 글리세린보다 보습력이 뛰어난 고가의 보습원료이다. 향료, 용제, 점도감소제, 보습제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보습제나 화장품의 구성성분을 용해시키는 기능을 한다.

HS 제2909.49호

품명 디프로필렌 글리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비환식탄화수소	2901.22	67	프로필렌
2	비환식탄화수소	2901.21	34	에틸렌
3	환식탄화수소	2902.20	34	벤젠
4	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23	34	bisphenol-A
5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70	34	ADM
6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34	N-OCTANE
7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90	34	O-ACIDC
8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34	에틸렌 옥시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디프로필렌글리콜은 에틸렌과 BISPHENOL-A를 혼합하여 반응기에서 숙성한 후 이를 파쇄하여 생산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11
	제품명	디프로필렌 글리콜
	HS Code	290949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11-01	FTA-BOM-11-02	FTA-BOM-11-03	FTA-BOM-11-04	FTA-BOM-11-05
	부품명	프로필렌	에틸렌	벤젠	bisphenol-A	ADM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 (KRW)	340	380	50	20	60
	HS Code [2012]	290122	290121	290220	290723	284170
	HS Code [2007]	290122	290121	290220	290723	284170
	HS Code [2002]	290122	290121	290220	290723	28417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HS 2002 대분류	HS 2002 대분류	HS 2002 대분류	세번없음	HS 2002 대분류

3) 결정기준 해설 (한-페루 FTA)

제2909.49호에 분류되는 디프로필렌글리콜의 한-페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6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905.49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2905.49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 이상인 물품

- ①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905.49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2905.49호로 변경되었거나,
- 제2909.49호의 디프로필렌글리콜의 원재료는 모두 제2909.49호 이외의 품목번호에 속하므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10(340+50+2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1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59.8\%$$

따라서 한-페루 FTA 협정상 디프로필렌글리콜의 부가가치 비율은 59.8% 이며 50%를 초과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므로 사례의 디프로필렌 글리콜은 어떠한 기준을 선택하더라도 한-페루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이다.



12 열전사지 (제3212.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212호에는 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의 염료와 기타 착색제 등이 분류되는데, 스탬프용의 박이란 인쇄에 사용되는 얇은 쉬트의 것으로서 금속의 분 또는 안료를 글루, 젤라틴 또는 기타 결합제와 응결하여 만든 것이나 금속 또는 안료를 쉬트상의 지지물에 부착시킨 것을 말한다. 스탬프용의 박은 손 또는 기계로 압력을 가하여(일반적으로 가열) 서적표지나 모자챙 등의 인쇄에 사용한다.

호	소호	품명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 [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박의 착색제
	10	스탬프용의 박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전사지란 인쇄에 쓰이는 용지로 열 전사지와 물 전사지가 있다.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열을 이용하여 천 등에 무늬 등을 새길 수 있다.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62	88.89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PET)
2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	77.00	전사잉크
3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 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	66.00	ABS일반접착제
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55.00	
5	환식탄화수소	2902.30	44.44	toluene
6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31	44.44	Ethyl Acetate(E.A)
7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페(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9	33.33	염료
8	조제 윤활유 [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10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19	33.33	이형제

아름다운날 기념수품

환의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33.00	이형제, 착색제, 경화제
1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콕(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90	22.22	지판 (paper core)
11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11	22.22	알루미늄박
12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22.00	
13	아크릴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90	22.00	락카, 탑코팅제, 아크릴중합체
14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22.00	
15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11.11	
16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36	11.11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purity)
17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11	11.11	염료
18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90	11.11	프라이어
19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90	11.11	polyfluo (이형제, 왁스)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0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30	11.11	접착제
21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99	11.11	
22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50	11.11	peel oil(배면제, 폴리우레탄)
23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90	11.11	이형제
24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807.00	11.11	지관
25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 (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11.11	포장용 박스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원단을 제품종류에 맞게 가공하여 뒷면에 이형제를 코팅한 후 디자인 동판을 거쳐 각각 디자인 별로 잉크와 염료를 코팅시켜주며 최종적으로 착색제를 코팅시켜 준다. 이를 증착공정으로 이동하여 착색제까지 코팅된 면 위에 은박으로 증착코팅한다. 이후 프라이머 코팅과 접착제 코팅을 마무리하여 완제품을 완성한다.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12
	제품명	열전사지
	HS Code	3212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부품 품번	FTA-BOM-12-01	FTA-BOM-12-02	FTA-BOM-12-03	FTA-BOM-12-04	FTA-BOM-12-05
	부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PET)	전사잉크	ABS 일반 접착제	에틸 아세테이트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 (KRW)	240	180	50	180	200
HS Code [2012]	392062	321519	350610	291531	290230
HS Code [2007]	392062	321519	350610	291531	290230
HS Code [2002]	392062	321519	350610	291531	29023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HS 2002 대분류	HS 2002 대분류

환경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3212.10호에 분류되는 열전사지의 한-EFTA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212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212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 이하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212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212호로 변경되었거나,

- 열전사지의 원재료는 모두 제3212호 이외의 품목번호에 속하므로, 원재료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하인 물품.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420(240+180)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2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59.8\%$$

따라서 한-EFTA FTA 협정상 열전사지의 비원산지 재료비율은 42% 이며 50%에 미달하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13 잉크 (제3215.1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 필기용 잉크, 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된다. 볼펜의 볼포인트와 잉크통을 갖추고 있는 것(제9606호)을 제외 하나 단순한 잉크만 충전되어 있는 보통 만년필용 카트리지는 이 호에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 (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인쇄용 잉크
	11	흑색
	19	기타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잉크는 필기나 인쇄 등에 사용하는 유색의 액체로 현재의 잉크는 필기용 잉크와 인쇄용 잉크로 크게 나누어진다.

필기용 잉크에는 기록용 증권용 기호용 제도용 스탬프 잉크 등이 있는데, 이 중 기록용 잉크는 탄닌산이나 몰식자산(갈산) 수용액에 황산제일철을 첨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잉크라고 하면 거의 이것을 가리킨다.

인쇄용 잉크는 색소를 가진 안료와 이것을 종이에 고착시키는 매질이 주성분인 콜로이드상 또는 액상의 물질로 조제할 때 드라이어와 콤파운드 등을 섞어서 만든다.

HS
제3215.19호

품명
잉크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100	butyl carbitol
2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00	durazin vilolet B, color pigment
3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70	ethylene glycol
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56	disperse agent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5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3	52	surfinol-TG
6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42	poly vinyl chloride
7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30	28.6	plastic bottle
8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14.3	soybean oil
9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 [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19	14.3	linseed oil
1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1520.10	14.3	glycerin
1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	14.3	물
12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19	14.3	ink solvent
13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00	14.3	carbon black
14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2	14.3	amorphous fumed silica
15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4.29	14.3	calciumnitrate
1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미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20	14.3	calcium carbonate
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산화유도체	2917.36	14.3	BIS 가소제

환경수산물 가공식품

환경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8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 관능화합물	2924.19	14.3	hydrocarbon resin
19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29	14.3	butyrolactone
20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19	14.3	pyrrolidone
21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29	14.3	
22	합성 유기유연제 · 무기유연제 · 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3	14.3	
23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11	14.3	titanium dioxide
2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90	14.3	fatty amide wax
25	로진(rosin) · 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6.10	14.3	gum rosin
26	실리콘수지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14.3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잉크는 먼저 염료와 안료 및 첨가제, 정제수 등을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교반한다. 교반되어진 잉크는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탱크에 배출하고, 이를 자동주입기를 통해 소매용 용기에 주입하고 실링한 후 누수 이상 유무를 전수 검사한다.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13
	제품명	잉크
	HS Code	321519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13-01	FTA-BOM-13-02	FTA-BOM-13-03	FTA-BOM-13-04	FTA-BOM-13-05
	부품명	butyl carbitol	color pigment	ethylene glycol	disperse agent	surfinol-TG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 (KRW)	240	80	350	120	60
	HS Code [2012]	290911	320417	290531	382490	340213
	HS Code [2007]	290911	320417	290531	-	340213
	HS Code [2002]	290911	320417	290531	-	340213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비 고	-	-	HS 2002 대분류	HS 2002, 2007신설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3215.19호에 분류되는 잉크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일 호 일정비율 이내 포함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해당 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해당 호로 변경되어야 하나, 해당 제품과 동일 호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물품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② 투입된 비원산지물품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가격비중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해당 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해당 호로 변경되어야 하나, 해당 제품과 동일 호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물품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잉크의 원재료 중 제3215.19호에 속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투입된 비원산지물품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가격비중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670(240+80+350)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7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67.0\%$$

따라서 한-EU 및 한-터키 FTA 협정상 잉크의 비원산지재료 비율은 67%로 40%를 초과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세 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당해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14 립스틱 등 (제3304.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20	눈화장용 제품류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9	기타
	91	분말상의 것 (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루주(rouge) 또는 입술연지라고도 한다. 루주는 본래 프랑스어의 '붉다'라는 형용사로 화장용어로 쓸 때는 볼연지만을 가리켰으나, 요즘에는 오히려 입술연지의 뜻이 더 강하다.

립스틱은 손가락 모양의 입술연지를 이르는데 여러 가지 빛깔이 있고 근래에 와서는 그 형태도 여러 가지로 변화하였다.

백분(白粉)과 같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으며 과거에는 주로 홍화

(紅花 : safflower)의 즙을 응고시켜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카민(carmin) 에오신(eosin) 또는 합성색소가 사용되고 있다.

HS
제3304.10호

품명
립스틱 등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드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20	100	ritol
2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5	100	fd/c yellow
3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	100	향(香)
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100	transgel
5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용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100	립스틱 용기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6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 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 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100	박스
7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 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75	refined peach kernel oil
8	산화티타늄	2823.00	75	soft tex white
9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75	butylene glycol
10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75	hydrozystearic acid
11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75	
1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75	panalane
13	아크릴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90	75	raronglitterred
14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 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90	50	acadamia nut oil
15	운모(조각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5.20	50	MICA SSM
16	석유젤리·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2712.90	50	jlti wax
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50	dibutylhydrozy-tolu en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8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6.28	50	vitamin e acetate
19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3	50	
20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증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18.00	25	
2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99	25	백설탕미립분말
22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2	25	
23	한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6.11	25	
24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9	25	
25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39	25	
26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3	25	
27	산소테테로고리 화합물	2932.29	25	
28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90	25	lipwax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아름다운날 기념상품

환원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주요
제조공정

오일 및 향료 등 원재료를 계측한 후 가열하여 교반기에 투입하여 적절히 배합하고 이를 진공 후 필터링한다.

원료를 숙성하고 숙성된 화장품을 용기에 주입하고 종이박스에 포장 후 밀봉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 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재 품	제품 품번	FTA-BOM-14
	제품명	립스틱 등
	HS Code	3304.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g)	100

원 재 품	부품 품번	FTA-BOM-14-01	FTA-BOM-14-02	FTA-BOM-14-03	FTA-BOM-14-04	FTA-BOM-14-05
	부품명	ritol	안료	방향성 물질	transgel	립스틱 용기
	소요량	10	10	5	30	1
	단 위	g	g	g	g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 (KRW)	390	260	50	70	80
	HS Code [2012]	151620	320500	330290	382490	392310
	HS Code [2007]	151620	320500	330290	-	392310
	HS Code [2002]	151620	320500	330290	-	3923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HS 2002 대분류	-	HS 2002 대분류	HS 2002, 2007 신설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3304.10호에 분류되는 립스틱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304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304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304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304호로 변경되었거나,

- 립스틱의 원재료에는 제3304호에 속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720(390+260+7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2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29.4\%$$

따라서 한-아세안 FTA 협정상 립스틱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29.4%로 40%에 미달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기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사례의 립스틱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이다.



15 마스크라, 아이라이너 (제3304.2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20	눈화장용 제품류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9	기타
	91	분말상의 것 (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마스크라는 속눈썹이 짙고 길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칠하는 화장품을 말하며 아이라이너는 눈의 윤곽을 그리는 화장품이다. 두 제품 모두 화장용품으로 여성들이 애용하며 활용성이 다양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HS
제3304.20호

품명
마스크라/
아이라이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닌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9	100	식물 추출물
2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리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리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20	100	정제 대두 경화유
3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경납(鯨蠟)(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521.90	100	bees wax(gold)
4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 ₂ O ₃)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100	IOB BL
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100	but-gly
6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100	MGS-ASE
7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3	100	softisan
8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9	50	Yodosol GH
9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3	50	
1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 (크롬염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504.00	50	collagen peptid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1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11	50	emersol
12	조제 점결체(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50	
13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90	50	avalure ac
14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20	50	emulgade
15	실리콘수지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50	silicon
16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39	50	natrasol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약 88도 수준에서 식물성 추출물 및 유지 등을 배합하고 이에 수분을 첨가하여 에멀전 형태로 만든다. 이를 점차 식히면서 기타 원재료를 혼합하고 최종적으로 저장 후 숙성시킨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15
	제품명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HS Code	3304.2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보 원	부품 품번	FTA-BOM-15-01	FTA-BOM-15-02	FTA-BOM-15-03	FTA-BOM-15-04	FTA-BOM-15-05
	부품명	식물 추출물	정제 대두 경화유	bees wax(gold)	IOB BL	but-gly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 (KRW)	120	90	270	320	50
	HS Code [2012]	130219	151620	152190	282110	290529
	HS Code [2007]	130219	151620	152190	282110	290529
	HS Code [2002]	130219	151620	152190	282110	290529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HS 2002 (130214)	HS 2002 대분류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3304.20호에 분류되는 마스카라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일 호 일정비율 이내 포함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해당 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해당 호로 변경되어야 하나, 해당 제품과 동일 호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물품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② 투입된 비원산지물품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가격비중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304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304호로 변경되어야 하나,

- 마스카라의 원재료 중에서 제3304호에 속하는 비원산지 물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 ② 투입된 비원산지물품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가격비중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260(120+90+50)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 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26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26.0\%$$

따라서 한-EU FTA 협정상 마스카라의 비원산지 재료비율은 26%이며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조건 모두 충족함에 따라 사례의 마스카라는 한-EU 및 한-터키 FT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이다.



16 바디워시, 세안제 (제3405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401호에서 ‘비누’라 함은 수용성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기타물품에는 소독제, 연마분, 충전제 또는 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분을 함유한 물품은 봉(棒)상, 케이크상 또는 주형(鑄型)상으로 된 것에 한하여 제3401호에 분류하며, 기타 형상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비누로 조제한 조제품 및 비누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도 제3401호에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1	비누·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11	화장용 (약용을 포함한다)
	19	기타
	2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세안제는 얼굴의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바디워시는 몸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비누와 함께 애용되는 물품이다. 특히, 세안제의 경우 각질(脚疾) 등의 분비물 제거, 결막낭(結膜囊) 소독, 유해약물의 중화, 세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술 전 조치로서의 세안에 5,000~20,000배의 승홍수(昇汞水) 또는 0.02~0.05%의 옥시안수은(청산산화홍)액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소독작용이 강하나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세안 전에 코카인 등의 점안마취를 행하고 세안 후에는 봉산수 등으로 충분히 세정할 필요가 있다.

HS 제3401.30호

품명
바디워시,
세안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닌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9	100	과실추출물
2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100	stearic acid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100	애씨드
4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100	탄올아민
5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 지에 상관없다)	2936	100	
6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 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00	
7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100	우레스설페이트
8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100	포장 박스
9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	75	정제수
10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5	75	수산화나트륨
11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75	스테이틱에씨드
1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	75	향료
13	아크릴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	75	알킬아크릴 레이트크 로스폴리머
14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폰아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90	75	폴리쿼티늄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5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9	50	페녹시에탄올
16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	50	베타안
17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용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	50	neolone
18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50	glycol disterate
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50	
2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1520.00	25	glycerin
2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10.10	25	물
22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2501.00	25	소듐플로라이드
23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2802.00	25	황
2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69	25	
25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31	25	소듐변조에이드
26	아민관능화합물	2921.21	25	disodium EDTA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7	질소헥테로고리 화합물	2933.21	25	allantion
2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8.24	25	판테놀
29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49	25	루오르 플로고파이트, 티타늄 디옥사이드
30	면도용 제류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90	25	fragrance
31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19	25	
32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20	25	inducos
33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25	테잎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공정

각각의 원재료를 테스트, 계측 후 교반기에 투입한다. 교반기에 투입된 원재료를 고온에서 완전 용해하여 배합하고 서서히 냉각하여 이를 포장용기에 주입한 후 포장재 테스트, 벌크 테스트 후 배합된 원료를 플라스틱 용기에 주입한다. 화장품이 주입된 플라스틱 용기를 설명서가 포함된 수출필름으로 포장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수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수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재 품	제품 품번	FTA-BOM-16
	제품명	바디워시, 세안제
	HS Code	34013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540(430+60+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54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47.1\%$$

따라서 한-인도 FTA 협정상 바디워시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47.1%로 35%를 초과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한-인도 CEPA 협정상 사례 물품인 바디워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이다.



17 접착제 (제3506.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5류에는 단백질계의 물질인 카세인, 알부민, 젤라틴, 펩톤과 이들의 유도체가 분류되며 또한 텍스트린과 기타의 변성전분, 글루와 접착제, 효소 등도 분류된다. 이 류의 조제글루와 조제 접착제는 천연수지, 플라스틱, 고무류, 전분, 카세인 기타 접착성이 있는 물질을 기재로 하여 혼합조제 되었다. 또한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kg 이하의 것은 화학적 단일여부를 불문하고 제3506호에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	기타
	91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물체를 접착시키려면 접착제를 물체에 도포하고 서로 붙인 후에 접착제가 고화(固化)되어야 한다. 따라서 접착제는 처음에는 액상이다가 나중에 고화되는 경우 떨어지지 않고 또한 접착제 자체가 파괴되지 않는 고분자여야 한다.

그러므로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물에 녹인 녹말풀, 가솔린에 녹인 고무풀, 시너에 녹인 폴리아세트산비닐계(系) 등과 같이 고분자를 용액으로 사용하는 접착제, 둘째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비스아크릴레이트 등과 같이 처음에는 저분자의 액상이던 것이 붙은 다음에 중합반응으로 고분자가 되는 접착제, 셋째는 고분자의 고체를 가열하여 용융시켜 붙이는 접착제(핫멜트법)가 있다.

HS 제3506.10호

품명
접착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70	50	SODIUM STEARATE
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50	P.P (폴리 프로필렌)
3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99	50	
4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수 및 글리세롤페액	1520.00	25	glycerin
5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1701.11	25	GLUCOSE
6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포함하며, 설탕 기타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1.10	25	TAP water (정제수)
7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수산화칼륨(가성칼륨) 및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2815.11	25	CAUSTIC SODA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30	25	수산화알루미늄
9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	2836.50	25	calcium carbonate (탄산칼슘)
10	비환식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32	25	propylene glycol
1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4	25	MMA (methylmethacrylate)
12	아민관능화합물	2921.30	25	amin-funciton compounds cyclanic (아민관능화합물)
13	조제안료 · 조제유백제 · 조제그림물감 · 범랑 · 유약 · 유약용의슬립 ·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 ·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3207.10	25	prepared pigments (안료)
1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20	25	
1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 지드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10	25	(공업용 전분)
16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에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자·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3808.92	25	
17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10	25	POLY PROPYL-ENE(PP)
18	아크릴의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6.10	25	PMMA (polymethylmethacrylate)
19	아세탈수지 · 기타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트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것에한한다)	3907.30	25	epoxide resins for making semi-conductor (에폭시 수지)
2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것에한한다)	3910.00	25	
21	전사지(디칼카메니어)	4908.90	25	전사라벨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광물·수산물·기공식품

화학산업

섬유 · 의류 산업

기계 · 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주요
제조과정

에폭시수지와 경화제 등의 원재료를 배합하여 이에 탄산칼슘과 안료 등을 적정 비율로 배합한다. 이를 사출기를 통해 생산된 용기에 내용물을 주입하고 물을 이용해 냉각한 후 컷팅하여 소매용 크기로 만든 다음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완제품으로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FTA	1. 골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 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의 것은 제외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 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재 료	제품 품번	FTA-BOM-17
	제품명	접착제
	HS Code	3506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17-01	FTA-BOM-17-02	FTA-BOM-17-03	FTA-BOM-17-04	FTA-BOM-17-05
	부품명	SODIUM STEARATE	PP(폴리프로필렌)	propylene glycol	glycerin	공업용 전분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40	120	150	100	40
	HS Code [2012]	291570	390110	290532	152000	320810
	HS Code [2007]	291570	390110	290532	152000	320810
	HS Code [2002]	291570	390110	290532	152000	32081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HS 2002 대분류	-	HS 2002 대분류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3506.10호에 분류되는 접착제의 한-EFTA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506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506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HS 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의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원산지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

HSK : 제3501호

품명 : 카세인 · 카세인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및 카세인글루(Casein, caseinates and other casein derivatives; casein glues)

HSK : 제3503호

품명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슈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세인글루는 제외한다) (Gelatin(including gelatin in rectangular(including square) sheets, whether or not surface-worked or coloured) and gelatin derivatives; isinglass; other glues of animal origin, excluding casein glues of heading 35.01)

HSK : 제3505호

품명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징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 ·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Dextrins and other modified starches(for example, pregelatinised or esterified starches); glues based on starches, or on dextrins or other modified starches)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 이하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506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 으로부터 HS 제3506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HS 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의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 이하인 물품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480(440+40)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8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48.0\%$$

따라서 한-EFTA FTA 협정상 접착제의 비원산지재료비율은 48%로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므로 해당 사례의 접착제는 한-EFTA FT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8 토너 (제3707.9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707호에는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하며 단일물질의 것으로서 일정량으로 소분되고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및 레이블 문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진에 즉시 사용된다는 표시가 있는 것만이 분류되고 이외의 것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제3707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유제, 현상제, 정착제, 증도제와 감도제, 조색제, 세정제 등이 있다.

호	소호	품명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e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0	감광유제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프린터용 토너는 복사기 또는 레이저 인쇄기에서 잉크 대신 사용되는 검은색 탄소 가루. 가열 또는 압력에 의해 종이에 흡착 되도록 함으로써 정보를 인쇄한다.

토너는 플라스틱제 “카트리지”에 2종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인 “조색제(Toners)”가 담겨

있는 물품으로서 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으로 발생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그 홀더에 끼워져 피동적으로 회전하며 복합기와 연결이 되도록 양 끝단이 특별히 제작되었으나 기어·교반장치 등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교체되는 소모성 물품이다.

HS
제3707.90호

품명
토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계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 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 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4.19	67.0	charge control agent
2	기타무기산과 무기비금속산화물	2811.22	65.0	dioxide silica (silicon dioxide)
3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00	50.0	카본블랙 (carbon black)
4	스티렌의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3.90	33.3	resin, 스티렌수지
5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99	33.3	polyester resin
6	포화 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2915.39	33.0	propylene glycol monomethyle
7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23	33.0	CCA bontron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기타유기-무기화합물	2931.00	33.0	
9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33.0	
10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6.90	33.0	아크릴 폴리머 (acrylic polymers)
11	산화철·수산화 철과 어드칼라(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2철로서 계산하여 전중량이 70/100 이상인 것에 한한다)	2821.10	16.7	
12	산화티타늄	2823.00	16.7	titaniumoxide
13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2841.90	16.7	첨가제
14	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 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2846.10	16.7	cerium compound
15	환식탄화수소	2902.30	16.7	톨루엔
16	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에테르알콜 페놀·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할로겐화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2909.49	16.7	prorylene glycol monomethylether
17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39	16.7	heterocyclic compounds with nitrogen heteroatom
18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91	16.7	aminorex, brotizolam, clotiazepam
19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3707.10	16.7	sensitising emulsions
20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10	16.7	왁스
21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것에한한다)	3910.00	16.7	실리콘수지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원재료를 계량 후 믹서기로 혼합한다. 배합한 재료를 혼련기에 투입하여 혼련하고 식힌 후 1차 및 2차 분쇄를 거친다. 2차 분쇄 후 재료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3차 분쇄하여 분급하며, 분급한 재료를 후처리제를 투입한 후 믹싱하여 메쉬를 통해 제품을 선별하고 제품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에 주입하거나 소매포장하여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제 품	제품 품번	FTA-BOM-18
	제품명	토너
	HS Code	37079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18-01	FTA-BOM-18-02	FTA-BOM-18-03	FTA-BOM-18-04	FTA-BOM-18-05
	부품명	charge control agent	dioxide silica(silicon dioxide)	카본블랙 (carbon black)	아크릴 폴리머 (acrylic polymers)	안료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 (KRW)	140	180	420	100	10
	HS Code [2012]	320419	281122	280300	390690	282110
	HS Code [2007]	320419	281122	280300	390690	282110
	HS Code [2002]	320419	281122	280300	390690	2821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인도
CEPA)

제3707.90호에 분류되는 토너의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6단위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707.90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707.90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 ①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707.90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707.90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 제3707.90호의 토너 원재료에는 제3707.90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불문하고 6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재료가격이 430(140+180+100+1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3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57.8\%$$

따라서 한-인도 CEPA 협정상 토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57.8%이며 35%를 초과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한-인도 CEPA 협정상 토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이다.



19 식물발수제 (제3809.91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족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9	기타
	91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92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93	가족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발수제란 내부의 수분 침투 등을 막는 것으로 식물발수제란 식물에 물기를 제거해주고 수분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유회와 중합과정을 통해 물과 분리되는 성질을 갖게 함으로써 수분과 분리시켜주는 특징을 가진다.

HS
제3809.91호

품명
식물발수제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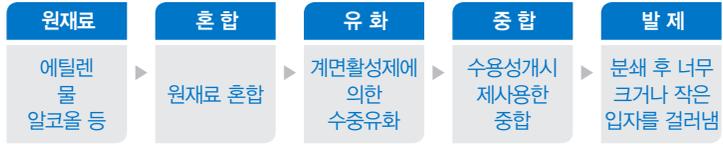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알모늄(카르복산알모늄을 함유한 것)	2836	100	SOA-HS (촉매제)
2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21	100	chloro ethylene
3	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에테르알콜페놀·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산화유도체	2909.49	100	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propanol
4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산화유도체	2916	100	(촉매제)
5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90	100	2-methylpropionamide dihydrochloride
6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402	100	do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7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100	N-hydroxymethyl acrylamide, N-methylolacrylamid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14	100	(축매제)
9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1.10	50	물
1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 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2501.00	50	(축매제)
11	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2804.30	50	(축매제)
12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수산화칼륨(가성 칼륨) 및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2815.12	50	(축매제)
13	비환식탄화수소	2901.21	50	(축매제)
14	환식탄화수소	2902.11	50	(축매제)
15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2904.10	50	(축매제)
16	비환식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 로소화유도체	2905.17	50	스테아릴알콜
17	페놀과 페놀알콜	2907.22	50	(축매제)
18	폴리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 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 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19	50	dioctyl maleate
19	산소관능의 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19	50	glycolic acid
20	유기-황화합물	2930.90	50	tert-dodecanethiol, N-dodecyl mercaptan
21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티수지·폴리아릴에스테 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20	50	propane, propoxylated, polyzypropylene glycol
22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923.90	50	PE Drum
23	동의 분과 플레이크	7406.10	50	CU-HS (축매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직물발수제는 에틸렌과 물, 알코올 등을 혼합하고 이를 유화중합(emulsion polymerization)을 통해 고중합도의 폴리머를 얻는다. 이를 발제공정을 통해 입자를 걸러낸 후 완제품으로 출하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터키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제 품	제품 품번	FTA-BOM-19
	제품명	직물발수제
	HS Code	380991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19-01	FTA-BOM-19-02	FTA-BOM-19-03	FTA-BOM-19-04	FTA-BOM-19-05
	부품명	SOA-HS (촉매제)	chloroethylene	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2-methylpropion amidine dihydrochloride	dodecyl-rime-rhylam monium chloride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140	380	150	100	80
	HS Code [2012]	283620	290321	290949	292690	340290
	HS Code [2007]	283620	290321	290949	292690	340290
	HS Code [2002]	283620	290321	290949	292690	34029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HS 2002 대분류	-	HS 2002 대분류	-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3809.91호에 분류되는 식물발수제의 한-미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809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809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809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809호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사례의 식물발수제는 원재료상 제3809호에 분류되는 원재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에 관계없이 식물발수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이다.



20 콘크리트용 조제점결제 (제3824.4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제3824호에는 산화마그네슘,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 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퓨젤유와 디젤유,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소매용으로 포장한 동사판원지 수정제와 기타 수정테이프(제9612호의 것은 제외한다), 용융성 요업 내화도 측정물(세겔콘) 등을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1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3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0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71	염화불화탄소(O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번호	소호	품명
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 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76		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78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79		기타
8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조제점결제란 주물사에 혼합하여 점결력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하는 고체 혹은 반고체상의 역청 물질이며, 콘크리트용 조제점결제의 경우 콘크리트 조제시에 첨가하여 점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품명 콘크리트용 조제점결제

HS
제3824.40호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수산화칼륨(가성칼륨) 및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2815.12	100	NaOH (수산화 나트륨=가성소다)
2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할로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2904.10	100	
3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1	100	(아크릴산)
4	유기-황화합물	2930.90	100	
5	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40	50	과황산암모늄
6	환식탄화수소	2902.30	50	톨루엔
7	페놀과 페놀알콜	2907.22	50	히드로퀴논
8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30	50	페노티아진
9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402.13	50	MPEG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
10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티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20	50	폴리에테르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1차 에스테르 반응기로 MPEG와 MMA 그리고 PSTA를 투입하여 고온 저압에서 에스테르반응을 진행시킨다. 1차 반응물을 냉각하고 난 후 2차 반응기로 1차 반응물과 AA, 2ME를 투입하여 고분자중반응을 고온 고압에서 진행시킨다. 2차 반응물을 성소다로 중화한 후 냉각하여 최종제품을 저장탱크로 이송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20		
	제품명	콘크리트용 저제점결제		
	HS Code	38244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20-01	FTA-BOM-20-02	FTA-BOM-20-03
	부품명	NaOH (수산화 나트륨=가성소다)	PTSA	AA(아크릴산)
	소요량	1	1	1
	단 위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업체명	A-001	A-002	A-003
	구매단가(KRW)	340	180	50
	HS Code [2012]	281512	290410	291611
	HS Code [2007]	281512	290410	291611
	HS Code [2002]	281512	290410	291611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HS 2002 대분류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3824.40호에 분류되는 콘크리트용 조제점결제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일 호 일정비율 이내 포함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824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824호로 변경되어야 하나, 해당 제품과 동일 호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물품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824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824호로 변경되어야 하나, 해당 제품과 동일 호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물품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콘크리트용 조제점결제의 원재료 중에는 제3824호에 분류되는 품목이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재료가격이 570(340+180+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57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57\%$$

따라서 한-EU 및 한-터키 FTA 협정상 콘크리트용 조제점결제의 부가가치비율은 57%로 40%를 초과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기 두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사례의 콘크리트용 조제점결제는 한-EU 및 한-터키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다.



21 핫팩 (제3824.9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제3824호에는 산화마그네슘,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 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퓨젤유와 디펠유,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소매용으로 포장한 동사판원지 수정제와 기타 수정테이프(제9612호의 것은 제외한다),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세겔콘) 등을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1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3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0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 과불화탄소(PFCs) ·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번호	소호	품명
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76		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78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79		기타
8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핫팩은 스팀이나 뜨거운 물수건을 이용하는 팩으로 체온이 내려갔을 때 주로 사용되며, 의료목적으로 저체온증의 환자에게 이용되기도 하는 등 활용성이 매우 높다.

HS
제3824.90호

품명
핫팩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2	100	이소프로필알콜
2	기타무기산의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에스테르를제외한다) 및 그들의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90	100	황상디에틸
3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3	100	유기계면활성제
4	공업용모노카르복시지방산, 유지의정제시생 긴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알콜	3823.11	100	스테아린산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PVC 필름을 일정한 모양대로 고주파로 성형하여 팩을 만든 후 칩을 투입한다. 삭산소다와 물의 혼합물에 열을 가하여 일정비율로 준비한 후 혼합물을 PVC 팩에 투입한다. 액주입구를 고주파로 마감하여 밀폐시키고 주입구 부분을 모양에 맞게 커팅하고 세척한다. 이후 제품을 검수하여 폴리백과 포장지에 포장한다.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름다운 물품

환경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21
	제품명	햇떡
	HS Code	38249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21-01	FTA-BOM-21-02	FTA-BOM-21-03	FTA-BOM-21-04
	부품명	이소프로필알콜	황상디에틸	유기계면활성제	스테아린산
	소요량	1	1	1	1
	단 위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구매단가(KRW)	340	100	330	80
	HS Code [2012]	290512	292090	340213	382311
	HS Code [2007]	290512	292090	340213	382311
	HS Code [2002]	290512	292090	340213	382311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페루 FTA)

제3824.90호에 분류되는 햇떡의 한-페루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824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824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 이상인 물품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824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824호로 변경되었거나,
- 핫팩의 원재료에는 제3824호에 속하는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불문하고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520(340+100+8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52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49.0\%$$

따라서 한-페루 FTA 협정상 핫팩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49%로 50%에 미달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기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핫팩은 한-페루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다.

플라스틱과 고무제품



208

209



22 L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제3901.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전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의 형상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제3901호의 에틸렌 중합체란 에틸렌의 중합으로 생기는 사슬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이다. 중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생성되는데 밀도에 따라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별된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각종 병이나 냉장고의 제빙용 상자 등의 원료로 쓰인다.

호	소호	품명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20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LLDPE란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지칭하는 것으로 밀도가 0.94 미만의 것을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 한다. 가지가 많은 선형구조로 이루어져 단위질량당 부피가 작고 밀도가 낮으며 유연하고 투명하여 필름, 쇼핑백, 비닐 제조에 사용된다.

HS
제3901.10호

품명
LLDPE



아름다운물 가공식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비환식탄화수소	2901	100	ISO-PENTANE
2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2931.00	80	
3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	80	
4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60	
5	기타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60	
6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1	60	LLDPE (폴리에틸렌)
7	환식탄화수소	2902	40	Tetramethylcyclopentadiene
8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90	40	
9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강된 참조물질	3822.00	40	LDPE
10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4.69	40	DYNAMAR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1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2710.11	20	나프타 (NAPHTHA)
12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2711.14	20	Ethylene
13	수소 · 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2804.10	20	Hydrogen
14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	2811.22	20	
15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0.10	20	SODIUM SULFITE
16	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에테르알콜페놀·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	20	(촉매)
17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70	20	
18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14	20	(무수말레이산)
19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6.49	20	Black masterbatch
20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3811.90	20	
21	반응개시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815.00	20	촉매
22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20	
23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30	20	(폴리프로필렌)
24	포장용의 빈 포대	6305.33	20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제3901호에 속하는 LLDPE는 동일 호에 분류되는 폴리에틸렌과 무수말레이산, 폴리프로필렌, 산화방지제 등을 혼합하여 추가적으로 가공한다. 원재료들을 혼합하여 압출하고 이를 적절한 크기로 절단하고 파우더 가공함으로써 완제품을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22
	제품명	L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HS Code	3901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22-01	FTA-BOM-22-02	FTA-BOM-22-03	FTA-BOM-22-04	FTA-BOM-22-05
	부품명	ISO-PENTANE	P-EPQ	C-933FD	LLDPE (폴리에틸렌)	Te-tramethyl-cyclopentadiene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270	80	250	100	80
	HS Code [2012]	290110	293110	381210	390110	290211
	HS Code [2007]	290110	293100	381210	390110	290211
	HS Code [2002]	290110	293100	381210	390110	290211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HS2012 (293120, 293190) 존재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3901.10호에 분류되는 저밀도폴리에틸렌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0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901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01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901호로 변경되었거나,
- 저밀도폴리에틸렌의 원재료 중 LLDPE(저밀도폴리에틸렌)이 제3901호에 분류되며 역외산이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3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0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70.6\%$$

따라서 한-아세안 FTA 협정상 저밀도폴리에틸렌의 부가가치 비율은 70.6%로 40%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세번변경기준은 불충족하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므로 사례물품인 저밀도폴리에틸렌은 한-아세안 FTA 협정상 원산지물품이다.

다만, 완제품과 동일 호인 LLDPE(FTA-BOM-22-04)를 역내산으로 대체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의 충족도 가능하며, 이 경우 나머지 원재료들은 모두 역외산으로 대체되어도 무방하다.



23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제3901.2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전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의 형상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제3901호의 에틸렌 중합체란 에틸렌의 중합으로 생기는 사슬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이다. 중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생성되는데 밀도에 따라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별된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각종 병이나 냉장고의 제빙용 상자 등의 원료로 쓰인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기계적 성질, 내열성, 내한성이 뛰어나며 투명도는 낮은 것으로 각종 용기, 절연재료, 전선, 호스, 파이프, 로프 등 압출성형품에 등에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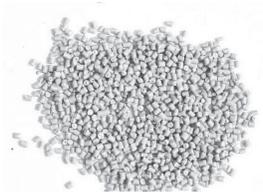
호	소호	품명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20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DPE란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지칭하는 것으로 밀도가 0.94 이상의 것을 고밀도폴리에틸렌이라 한다. 가지가 적고 결정화도가 높아 기계적 강도는 크지만 투명도는 낮으며 내충격성, 내한성, 가공성이 우수하여 플라스틱병,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파이프 등에 사용한다.

HS
제3901.20호

품명
HDPE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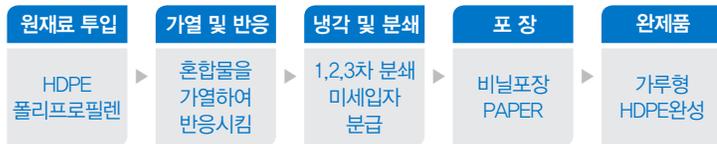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100	HEXANE(헥산)
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30	100	
3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70	66	CALCIUM STEARATE
4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29	66	
5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2710.11	33.3	NAPHTHAH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6	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에테르알콜페놀·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	33.3	촉매
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14	33.3	무수말레이산
8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90	33.3	
9	질소헥사테트라고리 화합물	2933.69	33.3	
1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합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33.3	
1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1.20	33.3	폴리에틸렌
1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30	33.3	폴리프로필렌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및 기타 촉매를 혼련하고 가열 및 반응 압출공정을 거친 후 냉각하고 제련한 후 포장에 담아 완제품을 생산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23
	제품명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HS Code	39012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 -23-01	FTA-BOM -23-02	FTA-BOM -23-03	FTA-BOM -23-04	FTA-BOM -23-05
	부품명	HEXANE (헥산)	UV 3346	CALCIUM STEARATE SC-110	AO-1010	NAPHTAH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180	90	420	100	60
	HS Code [2012]	290110	381230	291570	291829	271012
	HS Code [2007]	290110	381230	291570	291829	271012
	HS Code [2002]	290110	381230	291570	291829	271012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비 고	-	-	-	-	HS2012 (271020) 존재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3901.20호에 분류되는 고밀도폴리에틸렌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0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901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0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901호로 변경되었거나,
- 고밀도폴리에틸렌의 원재료 중 제3901호에 분류되는 원재료는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42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2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58.8\%$$

따라서 한-아세안 FTA 협정상 저밀도폴리에틸렌의 부가가치 비율은 58.8%로 40%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조건 중 모든 조건을 충족하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상 고밀도폴리에틸렌은 원산지 물품이다.



24 폴리프로필렌 (제3902.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02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공중합체이다.

호	소호	품명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폴리프로필렌
	20	폴리이소부틸렌
	30	프로필렌 공중합체
	90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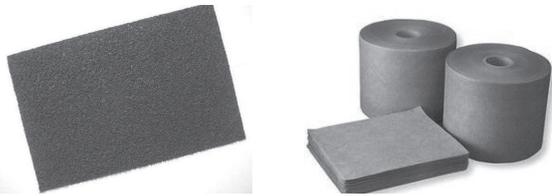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폴리프로필렌의 일반적인 물리적 성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성질과 유사하다. 폴리프로필렌 및 프로필렌의 공중합체도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장용 필름·자동차·기기·가정용품 등의 성형부분품·금속선 및 케이블의 도포·식품용기의 마개·도포 및 적층물품·병·정밀저장설비용의 트레이 및 용기·도관·탱크라이닝·화학공장의 배관·터후트한 카펫의 이면재 등이 있다.

폴리프로필렌은 석유에서 얻어진 프로필렌을 중합시킨 범용성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성질이 폴리에틸렌과 비슷하지만 비중은 더욱 작아서 모든 플라스틱 중에서 최소의 부류에 속한다. 점화하면 특이한 냄새가 나는 점에서 폴리에틸렌과 구별되는데 주로 강성, 표면광택, 내구성, 성형성에 있어서 폴리에틸렌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학약품 용기로 활용할 경우에도 더욱 유리하다.

HS
제3902.10호

품명
폴리
프로필렌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90	100	
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30	100	
3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2710	80	naphtha
4	피트로울럼제리 및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탈린석유왁스·슬랙왁스·오우조커라이트·갈탄왁스·토탄왁스 기타 광물성왁스와 합성 또는 기타의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의 여부를 불문한다)	2712.10	60	VASELIN GREASE
5	질소헥테로고리 화합물	2933	60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6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 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402	60	
7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	2811.22	40	
8	비환식탄화수소	2901	40	ethylene
9	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에테르알콜 페놀·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	40	
10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70	40	CALCIUM STEARATE
11	기타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90	40	
12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2931.00	40	
13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10	40	
14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 실·직물)	7019	40	유리섬유
15	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27	20	
16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29	20	
17	카르복시아미드관능화합물 및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19	20	
18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금속 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한다), 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3212.10	20	coupling agent
19	반응개시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815.19	20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20	
21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트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99	20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중합시킨 후 반응된 재료를 사출하고, 사출된 원재료를 함침공정을 통과한다. 이후 커팅공정을 거쳐 규격에 맞게 자른 후 개별 포장하여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재 료	제품 품번	FTA-BOM-24
	제품명	폴리프로필렌
	HS Code	3902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24-01	FTA-BOM-24-02	FTA-BOM-24-03	FTA-BOM-24-04	FTA-BOM-24-05
	부품명	VASELIN GREASE	SONGLIGHT 7700			폴리프로필렌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340	180	50	60	220
	HS Code [2012]	271210	293311	340211	281122	390210
	HS Code [2007]	271210	293311	340211	281122	390210
	HS Code [2002]	271210	293311	340211	281122	39021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3902.10호에 분류되는 폴리프로필렌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 기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02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902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 ② HS 제3901호~제3915호에 분류되는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02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902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 폴리프로필렌의 원재료 중 폴리프로필렌이 제3902호에 분류되므로 해당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② HS 제3901호~제3915호에 분류되는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원재료 중 폴리프로필렌(제3902호)의 중량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두 번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첫 번째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며 원재료 중 제3902호의 폴리프로필렌의 중량이 50%를 초과한다면 두 번째 기준 역시 충족하여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물품으로 볼 수 있다.



25 폴리스티렌 (제3903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03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ABS) 공중합체 및 스티렌 - 부타디엔 공중합체이다. 상당량의 부타디엔을 함유한 대부분의 스티렌 - 부타디엔 공중합체는 제40류 주 제4호의 조건에 부합하므로 제40류의 합성고무에 분류한다.

불팽창성 폴리스티렌은 무색투명한 열가소성 물질로서 전기 및 라디오 공업에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이것은 예를 들면 식품 및 화장품 포장 등 포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완구·시계 캐비닛 및 축음기용 레코드판의 제조에도 사용된다

호	소호	품명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	폴리스티렌
	11	발포성
	19	기타
	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SAN)
	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ABS)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스티렌을 중합하여 만든 열가소성의 수지로 무색투명하다. 유전체로서 또 전기 절연물로서 매우 양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폴리스티렌이라고도 하는데 동축 케이블의 중심 도체의 지지물, 광학 렌즈 등에 사용된다.

HS
제3903호

품명 폴리스티렌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환식탄화수소	2902	100.0	styrene monomer
2	비환식탄화수소	2901	56.0	pentane
3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56.0	AN acrylonitrile monomer
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90	52.0	(Ethylene bis stearamide)
5	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에테르알콜페놀·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	42.0	
6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59	28.6	hexabromo cyclododeca
7	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8.0	
8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및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5	28.0	tricalcium phosphate
9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70	28.0	glycerol monostearat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0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28.0	methyl methacrylate
11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402	28.0	FATTY SOAP
1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1702.30	14.3	
13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2710.19	14.3	MAM(MO ; Mineral oil)
14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수산화칼륨(가성칼륨) 및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2815.20	14.3	
15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	2836.40	14.3	
16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29	14.3	
17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8.00	14.3	
18	유기-황화합물	2930.90	14.3	
19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페(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4.19	14.3	(solvent dyestuffs macrolex violet)
20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3401.20	14.3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1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작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3403.90	14.3	
2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30	14.3	
2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3.19	14.3	GAMBO
24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4.61	14.3	
25	포장용의 빈 포대	6305.33	14.3	BAG SANDWICH SAN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원재료를 중화하기 전에 물해 용해시켜 준비공정을 거친 후 주요 원재료인 스티렌 단량체를 투입하여 중합반응을 일으키고 세척과 탈수, 건조공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 반응시 넣었던 잔존물들을 제거한 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하고 여기서 Pentane의 방출을 막기 위해 코팅을 한다. 이후 개별포장 후 완제품을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25
	제품명	폴리스티렌
	HS Code	390311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 -25-01	FTA-BOM -25-02	FTA-BOM -25-03	FTA-BOM -25-04	FTA-BOM -25-05
	부품명	styrene monomer	pentane	acrylo- nitrile monomer	fatty soap	methyl methacy- late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240	180	120	200	110
	HS Code [2012]	290250	290110	292610	340211	291614
	HS Code [2007]	290250	290110	292610	340211	291614
	HS Code [2002]	290250	290110	292610	340211	291614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칠레 FTA)

제3903호에 분류되는 폴리스틸렌의 한-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0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903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5% 이상이거나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0% 이상인 물품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0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903호로 변경되었거나,
 - 폴리스틸렌의 원재료 중 제3903호에 분류되는 원재료는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5% 이상이거나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440(240+2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4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56.9\%$$

따라서 한-칠레 FTA 협정상 폴리스틸렌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56.9%로 4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사례물품인 폴리스틸렌은 한-칠레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다.



26 폴리카보네이트 (제3907.4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폴리아세탈수지
	20	그 밖의 폴리에테르
	30	에폭시수지
	40	폴리카보네이트
	50	알키드수지
	60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70	폴리 (락트산)
	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91	불포화의 것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와 포스젠(carbonyl chloride) 또는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제조품과 유약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용도가 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내충격성, 내열성, 내후성, 자기 소화성, 투명성 등의 특징이 있고 강화 유리의 약 150배 이상의 충격도를 지니고 있어 유연성 및 가공성이 우수하다. 잘 깨지고 변형되기 쉬운 아크릴의 대용재이자 일반 판유리의 보완재로 많이 쓰인다.

HS
제3907.40호

품명
폴리카보
네이트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	100	석유, 나프타
2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40	100	산소
3	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	100	페놀, 페놀알코올
4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29	100	카르복시산
5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90	100	비금속 무기산 에스테르
6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 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90	100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7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페어(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9	100	합성유기착색제
8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90	100	인조왁스 및 제조왁스
9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1	50	메탄올
10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19	50	폴리카르복시산, 메탄올
11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1	50	플라스틱제 용기, 폴리에틸렌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나프타를 증류 등의 방법으로 분해하여 에틸렌 옥시드(Ethylene Oxide)를 얻는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반응하여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제조한 후 메탄올을 반응하여 디메틸 카보네이트(DMC)를 얻는다. 여기에 다시 페놀을 첨가하고 반응시켜 디페닐 카보네이트(DPC) 제조하고 이를 용융축 중합반응시켜 폴리 카보네이트를 생산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터키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26
	제품명	폴리카보네이트
	HS Code	39074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 -26-01	FTA-BOM -26-02	FTA-BOM -26-03	FTA-BOM -26-04	FTA-BOM -26-05
	부품명	석유, 나프타	산소	페놀, 페놀알코올	합성유기착 색제	인조왁스 및 제조왁스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570	80	50	70	80
	HS Code [2012]	271091	280440	290711	320419	340490
	HS Code [2007]	271091	280440	290711	320419	340490
	HS Code [2002]	271091	280440	290711	320419	34049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HS 2002 (340410) 존재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3907.40호에 분류되는 폴리카보네이트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일 호 포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모든 호로부터 HS 제3907호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HS 제3907호 이외의 물품으로부터 HS 제3907호로 변경되거나, 해당 물품과 동일 호인 HS 제3907호의 비원산지물품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폴리카보네이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로부터의 변경이므로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단, 폴리카보네이드가 계약당사국에서 생산되었으며 수행된 공정이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폴리카보네이드 원산지 판정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역내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에 따라 결정된다.



27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제3907.6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07호에는 아세틸수지, 폴리에테르,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수지, 폴리아릴에스테르, 기타 폴리에스테르로서 일차제품의 것이 분류된다. 제3907.60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분류된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일반적으로 테레프탈산이 에틸렌 글리콜과 함께 에스테르화하여 형성되거나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가 에틸렌 글리콜과 반응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를 말한다. 직물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용도 이외에 포장필름 녹음용 테이프 청량음료용병 등의 용도가 있다.

호	소호	품명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폴리아세탈수지
	20	그 밖의 폴리에테르
	30	에폭시수지
	40	폴리카보네이트
	50	알키드수지
	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70	폴리(락트산)
	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91	불포화의 것
	99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일반적으로 테레프탈산이 에틸렌 글리콜과 함께 에스테르화하여 형성되거나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가 에틸렌글리콜과 반응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를 말하는데 흔히 PET로 불리며 PET병으로 잘 알고 있는 제품이다.

PET는 폴리에스테르 계통으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이며 내열성·강성·전기적 성질이 뛰어나고 디젤유와 같은 기름에 대한 내성이 좋다. 강화 PET는 열가소성수지 중에서 내열성이 우수하며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 직물에서 대단히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외에 포장필름·녹음용테이프·청량음료용병 등의 용도가 있다.

HS
제3907.60호

품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31	100	mono ethylene glycol
2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36	100	테레프탈산과 그 염 purified terephthalic acid
3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29	33	초산칼슘, 초산나트륨, 초산코발트, cobalt acetate
4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39	33	이소프탈산,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 무수트리멜리트산, purified isophthalic acid
5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90	33	triethyl phosphate
6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5.90	33	antimoni triacetate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원재료를 투입, 혼합하여 EG(에틸렌글리콜)와 PTA(테레프탈산염)를 혼합하여 반응시키고 이에 증류수를 넣어 재차 반응시킨다. 이후 지속적으로 진공상태를 만들어 칩 상의 PET를 생산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번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 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27
	제품명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HS Code	39076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세 번 변 경	부품 품번	FTA-BOM-27-01	FTA-BOM-27-02	FTA-BOM-27-03	FTA-BOM-27-04	FTA-BOM-27-05
	부품명	mono ethylene glycol	purified terephthalic acid	초산칼슘	이소프탈산	triethyl phosphate
	소요량	1	1	1	1	1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140	180	250	150	130
	HS Code [2012]	290531	291736	291529	291739	291990
	HS Code [2007]	290531	291736	291529	291739	291990
	HS Code [2002]	290531	291736	291529	291739	29199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칠레 FTA)

제3907.60호에 분류되는 PET의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907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5% 이상이거나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0% 이상인 물품.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907호로 변경되었거나,
 - PET의 원재료 중 제3907호에 분류되는 원재료는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5% 이상 이거나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460(180+150+13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6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54.9\%$$

따라서 한-칠레 FTA 협정상 PET의 부가가치비율은 54.9%로 45%를 초과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 상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한-칠레 FTA 협정상 PET는 원산지 물품이다.



28 PVC(폴리염화비닐) 타일 (제3918.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바닥 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제39류 주 9에 규정하는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가 분류된다.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정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상의 제품으로서 종이 이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부분의 플라스틱 층이 그레인장식, 엠보싱장식, 착색, 디자인 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호	소호	품명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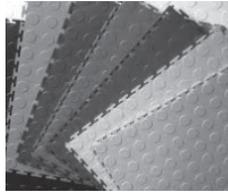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폴리염화비닐이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라고도 하며 PVC로 약칭한다.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필름, 시트, 성형품, 캡 등 광범위한 제품으로 가공된다.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PVC는 원래 딱딱한 물질로 프탈산계 (phthalates, DEHP, DINP, DBP 등) 가소제나 아디핀산계 (adipates, DHEA 등) 가소제를 사용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인 뒤 제품화된다.

HS
제3918.10호

품명
PVC(폴리
염화비닐)
타일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4	90	폴리염화비닐 (PVC; poly vinyl chloride, PVC RESIN)
2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15.19	70	Printing ink
3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 쉬트 · 필름 · 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 적층 ·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0	70	전사필름 (heat transfer printing)
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2530.90	60	filler
5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	50	-
6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40	plasticizer DOP
7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 페어링과 스크랩	3915.30	30	VINYL WAST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70	20	BA-ST
9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페(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4.17	20	안료(Colorant)
10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4에 규정한 용액	3208.90	20	poly urethane
11	초크	2509.00	10	-
12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23.21	10	폴리백(polypack)
13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2927.00	10	발포제(unicell-DW)
14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페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6.11	10	안료(TIO계)
15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10	경질황산칼슘
16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шит·필름·박 및 스트립	3921.90	10	PRINT SHEET
17	지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제의 상자·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4819.10	10	아웃박스(carton box)
18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20	10	POLYESTER SHORT FIBER
19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 실·직물)	7019.39	10	G.F.(glass fiber)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PVC와 가소제, 충전제, 첨가제 등을 투입하고 배합하여 이를 압연하고 섬유 또는 플라스틱 등의 시트상의 것에 압착하여 PVC 시트를 만든 후 표면처리, 프린팅, 표면에 물성 부여, 다시 코팅 및 재단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PVC 타일을 제조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재 품	제품 품번	FTA-BOM-28
	제품명	PVC(폴리염화비닐)
	HS Code	3918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28-01	FTA-BOM-28-02	FTA-BOM-28-03	FTA-BOM-28-04	FTA-BOM-28-05
	부품명	폴리염화비닐	Printing ink	전사필름	filler	PINP
	소요량	3.0	2.2	1.8	1.0	2.0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340	130	150	80	150
	HS Code [2012]	390410	321519	392010	253090	381210
	HS Code [2007]	390410	321519	392010	253090	381210
	HS Code [2002]	390410	321519	392010	253090	38121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3918.10호에 분류되는 PVC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18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918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18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918호로 변경되었거나,

- 사례물품인 PVC의 원재료는 모두 제3918호 이외의 품목번호에 속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640(340+150+150)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4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64.0\%$$

따라서 한-EU 및 한-터키 FTA 협정상 PVC의 비원산지재료 비율은 64%로 2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첫 번째 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두 번째 기준인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한-EU 및 한-터키 FTA 협정상 PVC제품은 원산지 물품이다.



29 플라스틱제 접착테이프 (제3919.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90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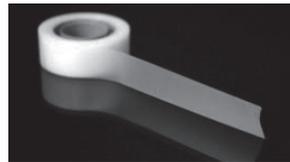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플라스틱 필름 등에 접착제를 도포한 테이프. 접착제는 용도에 따라 고무계, 아크릴계, 비닐계가 이용되는데, 용도가 넓어 도금에서는 부분도금의 마스킹재, 공구의 마스킹재로써 사용된다.

플라스틱 필름에는 폴리 염화비닐이 많이 쓰이며 폴리 에틸렌 펠레프타레이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불소수지 등에도 사용된다. 부분도금의 마스킹재로 사용될 때에는 접착테이프를 떼어낸 후 흔적이 남기 때문에 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HS
제3919.10호

품명
플라스틱제
접착테이프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스플·콤팩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2.90	58.33	지관
2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0	57.00	Paper liner
3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	50.00	폴리이소부틸렌 (polyisobuthylen)
4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	2836.50	41.67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d)
5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솔파이드·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 3에 계기한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911.10	41.67	석유수지 (hikorez)
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40.00	A-ACID
7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2817.00	33.33	산화아연 (zinc oxide)
8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509.53	33.33	
9	환식탄화수소	2902	33.00	
10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1.10	33.00	폴리에틸렌수지 (polyethylen resin)
11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6.90	33.00	포리즐
12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울·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1	33.00	생고무
13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계기한 것을 제외한다)	4811	24.00	이형지

아름다운 물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4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	2811.22	16.67	white carbon
15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와 기타 비닐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5.30	16.67	배면제 (polyvinyl alcoho)
16	아세탈수지 · 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티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99	16.67	마스터밋지 (플라스틱 착색원료)
17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9.50	16.00	경화제
18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 · 판 ·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 · 판 · 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2	16.00	합성고무
19	유리제의 비드 · 모조진주 · 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직경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7018.20	16.00	filler
20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8.33	솔벤트
21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40	8.33	
22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4에 규정된 용액	3208.20	8.33	아크릴점착제
23	반응개시제 · 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815.90	8.33	경화제
24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 슈트 · 필름 · 박 및 스트립	3921.19	8.33	PE Liner
25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 판지 ·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7607.11	8.33	aluminium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제 품	제품 품번	FTA-BOM-29
	제품명	플라스틱제 접착테이프
	HS Code	3919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29-01	FTA-BOM-29-02	FTA-BOM-29-03	FTA-BOM-29-04	FTA-BOM-29-05
	부품명	지관	Adhesive PET	폴리이소부틸렌	탄산칼슘	석유수지
	소요량	1	1.0	1.6	2.4	5.0
	단 위	ea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140	20	350	110	230
	HS Code[2012]	482290	391910	390220	283650	391110
	HS Code[2007]	482290	391910	390220	283650	391110
	HS Code[2002]	482290	391910	390220	283650	39111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3919.10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제 접착테이프의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19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919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19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919호로 변경되었거나,

- 플라스틱 접착테이프의 원재료 중 Adhesive PET(제3919호)는 최종 제품과 동일한 호에 속한다. Adhesive PET가 역외산 재료이므로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한-EFTA FTA의 특례기준 중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해보면 Adhesive PET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2%로 허용범위인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역외산 재료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600(20+350+230) 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0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60.0\%$$

따라서 한-EFTA FTA 협정상 플라스틱 접착테이프의 비원산지 재료비율은 60%로 50%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므로 동 사례의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물품은 한-EFTA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다.



30 PVC(폴리염화비닐) 필름 (제3920.43/4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20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호	소호	품명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2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3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49	기타
	5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51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59	기타
	6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1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호	소호	품명
6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7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71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73		초산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79		그 밖의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1		폴리 (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92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93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94		페놀수지로 만든 것
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폴리염화비닐(PVC)은 염화비닐의 단독중합체 및 염화비닐을 50% 이상 함유한 혼성중합체(混成重合體)를 일컫는다. 결정성이 낮고 가공 시 접착이 어려운 것이 특징인데 연질제품으로서 포장용 농업용 등의 시트나 필름에 사용되고, 경질제품에서는 압출성형에 의한 수도관의 제조에 쓰인다. 이를 이용해 필름을 만든 것을 PVC필름이라고 한다.

HS
제3920.43/49호

품명
PVC(폴리
염화비닐)
필름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0	100	무광필름(OPP)
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30	80	안정제 LX
3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4.10	80	PVC resin
4	산화티타늄	2823.00	60	
5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60	DOP
6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99	60	폴리에스터
7	환식탄화수소	2902.30	40	용제/톨루엔
8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12	40	용제/ 메틸에틸케톤
9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4	40	
10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15	40	잉크
11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물상여부를 불문한다)	3919.90	40	PROTECTIVE FILM
12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2530.90	20	경탄

아름다운날 기념수출품

광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3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3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6.11	20	TITANIUM DIOXIDE
14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한다), 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3212.90	20	안료
15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3403.19	20	이형재
16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kg이하인 것에 한한다)	3506.91	20	접착제
17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90	20	충격보강제
18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9.50	20	발포지
19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	3921.90	20	PET FILM
20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제품	4412.32	20	합판상판
21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제의 케이블드럼, 목제의 페렛·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목제의 페렛 칼러	4415.20	20	나무파렛트
22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시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4804.39	20	PP포장지
23	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축유·압형 또는 천공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시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3호에 계기한 것을 제외한다)	4808.10	20	원형마구리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4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스플·롭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2.90	20	지관
25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	7307.92	20	철클립
26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7312.10	20	철밴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표면을 보호하는 PET 필름과 PVC 베이스 필름을 열과 압력으로 합지하고 연속적으로 구동하는 금형에 가합지한 필름의 PVC면을 맞대고 강한 열과 압력을 가하여 PVC필름을 녹이면서 성형한다(프리즘 패턴 성형공정). 이어 프리즘이 성형된 상태에서 냉각 공정을 거치면서 필름을 냉각 후 금형에서 박리한다(냉각 및 박리 공정). 이후 제품의 양쪽 가장자리를 재단하여 완전히 성형된 부분을 형태로 감는다(재단공정). 마지막으로 외관 및 반사성능을 측정하여 검품 후 포장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재 품	제품 품번	FTA-BOM-30
	제품명	PVC 필름
	HS Code	392043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30-01	FTA-BOM-30-02	FTA-BOM-30-03	FTA-BOM-30-04	FTA-BOM-30-05
	부품명	무광필름 (OPP)	안정제 LX	PVC resin	TiO2	DOP
	소요량	3.6	2.4	1.7	1.3	1.0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210	180	30	50	380
	HS Code[2012]	392010	381230	390410	282300	291711
	HS Code[2007]	392010	381230	390410	282300	291711
	HS Code[2002]	392010	381230	390410	282300	291711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3920,43/49호에 분류되는 PVC(폴리염화비닐)필름의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20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920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20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920호로 변경되었거나,
 - 사례의 PVC 원재료 중 무광필름이 최종제품과 동일한 제3920호에 속하나 역내산 원재료 이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590(180+30+380) 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59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59.0\%$$

따라서 한-EFTA FTA 협정상 PVC의 비원산지재료비율은 59%로 50%를 초과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사례의 PVC 제품은 한-EFTA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가능하다.



31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제3920.6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20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호	소호	품명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2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3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49	기타
	5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51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59	기타
	6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1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호	소호	품명
6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7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71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73		초산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79		그 밖의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1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92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93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94		페놀수지로 만든 것
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는 용융방사(熔融紡絲)로 의류용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만드는 외에, 비디오 테이프와 마이크로 필름용으로 필름상태로 하거나 맥주나 간장을 넣는 병처럼 성형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오디오, VTR, 컴퓨터용의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디스크 등의 기재(基材)로 널리 쓰이는 한편,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병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가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S
제3920,62호

품명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60	아세톤
2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40	폴리에틸렌
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	40	폴리스틸렌, 첨가제 등
4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60	4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5	환식탄화수소	2902.30	40	톨루엔
6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31	20	에틸렌 글리콜
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36	20	테레프탈산
8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락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90	20	페인트와 바니시
9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19	20	인쇄용 잉크
10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1	20	유기계면활성제
11	조제 접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20	조제접결제

아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2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30	20	폴리염화비닐
13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20	실리콘 수지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입고된 원료를 두께와 수축율을 체크하면서 시트 형태로 압출 또는 롤 형태로 압출한다. 제품 생산 중 후도별 자동두께 측정기를 통해 편차를 관리하고 이후 저온에서 숙성하여 정전기 방지(대전처리) 및 내열도(Op Coating) 작업을 수행한 후 규격별로 커팅 재단하고 파손 최소화를 위한 포장작업을 수행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31
	제품명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필름
	HS Code	392062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재료 명세서	부품 품번	FTA-BOM-31-01	FTA-BOM-31-02	FTA-BOM-31-03	FTA-BOM-31-04	FTA-BOM-31-05
	부품명	아세톤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제의 쉬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톨루엔
	소요량	3.0	2.0	1.6	1.4	2.0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70	210	430	110	30
	HS Code[2012]	291411	390110	392062	390760	290230
	HS Code[2007]	291411	390110	392062	390760	290230
	HS Code[2002]	291411	390110	392062	390760	29023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칠레
FTA)

제3920.62호에 분류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20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920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5% 이상이거나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20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920호로 변경되었거나,

- 사례의 PET 물품은 제3920호에 속하며 원재료 중 제3920호에 속하는 원재료는 플라스틱제의 쉬트가 있고 역외산 재료이다. 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한-칠레 FTA 협정상의 최소허용기준(8%)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쉬트(FTA-BOM-31-03)의 비중이 42.1%로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5% 이상 이거나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610(70+430+11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1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40.2\%$$

따라서 한-칠레 FTA 협정상 PET 필름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40.2%로 45%에 미달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PET 물품은 한-칠레 FTA 협정상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32 폼 보드 (제3921.11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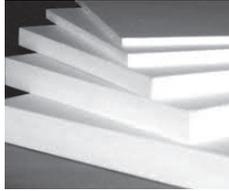
호	소호	품명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1	셀룰러
	11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12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13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4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폼보드는 기존 스티로폼을 압축하여 종이에 접목시킨 것으로 전문가들의 작업이나 작품 제작시 주로 사용되며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POP, 모형재료, DIY, 프레젠테이션, 문자판조각, 투시도, 광고물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HS
제3921.11호

품명
폼 보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편치카드와 편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	75	포장재
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50	포장용 박스
3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 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49	25	착색제
4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91	25	접착제
5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90	25	에틸렌 중합체
6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19	25	스티렌 중합체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 ·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25	폴리에틸렌 판, 시트, 포장용 필름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알갱이 모양의 스틸렌 중합체를 압출하여 롤 상태의 시트지로 생산한다. 롤 상태의 시트지를 서로 합지시키고 합지시킨 시트 위에 종이를 붙여 평판보드를 생산한다. 기계에서 냉각 건조 후 사이즈별로 컷팅되어 나오면 포장하여 완성품을 만든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제 품	제품 품번	FTA-BOM-32
	제품명	폼 보드
	HS Code	392111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32-01	FTA-BOM-32-02	FTA-BOM-32-03	FTA-BOM-32-04	FTA-BOM-32-05
	부품명	폴리스틸렌 시트	포장재	포장용 박스	착색제	접착제
	소요량	8.3	1	1	1.1	0.6
	단 위	kg	ea	ea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90	60	430	120	150
	HS Code[2012]	392111	480210	481910	320649	350691
	HS Code[2007]	392111	480210	481910	320649	350691
	HS Code[2002]	392111	480210	481910	320649	350691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HS2002 (3206.30, 3206.43)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3921.11호에 분류되는 폼 보드의 한-EU FTA 및 한-터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2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921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21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921호로 변경되었거나,

- 사례 물품인 폼 보드는 제3921호에 분류되며 원재료 중 동일 호에 속하는 원재료는 폴리스티렌 시트가 있으나 역내산 재료이다. 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580(430+1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58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58.0\%$$

따라서 한-EU 및 한-터키 FTA 협정상 폼 보드의 비원산지재료 비율은 58%이며 25%를 초과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첫 번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한-EU 및 한-터키 FTA 협정상 사례의 폼 보드 제품은 원산지 물품이다.



33 플라스틱 용기 (제3923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상자 케이스 바구니, 스푼 콤파트 보빈, 뚜껑 마개 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	색과 백 (콘을 포함한다)
	21	에틸렌 중합체의 것
	29	기타 플라스틱의 것
	30	카보이병, 병, 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0	스푼, 콤파, 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0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플라스틱 용기는 플라스틱을 사출하여 제품의 형태에 맞게 제조한 제품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HS
제3923호

품명
플라스틱
용기 등



환경수산물 가공식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53	박스
2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53	에틸렌의 중합체, HDPE, EVA 등
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	40	플라스틱제 판, 쉬트, LLDPE, 폴리에스터 필름 등
4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40	프로필렌 중합체, PP
5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27	실리콘
6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50	20	폴리우레탄, 접착제 등
7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	13	스티렌 중합체, ABS 수지
8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7	7	착색제, 향유백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 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11	7	페인트
10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10	7	스프레이
11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90	7	금박
12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19	7	잉크
13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40	7	광택제
14	조제 접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7	실리카 겔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압출하여 비닐을 생산하고 비닐의 좌우면을 실링한 후 와인딩을 통해 필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이어 검사 및 포장 후 완제품으로 출고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33
	제품명	플라스틱 용기
	HS Code	3923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33-01	FTA-BOM-33-02	FTA-BOM-33-03	FTA-BOM-33-04	FTA-BOM-33-05
	부품명	박스	에틸렌의 중합체	플라스틱제 판	프로필렌 중합체	실리콘 고무
	소요량	1	5.5	1.2	0.3	3.0
	단 위	ea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160	20	270	320	80
	HS Code[2012]	481910	390110	392010	390210	391000
	HS Code[2007]	481910	390110	392010	390210	391000
	HS Code[2002]	481910	390110	392010	390210	39100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3923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용기의 한-EFTA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2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3923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2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923호로 변경되었거나,
- 사례 플라스틱 용기의 원재료 중 제3923호에 속하는 원재료가 없다.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 ② MC법에 따라 계산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370(20+270+80)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7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37.0\%$$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의 비원산지재료비율은 37% 이며 50%에 미달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므로 사례의 플라스틱제 용기 제품은 한-EFTA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다.



34 플라스틱제 밀폐용기 (제3924.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플라스틱을 이용한 밀폐용기로 주방에서 주로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 견고함은 유리로 만들어진 밀폐용기에 비해 덜하지만 훨씬 가볍고 충격에 약하지 않아 많이 이용되고 있다.

HS
제3924.10호

품명
플라스틱
밀폐용기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57	실리콘 수지, 실리콘 패키징
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57	박스 등, 카톤박스
3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42	프로필렌 중합체, PP RESIN
4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 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19	14	안료
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19	14	잉크
6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20	14	스티렌 중합체,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7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50	14	폴리우레탄
8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레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90	14	석유수지, polycarbonate +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GP
9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90	14	플라스틱제 판, 스위트, PVC 시트
10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19	14	합성고무, thermoplastic rubber
1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	14	매뉴얼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플라스틱·수출물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주요
제조과정

PP를 사출기에 투입하여 열을 가해 녹이고 금형으로 전달하여 용기 모양을 형성한다. 또한 사출기에서 생산된 반제품에 실리콘 원자재를 녹여 생산한 실리콘 패킹과 결합하고 출고 전 검사 후 포장하여 완제품을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 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34
	제품명	플라스틱제 밀폐용기
	HS Code	3924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비	부품 품번	FTA-BOM-34-01	FTA-BOM-34-02	FTA-BOM-34-03	FTA-BOM-34-04	FTA-BOM-34-05
	부품명	실리콘 수지	박스	프로필렌 중합체	안료	잉크
	소요량	4.4	1	2.3	1.9	1.4
	단 위	kg	ea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340	280	50	60	120
	HS Code[2012]	391000	481910	390210	320619	321519
	HS Code[2007]	391000	481910	390210	320619	321519
	HS Code[2002]	391000	481910	390210	320619	321519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칠레
FTA)

제3924.10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제 밀폐용기의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24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3924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5% 이상이거나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3924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3924호로 변경되었거나,

- 사례의 플라스틱제 밀폐용기의 원재료 중 동일한 제3924호에 속하는 원재료는 없다. 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5% 이상 이거나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510(340+50+12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51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50.0\%$$

따라서 플라스틱제 밀폐용기의 역내가치비율은 50%이며 45% 이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므로 사례의 플라스틱제 밀폐 용기 제품은 한-칠레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다.



35 가황한 고무제품 (제4016호)

1 관세율표 분류

제4016호에는 셀루라 고무제품, 바닥깔개 및 매트, 지우개, 기계용품(예 : 개스킷), 보우트, 고무밴드, 병마개 등이 분류된다.

「가황한 고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황 또는 기타 가황제(염화황 특성의 다가금속산화물 셀렌 텔루륨 2황화티우람과 4황화티우람 특성의 유기과산화물 및 특성의 합성중합체)로 가교처리(열 압력의 사용 또는 고에너지인 방사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성에서 탄력성으로 변한다.

호	소호	품명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1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9	기타
	91	바닥깔개와 매트
	92	지우개
	93	개스킷, 와셔, 그 밖의 실
	94	보트나 도크펜더 (dock fender) (팽창성이 있는지 불문)
	95	그 밖의 팽창성 제품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가황 고무란 가황(Vulcanization)에 의해 물리적 성질이 향상된 고무로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탄성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노화(老化)가 더디고 변형 시에도 체적변화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좁은 의미로는 생고무에 유황 같은 가황제를 가하여 고무분자 간에 결합을 강하게 하고 탄성, 인장강도 등을 증가시키는 공정이다. 넓게는 이런 작업 외에 고무분자의 공유결합을 유도하여 기계적 강도를 늘리는 작업을 일컫는다. 과산화물이나 금속산화물 등을 이용한 비유황가황, 방사선 가황 등이 있다. 이런 가황 고무를 이용한 제품들을 가황고무제품이라고 한다.

HS
제4016호

품명
가황고무제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50	실리콘 수지
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 [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	50	합성고무
3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90	25	기타 광물
4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00	25	탄소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5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6.20	25	천연 동석, 가루의 것
6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2817.00	25	산화아연
7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 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49	25	착색제
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25	종이박스 등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원재료인 합성고무에 연화황 등 가황제를 첨가하여 가황하고, 이를 사출기를 통하여 성형한다. 원하는 형상을 구현한 뒤에 각 제품을 개별적으로 분리한 뒤 세척하고 포장하여 완제품을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재 품	제품 품번	FTA-BOM-35
	제품명	가황한 고무제품
	HS Code	4016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35-01	FTA-BOM-35-02	FTA-BOM-35-03	FTA-BOM-35-04	FTA-BOM-35-05
	부품명	실리콘 수지	합성고무	기타 광물	탄소	천연 동석
	소요량	4.3	2.7	1.6	1.2	0.2
	단 위	-	-	-	-	-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80	80	480	120	90
	HS Code[2012]	391000	400211	253090	280300	252620
	HS Code[2007]	391000	400211	253090	280300	252620
	HS Code[2002]	391000	400211	253090	280300	252620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4016호에 분류되는 가황한 고무제품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4016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4016호로 변경되었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4016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4016호로 변경되었거나,

- 사례의 가황한 고무제품은 제4016호에 분류되며 원재료 중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원재료는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690(480+120+9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9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32.4\%$$

따라서 한-아세안 FTA 협정상 가황한 고무제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32.4%이며 40%에 미달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상 가황한 고무제품은 원산지 물품이다.



36 패션 에코백 (제4202.9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42류에는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제4201호 및 제4202호에는 타재료로 만들었으나 가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그러나, 제4202호에는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 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쉬트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에 한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제3923호), 조물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이 제외된다.

호	소호	품명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종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퍼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1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1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9	기타
	2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2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2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2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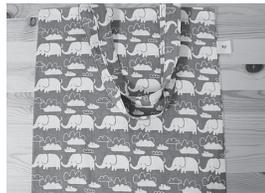
화	소호	품명
	3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31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3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39	기타
	9	기타
	9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9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패션에코백은 최근 친환경 트렌드와 맞물려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지거나 가볍게 휴대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이다. 친환경 소재의 경우 린넨이나 식물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며 이외에도 폴리에스테르 등 패션을 중시한 것도 있다.

HS
제4202.92호

품명
패션
에코백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100	플라스틱제의 용기 등, spool case 등
2	인조필라멘트	5402	66	폴리에스테르 사
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90	66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PU원단, 누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3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204	66	면사
4	페인트와 바니시(vam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90	33	코팅제
5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 [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90	33	안료
6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19	33	인쇄용 잉크
7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k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91	33	접착제
8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20	33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9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33	플라스틱제의 태그
10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50	33	포장지
1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33	라벨
12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99	33	back card
14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19	33	자석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5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	33	플라스틱 스냅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원단직조공정에 있어서 폴리에스테르 및 면사 등 원재료로 원단을 직조한 후 디자인을 위해 종이에 원하는 디자인을 출력하고 종이와 원단을 함께 디지털로 전사한다.

전사된 원단을 컴퓨터 그라인딩 재단과 인두재단으로 가방 몸판과 손잡이 부분을 재단하고, 패키징 공정에서 끈 부분에 플라스틱 제택을 이용하여 종이 품질보증서와 내지를 사용하여 PP케이스에 넣고 봉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1.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결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36
	제품명	패션 에코백
	HS Code	420292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36-01	FTA-BOM-36-02	FTA-BOM-36-03	FTA-BOM-36-04	FTA-BOM-36-05
	부품명	플라스틱제 용기	폴리 에스테르	플라스틱제의 판	면사	코팅제
	소요량	2.0	2.4	1.6	3.0	1.0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130	20	200	360	140
	HS Code[2012]	392310	540233	392190	520411	320890
	HS Code[2007]	392310	540233	392190	520411	320890
	HS Code[2002]	392310	540233	392190	520411	32089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싱가 포르 FTA)

제4202.92호에 분류되는 패션 에코백의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4202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4202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4202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4202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제4202호에 속하는 패션 에코백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원재료는 없다. 따라서 원산지 지위를 불문하고 사례의 에코백은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하며 한-싱가포르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다.

섬유 · 의류 산업





37 합성필라멘트사 (제540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4류에는 유기중합체 및 화학적 처리 또는 화학적 변성한 천연 유기중합체 등을 용융하거나 용제로 용해하여 방사구를 통해 압출·응고시킨 필라멘트상의 인조섬유와 필라멘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이 분류되며, 인조필라멘트 사 및 직물로 분류되는 혼방 섬유 의 사 및 직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조섬유에는 합성섬유와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가 포함된다.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 재봉사와 소매용을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1	강력사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11	아라미드의 것
	19	기타
	20	강력사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3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1	나일론의 것
	32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33	폴리에스테르의 것
	34	폴리프로필렌의 것

화	소 호	품 명
	39	기타
	4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44	탄성사
	45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49	기타
	5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2	폴리에스테르의 것
	59	기타
	6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6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62	폴리에스테르의 것
	6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필라멘트사(Filament yarn)는 일반적으로 지름에 비해 그 길이가 아주 긴 것으로서 방사라는 공정에서 노즐을 통해 국수처럼 실을 뽑는데 방출된 길이가 무한대인 섬유를 말한다.

HS
제5402호

품명
합성 필라멘트사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36	50	테레프탈산과 그 염, PURIFIED TEREPHTHALIC
2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31	37.5	비환식알코올, ETHYLENE GLYCOL
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 · 볼트나 너트 방출제 · 방청제 · 부식방지제 · 이형(mould release) 조제 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	25	조제윤활유, OILING PREPARATIONS
4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2.5	방직기계용 보빈, STEEL BOBBIN
5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 금속과산화물	2825.80	12.5	산화안티모니, ANTIMONY TROXIDE
6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29	12.5	초산칼슘, COBALT ACETATE
7	폴리아세탈수지 · 그 밖의 폴리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99	100	폴리에스테르, POLYESTER CHIP
8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 · 제3204호 ·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3206.41	12.5	착색제, COLORING AGENT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주요 원재료를 투입하고 촉매제를 혼합하여 폴리머를 생성한 후 안정제를 투입하고 방사공정을 통해 필라멘트 원사를 추출한다. 추출된 원사는 롤 형으로 권취되고 광택과정을 거쳐 보빈에 실을 감는데, 필요시 꼬임을 주어 텍스처드를 만들고 포장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산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 원료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 원료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제품	제품 품번	FTA-BOM-37
	제품명	합성필라멘트사
	HS Code	540211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재료	부품 품번	FTA-BOM-37-01	FTA-BOM-37-02	FTA-BOM-37-03	FTA-BOM-37-04	FTA-BOM-37-05
	부품명	합성 필라멘트사	비환식 알코올	조제윤활유	방직기계용 보빈	산화 안티모니
	소요량	4.0	2.0	2.0	1.0	1.0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70	30	290	400	60
	HS Code [2012]	540246	290531	340399	732690	282580
	HS Code [2007]	540246	290531	340399	732690	282580
	HS Code [2002]	540242	290531	340399	732690	28258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HS2002 변경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칠레 FTA)

제5402호에 분류되는 합성필라멘트사의 한-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4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402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4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402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사례의 합성필라멘트사 제품은 제5402호에 분류되며 원재료 중 제54류에 속하는 원재료는 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가 있다. 해당 합성필라멘트사는 역외산 재료이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한-칠레 FTA는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총 중량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따라서 사례의 합성필라멘트사 제품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 중 제5402호의 합성필라멘트사(4Kg)는 제품총 중량(10Kg)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사례의 합성필라멘트사 제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최소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칠레 FTA 협정상 비원산지 제품이다.



38 합성모노필라멘트 (제5404.1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4류에는 유기중합체 및 화학적 처리 또는 화학적 변성한 천연 유기중합체 등을 용융하거나 용제로 용해하여 방사구를 통해 압출·응고시킨 필라멘트상의 인조섬유와 필라멘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이 분류되며 인조필라멘트 사 및 직물로 분류되는 혼방 섬유류의 사 및 직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조섬유에는 합성 섬유와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가 포함된다.

제5404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67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방직용 합성섬유 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 (시폭이 5mm 이하의 것에 한한다)

호	소호	품명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	모노필라멘트
	11	탄성사
	12	기타 (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19	기타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필라멘트란 셀룰로오스계의 섬유와 합성섬유에서 얻어지는 긴 섬유로 생사·인견·나일론 등의 방출(紡出)된 섬유는 거의 무한한 길이의 실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단섬유(單纖維)를 필라멘트라고 한다.

이 중 외가닥 필라멘트(낙시줄, 칫솔)로 방사된 것으로 횡단면의 최대치수(직경)가 1mm 이하의 것, 67데시텍스 이상의 것을 모노 필라멘트라고 한다. 모노필라멘트는 하나의 노즐에서 방사되는 섬유로 다른 섬유와 꼬여 합치는 일 없이 최종제품으로 한 것이며 주로 낙시줄, 어망, 여성용 양말 등에 사용된다.

HS 제5404호

품명
합성모노필라멘트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90	33	나일론 수지
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 [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표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90	33	안료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 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 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99	33	조제윤활유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입고된 원재료(필라멘트)를 절단 및 가공하여 제품의 형상을 갖추게 한다. 필라멘트 번들의 형태로 된 것은 가공액으로 수세하고, 오븐에서 건조시켜 필라멘트의 번들을 일정한 높이로 정렬 및 정돈하고 품질검사를 하여 개별포장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 원료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 원료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38
	제품명	합성모노필라멘트
	HS Code	540419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38-01	FTA-BOM-38-02	FTA-BOM-38-03
	부품명	나일론 수지	안료	조제윤활유
	소요량	4.0	3.0	1.0
	단 위	Kg	Kg	Kg
	업체코드	A-002	A-003	A-004
	업체명	A-002	A-003	A-004
	구매단가(KRW)	280	250	320
	HS Code [2012]	391190	321290	340399
	HS Code [2007]	391190	321290	340399
	HS Code [2002]	391190	321290	340399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칠레
FTA)

제5404.19호에 분류되는 합성모노필라멘트의 한-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4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404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4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404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사례물품인 합성모노필라멘트에 투입된 역외산 재료는 모두 제54류 이외의 물품이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이다.



39 나일론 직물 (제5407.4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4류에는 유기중합체 및 화학적 처리 또는 화학적 변성한 천연 유기중합체 등을 용융하거나 용제로 용해하여 방사구를 통해 압출·응고시킨 필라멘트상의 인조섬유와 필라멘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이 분류되며 인조필라멘트로 분류되는 혼방섬유의 사 및 직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조섬유에는 합성섬유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가 포함된다.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10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3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4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2	염색한 것
	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4	날염한 것
	5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소호	품명
5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2		염색한 것
5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		날염한 것
6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69		기타
7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72		기타
7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74		날염한 것
8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8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2		염색한 것
8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4		날염한 것
9		그 밖의 직물
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92		염색한 것
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94		날염한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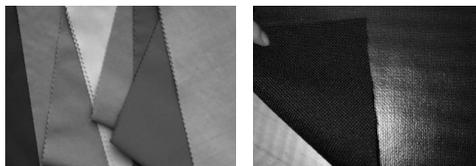
나일론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합성섬유로 1938년 미국 뒤폰사(社)의 캐로더스(Carothers)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폴리아미드계에 속한다. 나일론이라 함은 폴리아미드계 합성 섬유에 붙여진 일반명인데, 나라별로 또는 생산회사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거미줄보다 가늘고 마찰에 강하며 인장강도가 다른 섬유보다 월등하다.

양모보다 가볍고 젖어도 강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탄력성과 보온성도 겸하고 있다. 충해를 받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의복에서부터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열처리로 꼬아진 울리 나일론, 크레이프 나일론, 그밖에 여러 가지 가공법으로 신축성이 좋고 부피가 큰 나일론의 등장으로 양모와 같은 탄력성과 촉감을 얻게 되고 흡수성도 있어 용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HS 제5407.42호

품명
나일론 직물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00	염료
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90	합성필라멘트사, 100% 나일론 사
3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91	30	완성가공제, 발수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4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20	박스
5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캡(ca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822.90	10	보빈
6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90	10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탈회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날실을 가지런히 정리해 정경시켜 기계에 부착하고 종광을 이용해 날실을 서로 엇갈리게 상하로 개구 시킨 다음 씨실을 그 사이에 짜 넣는 일을 반복한다. 이후 염색공정에서 제직시 부여된 조제를 제거하고 섬유에 포함된 색소를 파괴하여 백도를 증가시킨 후 염색한다. 이후 지정된 온도로 원단을 압축하여 광택을 내고 표준 견본 등을 검토하여 제품을 검사한다.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 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408호는 별표9 제5호 참조)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p>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5407.61.11호·제5407.61.21호·제5407.61.91호에 해당하는 물품 :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5402.43.10호·제5402.52.1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터키	<p>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p> <p>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p> <p>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사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408호는 별표9 제5호 참조></p>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제 품	제품 품번	FTA-BOM-39
	제품명	나일론 직물
	HS Code	540742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비	부품 품번	FTA- BOM-39-01	FTA- BOM-39-02	FTA- BOM-39-03	FTA- BOM-39-04	FTA- BOM-39-05
	부품명	염료	합성 필라멘트사	합성 필라멘트직물	완성가공제	박스
	소요량	7	0.8	1	1.2	1
	단 위	Kg	Kg	Kg	Kg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140	380	150	20	160
	HS Code [2012]	320411	540220	540710	380991	481910
	HS Code [2007]	320411	540220	540710	380991	481910
	HS Code [2002]	320411	540220	540710	380991	48191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페루
FTA)

제5407.42호에 분류되는 나일론 직물의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4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407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5106호~제5113호, 제5205호~제5212호, 제5402.11호~제5402.39호, 제5402.45호~제5402.69호, 제5404.12호~제5404.90호, 제5406호~제5408호, 제5509호~제55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사례물품인 나일론 직물이 제5407호에 분류되며 원재료 중 합성 필라멘트사가 제5402호에 분류된다. 또한 해당 합성필라멘트사는 역외산 원재료이므로 나일론 직물은 한-페루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페루 FTA는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사례의 나일론 직물 제품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는 합성필라멘트사 (0.8Kg)이므로 총 중량 (10Kg)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

결과적으로 사례의 합성필라멘트사 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충족이 가능하게 되어 한-페루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40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5407.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4류에는 유기중합체 및 화학적 처리 또는 화학적 변성한 천연유기중합체 등을 용융하거나 용제로 용해하여 방사구를 통해 압출·응고시킨 필라멘트상의 인조섬유와 필라멘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이 분류되며 인조필라멘트로 분류되는 혼방섬유의 사 및 직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조섬유에는 합성섬유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가 포함된다.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10	강력사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3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4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2	염색한 것
	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4	날염한 것
	5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번호	소호	품명
52		염색한 것
5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		날염한 것
6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69		기타
7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72		기타
7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74		날염한 것
8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8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2		염색한 것
8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4		날염한 것
9		그 밖의 직물
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92		염색한 것
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94		날염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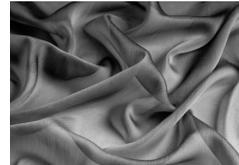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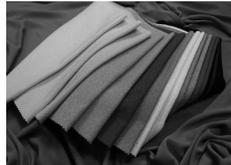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폴리에스테르 섬유들은 일반적으로 반응법과 성질이 유사해 신장시킨 후에 곧 원상태로 되돌아오고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으며 녹는점은 약 260℃이다. 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강도는 감소하나 색에는 변화가 없다. 폴리에스테르는 내화학성이 있으며 가장 흔한 세정 용매를 사용해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다. 또한 곤충과 미생물의 공격에도 강하며 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제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전기가 잘 발생한다.

HS
제5407,5-/6-호

품명
폴리에스테르 직물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00	분산성 염료 등
2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컵(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	100	지관
3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100	합성필라멘트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4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89.1	플라스틱제 용기 등, 비닐 팩, 플라스틱 캡 등
5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90	50	아크릴 바인더
6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울룩불룩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20	33	종이튜브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7	합성 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	33	유연제
8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30.1	라벨
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28.6	종이박스
10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91	20	완성가공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등
11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18.5	폴리염화비닐
12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16	조제안료
13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99	16	종이라벨
14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15.1	유기계면활성제, 정련제, 호발제, 분산제, 대전방지제 등
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5	12.5	가성소다
16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10	조제점결제, 대전방지제
17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산화유도체	2915.29	10	대전방지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8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1.10	7.5	합성유연제
19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10	5	폴리아미드수지, 호료제
2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7.00	2.5	과산화수소
21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24	2.5	빙초산
22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91	2.5	조제윤활유, 원단유연제
23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19	2.5	폴리초산비닐
24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20	2.5	폴리에테르수지, 염료
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90	2.5	비닐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필라멘트사 등의 원재료를 직조공정을 통해 직물로 제직한 후 전처리 공정에 해당하는 엔드레스-봉침-축소 및 정련-탈수-해포 및 언폭 등을 거친 후 염색전처리 공정 및 염색공정을 거친다. 이후 수지를 첨가하여 촉감을 부드럽게 하고 생도를 맞추어 건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제품검사공정을 거친 후 개별포장하여 출하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408호는 별표9 제5호 참조>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5407.61.11호·제5407.61.21호·제5407.61.91호에 해당하는 물품 :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5402.43.10호·제5402.52.1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408호는 별표12 제5호 참조>

복합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40
	제품명	폴리에스테르 직물
	HS Code	540751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40-01	FTA-BOM-40-02	FTA-BOM-40-03	FTA-BOM-40-04
	부품명	분산성 염료 등	지관	합성필라멘트사	플라스틱제 용기 등
	소요량	1.5	1	1.7	1.5
	단 위	Kg	EA	Kg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구매단가(KRW)	100	30	400	70
	HS Code [2012]	320411	482210	540211	392310
	HS Code [2007]	320411	482210	540211	392310
	HS Code [2002]	320411	482210	540210	39231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HS2002 상이	-

3) 결정기준 해설 (한-페루 FTA)

제5407.5-6-호에 분류되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한-페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4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407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5106호~제5113호, 제5205호~제5212호, 제5402.11호~제5402.39호, 제5402.45호~제5402.69호, 제5404.12호~제5404.90호, 제5406호~제5408호, 제5509호~제55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407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5407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사례물품인 폴리에스테르직물이 제5407호에 분류되며 원재료 중 동일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없으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외 세번(HS 제5402.11호) 해당물품인 합성필라멘트사(FTA-BOM-04-02)가 역외산이 사용되었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한-페루 FTA는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사례의 폴리에스테르 직물제품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 중 제외세번에 속하는 원재료는 합성필라멘트사(Kg) 이므로 총 중량(10Kg)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사례의 합성필라멘트사 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최소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페루 FTA 협정상 비원산지 제품이다.



41 합성필라멘트 직물(합성필라멘트 85% 이상) (제5407.7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4류에는 유기중합체 및 화학적 처리 또는 화학적 변성한 천연 유기중합체 등을 용융하거나 용제로 용해하여 방사구를 통해 압출·응고시킨 필라멘트상의 인조섬유와 필라멘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이 분류되며 인조필라멘트로 분류되는 혼방섬유의 사 및 직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조섬유에는 합성섬유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가 포함된다.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10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3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4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2	염색한 것
	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4	날염한 것
	5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화	소	호	품	명
	5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2		염색한 것	
	5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		날염한 것	
	6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69		기타	
	7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72		기타	
	7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74		날염한 것	
	8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8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2		염색한 것	
	8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4		날염한 것	
	9		그 밖의 직물	
	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92		염색한 것	
	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94		날염한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제5407.71호 내지 제5407.74호에는 합성필라멘트의 직물로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합성필라멘트만을 분류한다.

HS
제5407.7-호

품명
합성필라멘트
직물(합성필라멘트
85% 이상)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 한다)	5402	100	합성필라멘트사
2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91	착색제
3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캡(ca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	33	지관
4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33	종이박스
5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4	25	합성모노필라멘트사, 폴리프로필렌사, 폴리에스터사
6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	17	지관라벨
7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1.10	8	합성유연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 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8	조제점결제
9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8	폴리에틸렌
10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8	폴리프로필렌
11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30	8	폴리염화비닐
12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9	8	플라스틱제의 용기 등
13	겹 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 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807.00	8	지관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원재료인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등 합성필라멘트사를 제직공정을 통해 직물의 형태로 만든 후 염색공정 및 후처리공정을 거쳐 직물에 색을 입히고 검사와 포장공정을 거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서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2. 날염직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408호는 별표9 제5호 참조)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5407.61.11호·제5407.61.21호·제5407.61.91호에 해당하는 물품 :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5402.43.10호·제5402.52.1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408호는 별표9 제12호 참조>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한 인 제 배	제품 품번	FTA-BOM-41
	제품명	합성필라멘트직물(합성필라멘트 85% 이상)
	HS Code	5407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바탕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41-01	FTA-BOM-41-02	FTA-BOM-41-03	FTA-BOM-41-04	FTA-BOM-41-05
	부품명	합성 필라멘트사	착색제	지관	종이박스	합성 모노필라멘트사
	소요량	7	2.3	1	1	0.7
	단 위	Kg	Kg	EA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120	180	80	410	60
	HS Code [2012]	540220	320411	482290	481910	540490
	HS Code [2007]	540220	320411	482290	481910	540490
	HS Code [2002]	540220	320411	482290	481910	540490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칠레 FTA)

제5407.7-호에 분류되는 합성필라멘트 직물(합성필라멘트 85% 이상)의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4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407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사례물품 합성필라멘트 직물은 제5407호에 분류되며 원재료는 모두 제5407호 이외의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원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한-칠레 FTA 협정상 합성필라멘트 직물은 원산지 물품이다.



42 아세테이트 직물 (제5408.2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4류에는 유기중합체 및 화학적 처리 또는 화학적 변성한 천연유기중합체 등을 용융하거나 용제로 용해하여 방사구를 통한 압출·응고시킨 필라멘트상의 인조섬유와 필라멘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이 분류되며 인조필라멘트로 분류되는 혼방섬유의 사 및 직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조섬유에는 합성섬유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가 포함된다.

제5408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를 제조하는 기본재료는 처리공정(용해 혹은 화학적인 처리 또는 화학적인 변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천연의 원료로부터 추출한 유기고분자이다.

호	소호	품명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2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2	염색한 것
	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4	날염한 것
	3	그 밖의 직물

호	소호	품명
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32	염색한 것	
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34	날염한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아세테이트는 아세테이트 레이온이라고도 하는데 셀룰로스 분자는 1단위당 3개의 수산기를 갖는다. 그 수산기를 아세트산 무수물과 소량의 황산으로 처리하면 아세틸화하는데, 이 아세틸화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제품이 만들어진다. 아세톤에 녹여 건식방사(乾式紡絲)하여 주로 명주실과 같은 장섬유(필라멘트)로 만들고 또한 권축(捲縮)·건조시킨 후 절단하여 단섬유(스테인플)도 만든다.

아세테이트 직물은 감촉이 좋고 탄력성이 있으며 비중 1.32, 수분 흡수율 6.5%, 연화점 200~203℃이다. 인장강도는 1.4g(데니어당)으로 작지만 무명에 비해 가볍고 수분을 적게 흡수하며 부드럽다. 속내의 안감에 적합하고 크레이프를 잘 때 교직(交織)한다. 세탁에는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주름이 잡히기 쉽기 때문에 물을 짜지 않고 옷걸이에 걸어서 말린다. 다리미 온도는 120~140℃, 얼룩빼기에 알코올·아세톤·시너·옥살산이나 진한 아세트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좁이 먹지 않고 곰팡이에도 저항성이 있다.

HS
제5408.22호

품명
아세테이트 직물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1	100	염색제
2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	100	재생 반합성 필라멘트사, 비스코스 필라멘트사,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
3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컵(cu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90	66	지관
4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91	66	조제윤활유, 대전 방지제, 유연제
5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90	33	유기계면활성제, 정련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주요 원재료인 아세테이트필라멘트사와 비스코스필라멘트사를 입고한 후 직물공정을 거쳐 아세테이트직물을 얻는다. 이후 염료를 이용하여 염색하고 건조 후 워싱이나 코팅과 같은 후가공 공정을 통하여 직물의 표면처리를 하고 개별포장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한다.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서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408호는 별표9 제5호 참조>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날염 또는 염색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미국	제5403.10호, 제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408호는 별표9 제5호 참조>

복합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42				
	제품명	아세테이트 직물				
	HS Code	540822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42-01	FTA-BOM-42-02	FTA-BOM-42-03	FTA-BOM-42-04	FTA-BOM-42-05
	부품명	염색제	재생 반합성 필라멘트사	지관	조제윤활유	정련제
	소요량	1.0	5.0	1	2.0	2.0
	단 위	Kg	Kg	EA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320	60	270	110	90
	HS Code [2012]	320411	540310	482290	340391	340290
	HS Code [2007]	320411	540310	482290	340391	340290
	HS Code [2002]	320411	540210	482290	340391	34029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페루 FTA)

제5408.22호에 분류되는 아세테이트 직물의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가공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408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408호로 변경되거나,
- ② 날염 또는 염색공정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하되, 이때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408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5408호로 변경되거나,

- 사례물품인 아세테이트직물은 제5408호에 분류된다. 원재료는 모두 제5408호 이외의 품목번호에 속하므로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날염 또는 염색공정을 체결당사국 내에서 수행하되 이때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날염 또는 염색공정은 체결당사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30(320+11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3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57\%$$

따라서 아세테이트직물의 부가가치비율은 57%이며 50%을 초과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하며 날염 및 염색공정이 역내에서 발생한 경우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사례의 아세테이트직물은 한-페루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다.



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제5503.2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5류에는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短纖維 ; Discontinuous fibers) 또는 장섬유 (Filament)의 토우(Tow)가 분류되며 이것들로 제조된 것으로는 사 및 직물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그리고 인조스테이플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는 혼합섬유제품도 분류된다.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s)를 통하여 압출된 필라멘트가 토우의 형상으로 집속(集束)되는데, 이 토우를 연신한 다음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제조된다.

호	소호	품명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1	아라미드(aramid)의 것
	19	기타
	20	폴리에스테르의 것
	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40	폴리프로필렌의 것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스테인플이란 필라멘트사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단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꼬임을 주어 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짧은 섬유인데, 즉 인조나 천연에 관계없이 방적성(紡績性)이 있는 섬유의 총칭 또는 섬유의 길이를 말한다.

스테인플 섬유(Staple fiber)란 위에 언급된 면, 양모 등의 천연섬유와 필라멘트로 제조된 인조섬유를 방적의 원료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적용 길이로 절단한 짧은 스테이플을 가지고 방적에 의해 연속성 있도록 꼬임을 부여하여 만든 섬유이다. 또한 이 실로 만든 직물이나 편물의 원단도 포함할 수 있다.

HS
제5503.20호

품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100	PET
2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	38	조제윤활유, lubricant, 대전방지제
3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90	37	섬유유연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4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31	25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 FIBER GRADE
5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25	착색제, 형광증백제
6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3915.90	18	플라스틱 웨이스트, PET 등
7	폴리카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36	18	테레프탈산
8	산화티타늄	2823.00	13	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9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2825.80	13	히드라진 등, antimony trioxide
10	포화비환식모노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29	13	포화비환식카복시산, COBALT ACETATE
11	질소헥테로고리 화합물	2933.90	12	질소헥테로고리 화합물
12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9	12	유연제, ANTISTATIC AGENT
13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12	조제안료
14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12	실리콘 수지, 실리콘 유제
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5.90	12	촉매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6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90	6	인산에스테르, TRIMETHYL PHOSPHATE KS-5
17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90	6	촉매제
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용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가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1	6	플라스틱제 용기 등, 포장지
19	포장용 빈 포대	6305.33	6	포장재
20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6	철띠
21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5.00	6	착색제
2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90	6	대전방지제
23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20	6	인산, phosphoric acid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폴리에스테르 섬유 재료인 PET 등을 1시간 가량 건조하고 이를 용융 및 압출하여 '샤'의 형태로 만든다. (미연신 토우) 이후 저온에서 냉각하고 연신로울을 통하여 연신한다. (연신) 이후 권축로울을 통과하고, 열처리를 하여 원하는 길이로 절단함으로써 스테이플 섬유가 생산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및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 및 제5403.42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43
	제품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HS Code	55032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재료 명세서	부품 품번	FTA-BOM-43-01	FTA-BOM-43-02	FTA-BOM-43-03	FTA-BOM-43-04	FTA-BOM-43-05
	부품명	PET	조제윤활유	섬유유연제	에틸렌 글리콜	착색제
	소요량	4.0	2.0	1.0	1.0	2.0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	280	150	120	260
	HS Code[2012]	390710	340391	340290	290531	320411
	HS Code[2007]	390710	340391	340290	290531	320411
	HS Code[2002]	390710	340391	340290	290531	320411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5503.20호에 분류되는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5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503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5201호~제5203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3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5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5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503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사례물품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는 제5503호에 속하며 사용된 원재료는 모두 제5503호 이외의 품목번호에 속한다. 따라서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 ② 다만, HS 제5201호~제5203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3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5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사례물품의 원재료에는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한-미 FTA 협정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는 원산지물품이다.



44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직물 (제5516.2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5류에는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短纖維 ; Discontinuous fibers) 또는 장섬유(Filament)의 토우(Tow)로 제조된 것으로서, 사 및 직물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제5516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드레스용 재료가 있으며 커튼 또는 기타 실내가구용 직물 및 테이블보·모포·타월용 등의 재료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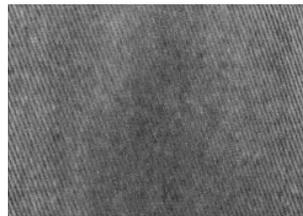
호	소호	품명
5516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1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2	염색한 것
	1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4	날염한 것
	2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2	염색한 것
	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4	날염한 것
	3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3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화 소 호	품 명
32	염색한 것
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34	기타
4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2	염색한 것
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4	날염한 것
9	기타
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92	염색한 것
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94	날염한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5516.22호

품명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직물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7	100	-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	100	-
3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00	분산염료
4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9	38	비닐
5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	25	-
6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25	실리콘
7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5.11	13	가성소다
8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29	13	염산구아니딘산
9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1.19	13	SYNOLON
10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90	13	TANNING SUBATANCE
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99	13	비닐
1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2	13	유연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사이징 연사공정으로 원사에 꼬임을 주는 작업을 하여 제직이 원활하게끔 하고 원사에 풀질하여 빔에 원사를 감는 작업을 한다. 이후 직기로 제직을 하여 제직공정을 거치고 제직된 생지를 연폭하여 전처리-정련과정을 거쳐 염색하고 텐터에서 건조 및 폭출한다. 이후 워싱공정에서 염색 원단을 유연제처리와 대전방지 등 마감처리를 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p>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p> <p>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p> <p>2-2. 날염직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p>
페루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날염 또는 염색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미국		<p>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 제5403.42호부터 제5404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터키		<p>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p> <p>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p>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터키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44
	제품명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직물
	HS Code	551622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비 어	부품 품번	FTA-BOM-44-01	FTA-BOM-44-02	FTA-BOM-44-03	FTA-BOM-44-04	FTA-BOM-44-05
	부품명	분산염료	비밀	Tanning Substance	실리콘	가성소다
	소요량	4.0	2.0	2.0	1.0	1.0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310	10	220	80	230
	HS Code [2012]	320411	392329	320290	391000	281511
	HS Code [2007]	320411	392329	320290	391000	281511
	HS Code [2002]	320411	392329	320290	391000	281511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5516.22호에 분류되는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직물의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516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516호로 변경되거나,
- ② 최소한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하는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하되, 이때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 물품의 가격이 MC법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해당 물품 공장도가격의 50% 미만일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516호와 다른 호의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5516호로 변경되거나,

- 사례물품인 재생·반합성 스테이플직물은 제5516호에 분류되며 사용된 원재료는 제5516호 이외의 품목번호에 속하므로,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최소한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¹⁾을 수반하는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하되, 이때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물품의 가격이 MC법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해당 물품 공장도가격의 50% 미만일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을 수반하는 염색, 날염공정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 또한

1)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은 정련(scouring), 표백(bleach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열고정(heat setting), 기모(raising), 캘린더링(caleendering), 방축가공(shrink resistance processing), 영구가공(permanent finishing), 데커라이징(decating), 침투(impregnating), 보수(mendig), 실밥제거(burling)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540(310+10+220)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54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54.0\%$$

따라서 재생·반합성 스테이플직물의 비원산지가치비율은 54%이며 50%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한-EFTA FTA 협정상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직물은 원산지 물품이다.



45 라셀 레이스 직물 (제5804.21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804호에는 튜울(Tulles) 및 기타 망직물(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된 것을 제외한다)과 레이스(Lace,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6002호의 편물을 제외한다)가 분류된다.

레이스는 사를 상호 꼬아서 만든 다소 복잡한 무늬요소가 망(이는 뚜렷이 공간이 있도록 가공된 기포를 형성하며 보통 규칙적인 크기와 형상을 가짐) 또는 장식연결코(무늬효과를 나타냄)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도록 가공된 장식적 직물이다. 이 무늬요소와 망목 혹은 장식연결코 제직배경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무늬요소가 별도로 만들어진 뒤에 조합하는 경우도 있다. 레이스는 기포위에 가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자수된 물품과 다르다.

호	소호	품명
5804		튤(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10	튤울 (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	기계로 만든 레이스
	21	인조섬유로 만든 레이스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0	손으로 만든 레이스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레이스란 실이 서로 엉키고 맺혀서 표면에 그물 모양의 구멍과 눈을 만들면서 문양을 나타내는 제품을 말한다. 천의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감친 부분의 천을 잘라내어 구멍을 만드는 커트 워크와 천의 씨날을 적당히 뽑아 버리고 남은 실을 묶어가는 드론 워크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며 주로 커튼 침대보 등 이불용품이나 옷에 많이 이용된다.

HS
제5804.21호

품명
라셀 레이스 직물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대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75	합성필라멘트사, 나일론사, 폴리에스테르사
2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58	착색제
3	제지용 펄프 종이 판지로 만든 보빈(bobbin) 스폰(spool) 컵(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	50	종이봉
4	금속드리사(metalised yarn)[침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 스트립(strip)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5	25	금속드리사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 스트립	3921.12	17	플라스틱 판, 스위트, 비닐
6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17	지제 라벨
7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09	16	합성스테이플사, 아크릴사
8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9	8	플라스틱 판, 스위트, 비닐 백
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50	8	박스포장
10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91	8	완성가공제
11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3	8	유기계면활성제, 유연제
12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32	8	경편직 직물류
13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31	8	기타 메리야스 편물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텐타공정을 통해 편직시에 발생된 원단의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염료가 원활하도록 섭씨 200도로 열가공을 하여 원단의 폭을 고정시킨다. 염색공정에서 원하는 색상의 원단을 만들고 이후 유연

가공공정으로 염료로 인해 뻣뻣해진 원단을 유연제를 첨가하여 삶아 주어 부드럽게 한다. 이후 검품 및 포장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p>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천연섬유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p> <p>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p>
페루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미국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터키	<p>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p> <p>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p>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천연섬유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p> <p>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p>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45
	제품명	라셀 레이스 직물
	HS Code	580421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보 료	부품 품번	FTA-BOM-45-01	FTA-BOM-45-02	FTA-BOM-45-03	FTA-BOM-45-04	FTA-BOM-45-05
	부품명	합성 필라멘트사	착색제	종이봉	금속드리사	레이스 직물
	소오량	7.0	1.8	1	0.9	0.3
	단 위	Kg	Kg	EA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30	190	400	210	20
	HS Code [2012]	540220	320411	482290	560500	580421
	HS Code [2007]	540220	320411	482290	560500	580421
	HS Code [2002]	540220	320411	482290	560500	580421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5804,21호에 분류되는 라셀 레이스 직물의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단위 세번변경 또는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8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804호가 생산되거나,
- ② 최소한 20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하는 염색 또는 날염 공정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하되, 이때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MC법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해당 물품 공장도가격의 50% 미만일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8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5804호가 생산되거나,
 - 사례물품인 라셀 레이스 직물은 제5804호에 속하며, 이와 동일한 제58류에 속하는 원재료에는 동일한 물품인 레이스 직물이 제5804호에 속한다. 또한 동 원재료는 역외산 재료이다. 따라서, 제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한-EFTA FTA는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 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사례의 합성필라멘트사 제품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 중 제58류의 원재료는 레이스직물(0.3Kg) 이므로 총 중량(10Kg)의 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기준을 충족한다.
- ③ 최소한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²⁾ 수반하는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하되, 이때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MC법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해당 물품 공장도가격의 50% 미만일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230(210+20) 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23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23.0\%$$

2)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은 정련(scouring), 표백(bleach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열고정(heat setting), 기모(raising), 캘린더링(caleendering), 방축가공(shrink resistance processing), 영구가공(permanent finishing), 데커라이징(decating), 침투(impregnating), 보수(mendig), 실밥제거(burling)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따라서 한-EFTA FTA 협정상 라셀 레이스직물의 비원산지 재료비율은 23%로 50%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첫 번째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한-EFTA FTA 협정상 라셀레이스 직물은 원산지 물품이다.



46 자수 직물(Embroidery Fabric) (제5810.9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810호에서 ‘자수포’라 함은 방직용 섬유직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박편, 비드, 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를 꿰매어서 아프리카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수침으로 짠 태피스트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05호)

호	소호	품명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 ·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	그 밖의 자수천
	91	면으로 만든 것
	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자수란 바탕천에 여러 가지 색실로 무늬를 수놓아 장식하는 공예 미술을 말한다. 또한 직물, 편물, 망, 피혁, 종이류 등의 표면에 실, 끈 종류, 천 조각, 피혁, 비즈, 깃털 등으로 누빈다든지, 붙인다든지, 묶는다든지, 끼워 넣는 등으로 장식하는 수예기법 및 그런 작품의 총칭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직물을 자수직물이라고 한다.

HS
제5810.92호

품명
자수 직물



아름다운 기공수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60	착색제, Acid Dyed Process
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30	지와 판지, 포장지
3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30	합성필라멘트사, Spandex Yarn, Polyester Yarn
4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	20	재생 반합성 필라멘트사, Nylon Mono Filament
5	경(經)편직 직물류[거문(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	20	경편직 직물류, Poly Mesh
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90	20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PET 필름
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10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플라스틱
8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32	10	기타 메리야스 편물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캡(ca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822.90	10	제지용 펄프, 지관
10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10	폴리에테르, 포장비닐
1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10	메리야스 편물
1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61	10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13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 없다)	5508.10	10	합성스테이플 재봉사
14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5603.92	10	부직포
15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5.00	10	금속드리사
16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3	10	메리야스 편물, 폴리에스테르 망사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자수사를 원료로 하여 자수기계로 제작한 후 원단을 생산하고 이를 염색공장으로 보내어 원하는 색으로 염색한 후 용해공정을 통해 자수를 제작할 때 밑에 받치는 솔시트(부직포)를 녹인다. 염색이 된 자수원단을 건조하면서 다림질하여 평평하게 하는 텐타공정을 거치고 이후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규격에 원단의 폭을 맞추어 커팅하는 공정을 거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제품	제품 품번	FTA-BOM-46				
	제품명	자수 직물(Embroidery Fabric)				
	HS Code	581092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재료	부품 품번	FTA-BOM-46-01	FTA-BOM-46-02	FTA-BOM-46-03	FTA-BOM-46-04	FTA-BOM-46-05
	부품명	Acid Dyed Process	지와 판지	Polyester Yarn	재생 반합성 필라멘트사	자수포
	소요량	3.0	1	3.0	1.0	3.0
	단위	Kg	EA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50	120	290	150	240
	HS Code [2012]	320411	481910	540220	540310	581092
	HS Code [2007]	320411	481910	540220	540310	580421
	HS Code [2002]	320411	481910	540220	540310	580421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5810.92호에 분류되는 자수 직물(Embroidery Fabric)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810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810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810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5810호가 생산되거나,

- 사례물품인 자수직물은 제5810호에 속한다. 원재료 중 자수포가 최종제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나 역내산 재료이므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 가격이 1,02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320(50+120+1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1,02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20)}{\text{FOB 가격}(1,020)} \times 100 = 68\%$$

따라서 자수직물의 역내가치비율은 68%로 40%를 초과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조건 모두 충족하므로 사례의 자수직물은 한-아세안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다.



47 폴리우레탄 직물 (제5903.2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침투 및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나 원통둘레에 꺾지 아니하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 직물이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힌 것,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여 그림모양을 나타낸 것, 다포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쉬트, 스트립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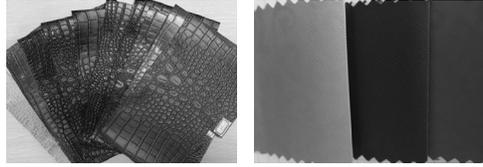
호	소호	품명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10	폴리염화비닐의 것
	20	폴리우레탄의 것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폴리우레탄은 Polyisocyanate 와 Polyalcohol의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우레탄 결합의 폴리머이다. 폴리우레탄은 탄성, 내마모성, 가공성이 우수하여 산업 및 소비재, 부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폴리우레탄의 종류에 따라 그 물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용도에 맞는 제품의 선택이 중요하다. 크게 2가지로 구분하면 폴리우레탄은 열가소성(열로 녹여 성형함)과 열경화성(액상을 열로 굳힘)이 있다.

HS 제5903.20호

품명
폴리우레탄 직물



합성수산물 가공식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	78	합성필라멘트 직물, 생지, 나일론직물
2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50	78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레진
3	환식탄화수소	3204	78	합성유기착색제, 산성염료
4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제 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91	67	페인트와 바니시, 발수제, 촉매 등
5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	33	페인트와 바니시, 폴리우레탄레진
6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컵(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822.90	22	제지용 펄프, 지관
7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22	실리콘수지, 실리콘
8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00	11	탄소, 카본블랙
9	환식탄화수소	2902.30	11	환식탄화수소, 용제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62	11	플라스틱 판, 쉬트, PET 필름
11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9	11	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12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11	종이, 판지
13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45	11	합성필라멘트사, 나일론사
14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32	11	메리야스 편물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매입한 원단을 염색기계에 연결하고 염료, 물, 유안 등을 이용하여 약 100℃에서 염색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말리면서 160~170℃에서 주름 펴기 작업(텐타)을 거치고 염색된 원단을 코팅기계에 연결하여 폴리우레탄으로 코팅한 후 포장하여 완제품으로 출하한다.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사료부터 생산된 것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및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사료부터 생산된 것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탕수산물 가공식품

화훼산업

선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47
	제품명	폴리우레탄 직물
	HS Code	590320
	EXW(KRW)	920
	FOB(KRW)	94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47-01	FTA-BOM-47-02	FTA-BOM-47-03	FTA-BOM-47-04	FTA-BOM-47-05
	부품명	합성필라멘트 직물	폴리우레탄	합성유기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폴리우레탄 레신
	소요량	0.6	2.1	3.5	2.5	1.0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330	180	150	20	90
	HS Code [2012]	540710	390950	320411	380991	320810
	HS Code [2007]	540710	390950	320411	380991	320810
	HS Code [2002]	540710	390950	320411	380991	32081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내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5903.20호에 분류되는 폴리우레탄 직물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9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903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5111호~제5113호, 제5208호~제5212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7호~제5408호 및 제5512호~제55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59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5903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사례물품인 폴리우레탄 직물은 제5903호에 분류되며 원재료 중 이와 동일한 제59류에 속하는 원재료는 없다. 따라서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불문하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 ② 다만, HS 제5111호~제5113호, 제5208호~제5212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7호~제5408호 및 제5512호~제55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 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비원산지원재료 중 합성필라멘트 직물은 제5407호에 분류되며 이는 규정된 제외세번에 포함된다. 따라서 제외세번에 해당되어 세번변경기준 불충족에 해당된다.
- ③ 한-미 FTA는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총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사례의 폴리우레탄 직물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 중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합성필라멘트직물(0.6Kg)은 총 중량 (10Kg)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소기준 7%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최소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사례의 폴리우레탄 제품은 세번변경기준 불충족에도 불구하고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8 광택 직물 (제5907호)

1 관세율표 분류

제59류에는 침투(impregnated), 도포(coated), 피복(covered) 또는 적층(laminated)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포함) 류와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데, 제5907호에는 제5901호에서 제5906호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가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5907	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광택직물은 윤기를 주어 만든 직물로 오래 전부터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18C에 처음 제작되었다. 처음에 복식으로 소개되었으나 카텐, 소파, 벽지 대용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윤을 내거나 윤기 효과를 준 섬유로는 윤을 낸 면, 유사친치 및 친치가 여기에 속하는데, 유사친치는 폴리에스터와 레이온(50:50)으로 만든 것이다. 이들 섬유는 넓은 범위의 색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 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염료 내구성은 다양하다.

친치는 원래 여러 색의 프린트를 한 윤을 낸 100%면 섬유였는데 그 후 단색으로 소개되었다. 광택직물 제조에는 섬유의 표면에 윤을 주는 마무리 작업이 따른다. 고급 친치는 직조 면 섬유로 만드는데 이 같은 면섬유는 몹시 뒤틀어서(twist) 실날을 방적한 것이다.

HS
제5907호

품명
광택직물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50	100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 수지
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롤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	100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PET 필름
3	환식탄화수소	2902.30	100	톨루엔
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12	100	메틸에틸케톤, 용제
5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10	100	페인트와 바니시, 경화제
6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19	50	인쇄용 잉크
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50	합성필라멘트 직물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 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3.21	5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직물
9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 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00	50	탄소, 카본 블랙
10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20	50	알루미늄 분과 플레이크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PET 필름을 접착하고 비즈글래스를 부착한 후 HOTMELT를 코팅하고 완성된 필름에 T/C 원단을 부착한다. 이후 검사 및 WINDING공정으로 제품의 불량여부를 확인하고 규격에 맞추어 재단한 다음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여 적재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및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복합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48
	제품명	광택 직물
	HS Code	59070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48-01	FTA-BOM-48-02	FTA-BOM-48-03	FTA-BOM-48-04	FTA-BOM-48-05
	부품명	폴리우레탄 수지	PET 필름	톨루엔	합성폴리에스테르 직물	페인트와 바니시
	소요량	5.5	0.3	0.3	3.5	0.4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310	20	140	20	360
	HS Code[2012]	390950	392010	290230	540710	320810
	HS Code[2007]	390950	392010	290230	540710	320810
	HS Code[2002]	390950	392010	290230	540710	320810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5907호에 분류되는 광택 직물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특정물품가공 또는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가공공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 사(yarn)로부터 HS 제5907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사(yarn)를 수입하여 계약당사국에서 제직·편직 공정을 거쳐 해당 물품을 생산하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② 결합기준에 따라 날염공정과 2이상의 준비 및 마무리공정이 계약 상대국 내에서 수행되고, 투입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제품 공장도 가격의 47.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가공공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 사(yarn)로부터 HS 제5907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사(yarn)를 수입하여 계약당사국에서 제직·편직 공정을 거쳐 해당 물품을 생산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사례의 광택직물은 제5907호에 분류되며 비원산지 재료는 사(yarn)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 원재료 중 합성폴리에스테르 직물이 존재하며 이는 역외산 재료이다. ‘직물 (fabric)’의 경우 반드시 역내산 재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광택직물은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결합기준에 따라 날염공정과 2이상의 준비 및 마무리공정이 계약상대국 내에서 수행되고, 투입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제품 공장도가격의 47.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공장도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160(140+20) 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160)}{\text{EXW 가격}(1,000)} \times 100 = 16.0\%$$

따라서 광택직물의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은 16%로 47.5%에 미달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계약당사국 내에서 날염공정과 2 이상의 준비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다면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되므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49 파일 편물 (제6001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0류에 분류되는 편물에는 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s)과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s) 및 이들의 파일편물이 포함되는데 파일편물의 경우에는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이라도 제60류에 분류한다. 제60류에는 원단상, 관상의 것과 단순히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절단한 것을 분류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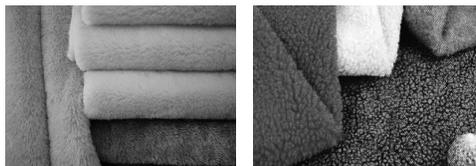
제6001호에는 파일편물이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롱파일편물과 테리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호	소호	품명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	롱파일 편물
	2	루프파일 편물
	21	면으로 만든 것
	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9	기타
	91	면으로 만든 것
	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6001호

품명
파일편물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콕(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402	100	플르에스테르사 등
2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 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1	56	염료
3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36	섬유용 유연제, 대전방지제
4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콕(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	36	지관
5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	20	염색조제
6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16	종이박스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7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	12	폴리에스테르사
8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12	비닐포장
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8	비닐
10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9	8	포장비닐
1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8	종이라벨
12	아이티온산염과 숯속실산염	2831.10	8	환원세정제
13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4	염료
14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5.12	4	-
15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91	4	-
16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21	4	-
17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4	-
18	포장용 빈 포대	6305.39	4	마대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9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4	포장박스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편직된 생지를 규격별로 구분한 후 염색 전 폭 고정을 위해 텐타공정을 거친다. 이후 고압염색기로 염색 및 날염공정을 거치고 염색된 원단을 건조한다. 제품별 형태에 따라 광내기, STEAMED ASTRA, CREASE 가공 등 세부 디테일 가공을 한 후에 각 아이템별 색상 및 후가공 공정별 검품 및 포장공정을 거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3.20호까지, 제5503.40호부터 제5503.90호까지 및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49
	제품명	파일 편물
	HS Code	600110
	EXW(KRW)	1,000
	FOB(KRW)	1,02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49-01	FTA-BOM-49-02	FTA-BOM-49-03	FTA-BOM-49-04	FTA-BOM-49-05
	부품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사	염료	섬유용 유연제	지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사
	소요량	5.0	0.4	0.4	1	4.2
	단 위	Kg	Kg	Kg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240	80	350	100	80
	HS Code[2012]	540233	320411	340290	482290	550390
	HS Code[2007]	540233	320411	340290	482290	550390
	HS Code[2002]	540233	320411	340290	482290	550390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6001호에 분류되는 파일 편물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0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001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5106호~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제5308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8호, 제5501호~제5503.20호, 제5503.40호~제5503.90호 및 제5505호~제55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복합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0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001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사례물품인 파일편물이 제6001호에 분류되며 이와 동일한 제60류에 분류되는 원재료는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불문하고 제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 ② 다만, HS 제5106호~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제5308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8호, 제5501호~제5503.20호, 제5503.40호~제5503.90호 및 제5505호~제55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원재료 중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제5402호) 및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사(제5503.90호)가 제외세번에 해당된다.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는 역내산이므로 원산지 충족에 문제가 없으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사의 경우 역외산이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기 두 조건 중 첫 번째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나 두 번째 제외세번에 해당되므로 사례의 파일편물은 한-미국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 아니다.

따라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산이 투입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사(FTA-BOM-49-05)를 역내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50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제6004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0류에 분류되는 편물에는 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s)과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s) 및 이들의 파일편물이 포함되는데, 파일편물의 경우에는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이라도 제60류에 분류한다. 제60류에는 원단상·관상의 것과 단순히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절단한 것을 분류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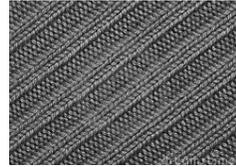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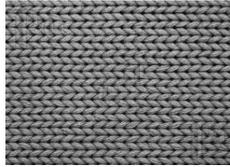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는데 폭이 30cm를 초과 하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의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	소호	품명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6004호

품명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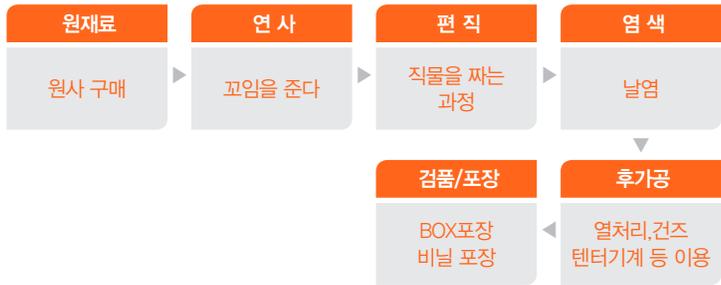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100	스판덱스, 폴리에스테르사 등
2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83	염료 등
3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콕(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90	40	종이말대
4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17	-
5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10	-
6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90	7	폴리비닐
7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 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50	7	박스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완성가공제, 염색 축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91	6	완성가공제
9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	3	유연제
1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5502.46	3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토우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원사를 환편기로 편직하고 상압염색기를 이용하여 염색한 후 텐터 기계를 이용하여 가공처리를 하고 검사 및 포장공정에서 원단의 불량을 검사한다. 이후 포장 및 출하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3.20호까지, 제5503.40호부터 제5503.90호까지 및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50				
	제품명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HS Code	60041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50-01	FTA-BOM-50-02	FTA-BOM-50-03	FTA-BOM-50-04	FTA-BOM-50-05
	부품명	폴리 에스테르사	합성유기 착색제	폴리비닐	종이말대	섬유유연제
	소요량	5.5	1.5	0.5	1	2.5
	단 위	Kg	Kg	Kg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540233	320411	390490	482290	320210
	HS Code[2007]	540233	320411	340290	482290	320210
	HS Code[2002]	540233	320411	340290	482290	320210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6005호에 분류되는 메리야스/뜨개질 편물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0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004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5106호~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제5308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8호, 제5501호~제5503.20호, 제5503.40호~제5503.90호 및 제5505호~제55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0류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6005호로 변경되어야 하나,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위의 투입원재료 중 폴리에스테르사(HS 제5402호)는 제외세번에 속하므로 반드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역내산 재료로 확인되므로 최종제품인 메리야스/뜨개질 편물은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51 경편직 직물 (제6005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0류에 분류되는 편물에는 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s)과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s) 및 이들의 파일편물이 포함되는데, 파일편물의 경우에는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이라도 제60류에 분류한다. 제60류에는 원단상·관상의 것과 단순히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절단한 것을 분류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6005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6005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2	면으로 만든 것
	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2	염색한 것
	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4	날염한 것
	3	합성섬유로 만든 것
	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32	염색한 것
	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34	날염한 것

호	소호	품명
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2	염색한 것	
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4	날염한 것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경편은 다수의 경사가 각각 형성하는 고리가 웨일 방향으로 진행되고 사선 방향으로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경편의 앞면은 위 평편의 앞면과 유사하나 뒷면은 전혀 다르다.

편성 속도가 빨라 생산성이 높으며 길이 방향의 신축성은 거의 없고 코가 상하로 비스듬히 지그재그형으로 진행하면서 경편성물을 만드는 편성 과정으로 경편이라고도 한다.

편성기의 종류에 따라서 트리코, 밀라니즈, 라셀, 심플렉스 등으로 분류하는데 주로 란제리, 내의 및 겹옷을 비롯하여 산업 용품에도 쓰인다.

HS
제6005호

품명
경편직 직물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83	분산 염료 등
2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	56	폴리에스테르 편물 등
3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50	원사 (폴리에스테르)
4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 풀(spool)·캡(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	44	지관
5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33	방전제, 분산제
6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21	22	-
7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	22	합성유연제
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 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22	박스
9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9	22	비닐백
10	아이티온산업과 솔폭실산업	2831.10	17	환원세정제
11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 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 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17	염료 (Foil 작업)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2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821.10	17	종지라벨
1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12	스펀지 본딩
14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5.21	6	NaOH
15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5.00	6	안료
16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20	6	레신
17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 인 것을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90	6	비닐 포장재
18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6	포장비닐
19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역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7.41	6	와인딩밴드
20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55	6	전사지
21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 [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6	포장박스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폴리에스테르 및 트리코트 등의 원재료를 준비한 후 원사를 합치는 합사공정을 거쳐 합사된 원사를 T/M작업을 통해 연사한다. 연사된 실을 경사빔 작업을 하는 정경 공정을 거쳐 원단을 제작한다. 필요한 색으로 염료를 이용해 염색한 후 기모 등으로 가공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p>※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p>	
페루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미국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3.20호까지, 제5503.40호부터 제5503.90호까지 및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터키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p>※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p>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51
	제품명	경편직 직물
	HS Code	600521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보 료	부품 품번	FTA-BOM-51-01	FTA-BOM-51-02	FTA-BOM-51-03	FTA-BOM-51-04	FTA-BOM-51-05
	부품명	폴리 에스테르사	합성유기 착색제	폴리비닐	종이말대	섬유유연제
	소요량	8.4	1.2	0.2	1	0.2
	단 위	Kg	Kg	Kg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540233	320411	390490	482290	320210
	HS Code [2007]	540233	320411	340290	482290	320210
	HS Code [2002]	540233	320411	340290	482290	320210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6005호에 분류되는 경편직 직물의 한-EFTA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005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005호가 생산되거나,
- ② 최소한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하는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하되, 이때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 물품의 가격이 MC법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해당 물품 공장도가격의 50% 미만일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005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

- 경편직 직물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동일 호(제600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사례의 원재료상 제6005호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최소한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하는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하되, 이때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물품의 가격이 MC법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해당 물품 공장도가격의 50% 미만일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한-EFTA FTA에서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정련(scouring), 표백(bleach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열고정(heat setting), 기모(raising), 캘린더링(calendering), 방축가공(shrink resistance processing), 영구가공(permanent finishing), 데커라이징(decatizing), 침투(impregnating), 보수(mending), 실밥제거(burling)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공정과 염색 또는 날염공정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며,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25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2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28.4\%$$

따라서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 등 한-EFTA FTA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공정들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28.4%로 원산지 기준인 50% 미만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52 합성·반합성의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제6006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0류에 분류되는 편물에는 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s)과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s) 및 이들의 파일편물이 포함되는데, 파일편물의 경우에는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이라도 제60류에 분류한다. 제60류에는 원단상·관상의 것과 단순히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절단한 것을 분류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6006호에는 제60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 및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면으로 만든 것
	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2	염색한 것
	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4	날염한 것
	3	합성섬유로 만든 것
	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32	염색한 것

호	소호	품명
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34	날염한 것	
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2	염색한 것	
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4	날염한 것	
90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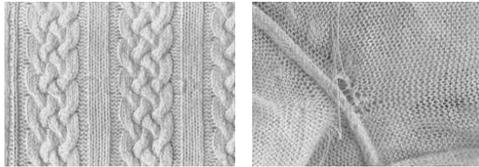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뜨개질이란 실로 옷감이나 직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편물(編物)이라고도 하며, 만들어진 옷감을 편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뜨개질로 뜬 직물은 바늘땀(코)이라고 부르는 연이은 고리로 구성되는데 뜨개질은 손으로 뜰 수도 있고 편물 기계로 짤 수도 있다.

편물은 구성단위가 코이므로 실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직물에 비해 신축성이 크고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활동하기에 편리하며 세탁 후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관리가 쉽고 함기량이 많아 가볍고 따뜻하며 통기성과 투습성이 좋아 위생적이다. 편물은 풀어서 다시 뜰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크기 조절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반면 한 부분이 손상되면 연속적으로 코가 풀리기 쉬운 단점이 있다.

HS
제6006호

품명
합성·반합성의 메
리아스 /
뜨개질 편물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92	염료
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73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사
3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 풀(spool)·컵(cu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	50	지관
4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	46	편물
5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23	비닐포장재
6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	19	호료제, 나염염료
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	15	지제라벨
8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12	유연제, 안정제, 정련제 등
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09.51	8	레이온
1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종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19.90	8	-
11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4	-
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12	4	-

약품·수산물·기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3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90	4	-
1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4	-
1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12	4	-
16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5502	4	-
17	금속드리사(metalised yarn)[짐프한(gimpe)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5.00	4	금속사
18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21	4	빙초산
19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5.11	4	가성소다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준비해 편직하는 공정을 거쳐 원단을 표백하고 셋팅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친다. 고객이 원하는 색으로 염색하는 나염공정을 거쳐 원단의 중량과 폭을 셋팅하는 텐타공정을 거친 후 검품과 포장이 완료되면 제품이 완성된다.



복합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선유 · 의류 산업

기계 · 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3.20호까지, 제5503.40호부터 제5503.90호까지 및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52
	제품명	합성.반합성의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HS Code	600621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보 료	부품 품번	FTA-BOM-52-01	FTA-BOM-52-02	FTA-BOM-52-03	FTA-BOM-52-04	FTA-BOM-52-05
	부품명	폴리 에스테르사	합성 필라멘트사	유연체	지관	나염염료
	소요량	9.0	0.8	0.1	1	0.1
	단 위	Kg	Kg	Kg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540233	600621	340290	482290	320210
	HS Code [2007]	540233	600621	340290	482290	320210
	HS Code [2002]	540233	600621	340290	482290	32021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6006호에 분류되는 메리야스 편물의 한-EFTA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006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006호가 생산되거나,
- ② 최소한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하는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하되, 이때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MC법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해당 물품 공장도 가격의 50% 미만일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006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6006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 메리야스 편물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동일 호(HS 제6006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원재료 중 '편물'의 경우 제6006호에 속하는 물품으로 비원산지 재료가기 때문에 4

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다만, 한-EFTA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므로 투입된 동일 세번 원재료의 중량이 총 중량(10kg)의 10% 이내인 1kg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따라서 사례의 합성메리야스 제품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로서 제 6006호에 속하는 원재료편물의 중량은 0.8kg이므로 최종제품 중량의 8%에 해당되어 최소기준 허용범위인 10%이내이므로 최소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 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② 최소한 2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하는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하되, 이때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품의 가격이 MC법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해당 물품 공장도가격의 50% 미만일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한-EFTA FTA에서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정련(scouring), 표백(bleach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열고정(heat setting), 기모(raising), 캘린더링(calendering), 방축가공(shrink resistance processing), 영구가공(permanent finishing), 데커라이징(decatizing), 침투(impregnating), 보수(mending), 실밥 제거(burling)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공정과 염색 또는 날염공정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35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39.7\%$$

따라서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 등 한-EFTA FTA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공정들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39.7%로 50%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53 유아용 양말 (제6111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111호에는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을 분류하는데, ‘유아용의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이 86cm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한다. 일견 제6111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에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0	면으로 만든 것
	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양말은 발을 편안하게 하며 발의 체온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도구 중의 하나로 보통 면직이나 모직으로 만들어지며, 발목까지 오는 종류도 있지만 무릎 위까지 올라와 다리 전체를 감싸는 것도 있다. 각각의 발가락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양말은 발가락 양말이라고 한다.

HS
제6111호

품명
유아용 양말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100	고리, 핀 등
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100	나일론 사, 스판덱스
3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	94	면사
4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6.00	80	스판덱스
5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821	80	페이퍼 라벨
6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604	60	고무사
7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53	폴리 백
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27	박스
9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91	7	라벨
10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7	-
11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페(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1	7	염료
12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0.00	7	염료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주요
제조과정

COTTON 및 SPANDEX 등의 원재료를 이용해 편직을 한 후 발가락 부분을 이어 꼬매는 봉조 공정을 거쳐 제품의 구겨진 부분을 펴기 위해 다려주는 과정을 거친다. 그 후 봉제 사이즈에 맞춰 재단을 한 후 잘라놓은 양말을 접합하는 봉제 공정을 거쳐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 of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p>※ 이 부의 주석 6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품)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p>※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p>
페루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p>
미국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p>
터키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 of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p>※ 이 부의 주석 6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품)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p>※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p>

바탕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 · 의류 산업

기계 · 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제품	제품 품번	FTA-BOM-53				
	제품명	유아용 양말				
	HS Code	61112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재료	부품 품번	FTA-BOM-53-01	FTA-BOM-53-02	FTA-BOM-53-03	FTA-BOM-53-04	FTA-BOM-53-05
	부품명	나일론 사	스판덱스	고무사	페이퍼라벨	폴리백
	소요량	5.5	3.6	0.9	1	1
	단 위	Kg	Kg	Kg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520500	560600	560410	482110	392329
	HS Code[2007]	540233	560600	560410	482110	392329
	HS Code[2002]	540233	560600	560410	482110	392329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6111호에 분류되는 유아용 양말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111호가 생산되어야 하며, HS 제5106호~제5113호, 제5204호~제5212호, 제5307호~제5308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8호, 제5508호~제5516호 및 제6001호~제600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② 동시에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6111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61류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나일론 사가 원산지물품이(비원산지의 경우도 한-미 FTA협정 상 제품 총 중량의 7% 이내일 경우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용가능) 사용되어야 한다.

사례에서는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나일론 사가 역내 원산지 물품이 사용되었고, 다른 원재료가 61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한다.

②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제외세번에 해당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공정 등 완제품 생산공정을 거쳐 유아용 양말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54 타이즈 (제6115.2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를 분류 하는데 여자 또는 남자용의 구분 없이 발 및 다리(호스)와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 및 타이즈(발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스타킹 및 양말, 속양말(주로 방한용에 사용되는 것),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과 같은 단계압박 양말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겹양말, 바깥바닥과 갑피를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붙이지 아니한 신발류(유아용 털실 신 제외) 등을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츠(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 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	단계압박 양말류 (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
	21	합성섬유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2	합성섬유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의 것에 한한다)
	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0	기타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기타
	94	양모제 및 섬유모제의 것
	95	면제의 것
	96	합성섬유제의 것
	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허리부터 발까지 착 달라붙는 스타킹 모양의 긴 바지이다. 주로 유럽 지역에서 타이즈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착용하지만 남성용 타이즈도 일부 존재한다.

HS
제6115,29호

품명
타이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92	나일론
2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	84	면사
3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821.10	77	라벨
4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6.00	77	스판덱스 사
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69	고리, 행거
6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	62	고무밴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7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54	폴리 백
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 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23	박스
9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821.90	15	라벨
10	코용(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	8	-
11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9	8	고무밴드
12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8	스판덱사
13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1	8	염료
1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11	8	모달사
15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용도를 불문한다)	4015	8	고무밴드
16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 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물 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구슬과 스팅글(spangle)	8308.10	8	후크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원재료인 COTTON, NYLON, SPASDEX 등을 준비하고 원사에 염료를 착색한다. 염색된 원사를 각 디자인과 사이즈에 따라 기계에 세팅한 후 편직을 진행하고 편직 되어 나온 양말의

색상에 맞춰 발가락 부분을 연결, 봉합시키는 작업인 봉조작업을 거쳐 스팀 압력기에 반듯하게 펴주는 작업을 진행한 후 봉제사이즈에 맞춰 제단한 원단을 봉제하고 포장하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품)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품)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품)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품)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 재 품	제품 품번	FTA-BOM-54
	제품명	타이즈
	HS Code	611529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54-01	FTA-BOM-54-02	FTA-BOM-54-03	FTA-BOM-54-04	FTA-BOM-54-05
	부품명	나일론	면사	스판덱스 사	행거	플리백
	소요량	2.5	2.5	5.0	1	1
	단 위	Kg	Kg	Kg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540220	520511	560600	392640	392329
	HS Code[2007]	540220	520511	560600	392640	392329
	HS Code[2002]	540220	520511	560600	392640	392329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싱가
포르 및
한-EFTA
FTA)

제6115호에 분류되는 타이즈의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115호가 생산되어야 하며, HS 제60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② 동시에 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6115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제외세번(HS 제6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 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61류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제외세번(HS 제60류)에 해당하는 품목이 없으므로 모든 원재료를 비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사례의 경우 사용된 원재료가 제외세번에 해당하지 않는 세번으로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한다. PSR이 결합기준이므로 가공공정이 역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②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제외세번에 해당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를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공정 등 완제품 생산공정을 거쳐 타이즈를 제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55 양털 양말 (제6115.94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를 분류 하는데 여자 또는 남자용의 구분 없이 발 및 다리(호스)와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 및 타이즈(발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스타킹 및 양말, 속양말(주로 방한용에 사용되는 것),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과 같은 단계압박 양말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겹양말, 바깥바닥과 갑피를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붙이지 아니한 신발류(유아용 털실 신 제외) 등을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6115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 압박 양말류(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	단계압박 양말류 (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
	21	합성섬유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2	합성섬유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의 것에 한한다)
	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0	기타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기타
	94	양모제 및 섬유모제의 것
	95	면제의 것
	96	합성섬유제의 것
	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6115,94호

품명
양털 양말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100	나일론 사
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57	후크
3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6.00	42	스판덱스 사
4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821.10	42	종이 라벨
5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6.20	42	양모사
6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	42	-
7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42	고무사
8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9	14	폴리 백
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09.32	14	아크릴
1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20	14	양고라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1	섬유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90	14	라벨
1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 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접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14	박스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WOOL, POLYAMID, NYLON 등 원재료를 준비한 후 원사를 직조해 초기형태의 양말을 제조하는 편직 공정을 거친다. 양말의 발가락 부분을 연결하는 봉조 공정을 거쳐 반듯하게 세팅해주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검품 및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품)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품)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품)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품)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55			
	제품명	양털 양말			
	HS Code	611594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55-01	FTA-BOM-55-02	FTA-BOM-55-03	FTA-BOM-55-04	FTA-BOM-55-05
	부품명	양모사	스판덱스 사	고무사	후커	플리백
	소요량	4.6	3.4	2.0	1	1
	단 위	Kg	Kg	Kg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540220	560600	560410	392640	392329
	HS Code[2007]	540220	560600	560410	392640	392329
	HS Code[2002]	540220	560600	560410	392640	392329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

제6115.94호에 분류되는 양털 양말의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115호가 생산되어야 하며, HS 제60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② 동시에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115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제외세번(HS 제6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 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61류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제외세번(HS 제60류)에 해당하는 품목이 없으므로 모든 원재료를 비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②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제외세번에 해당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를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공정 등 완제품 생산공정을 거쳐 양털 양말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56 면 양말 (제6115.95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를 분류하는데 여자 또는 남자용의 구분 없이 발 및 다리(호스)와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 및 타이즈(발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스타킹 및 양말, 속양말(주로 방한용에 사용되는 것),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과 같은 단계압박 양말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겹양말, 바깥바닥과 갑피를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붙이지 아니한 신발류(유아용 털실 신 제외) 등을 분류한다.

호	소 호	품 명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츠(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	단계압박 양말류 (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
	21	합성섬유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2	합성섬유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의 것에 한한다)
	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0	기타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기타
	94	양모제 및 섬유모제의 것
	95	면제의 것
	96	합성섬유제의 것
	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6115,95호

품명
면 양말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	100	면사
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100	폴리아미드, 나일론 사
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89	포장재, 후크 등
4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821	79	종이 라벨
5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	68	고무사
6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6.00	63	스판덱스 사
7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58	폴리 백
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6	박스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5	-
10	섬유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90	5	라벨
11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09.32	5	아크릴사
12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탬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0.00	5	염료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원재료인 COTTON, NYLON, SPANDEX 등을 준비하고 원사에 염료를 착색한다. 염색된 원사를 각 디자인과 사이즈에 따라 기계에 세팅한 후 편직을 진행하고 편직되어 나온 양말의 각 색상상에 맞춰 발가락 부분을 연결·통합시키는 작업인 봉조작업을 거쳐 스팀 압력기에 반듯하게 펴주는 작업을 진행한 후 봉제 사이즈에 맞춰 제단한 원단을 봉제하고 포장하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품)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품)을 갖춘 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류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품)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품)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56
	제품명	면 양말
	HS Code	611595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비	부품 품번	FTA-BOM-56-01	FTA-BOM-56-02	FTA-BOM-56-03	FTA-BOM-56-04	FTA-BOM-56-05
	부품명	면사	니일론 사	고무사	후커	플리백
	소요량	7.2	1.2	1.6	1	1
	단 위	Kg	Kg	Kg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520511	540220	560410	392640	392329
	HS Code[2007]	520511	540220	560410	392640	392329
	HS Code[2002]	520511	540220	560410	392640	392329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싱가
포르 및
한-EFTA
FTA)

제6115.95호에 분류되는 면 양말의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115호가 생산되어야 하며, HS 제60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② 동시에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115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제외세번(HS 제6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61류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제외세번(HS 제60류)에 해당하는 품목이 없으므로 모든 원재료를 비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②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제외세번에 해당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를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공정 등 완제품 생산공정을 거쳐 면 양말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57 합성섬유제 양말 (제6115.96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를 분류하는데 여자 또는 남자용의 구분 없이 발 및 다리(호스)와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 및 타이즈(발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스타킹 및 양말, 속양말(주로 방한용에 사용되는 것),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과 같은 단계압박 양말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겹양말, 바깥바닥과 갑피를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붙이지 아니한 신발류(유아용 털실 신 제외) 등을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츠(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	단계압박 양말류 (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
	21	합성섬유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2	합성섬유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의 것에 한한다)
	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30	기타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기타
	94	양모제 및 섬유모제의 것
	95	면제의 것
	96	합성섬유제의 것
	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6115.96호

품명
합성섬유제 양말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100	나일론 사, 폴리에스테르 사, 나일론 스판덱스 등
2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	75	라벨 등
3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75	고무사
4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6.00	67	스판덱스
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50	고리, 플라스틱 행거
6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41	플리 백
7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09	41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사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 섬유(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33	박스
9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방수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4015.19	8	고무밴드
10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방수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4015.99	8	-
11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204.11	8	재봉사
12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22	8	면사
13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31	8	면직물
14	섬유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8	라벨
15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32	8	-
16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96	8	양말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바탕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주요
제조과정

원재료인 COTTON, NYLON, SPASDEX 등을 준비하고 원사에 염료를 착색한다. 염색된 원사를 각 디자인과 사이즈에 따라 기계에 세팅한 후 편직을 진행하고 편직되어 나온 양말의 각 색상에 맞춰 발가락 부분을 연결·봉합시키는 작업인 봉조작업을 거쳐 스팀 압력기에 반듯하게 펴주는 작업을 진행한 후 봉제 사이즈에 맞춰 재단한 원단을 봉제하고 포장하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p>※ 이 부의 주석 6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p>※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p>	
페루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p>	
미국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p>	
터키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p>※ 이 부의 주석 6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p>※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p>	

바탕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 · 의류 산업

기계 · 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57
	제품명	합성섬유제 양말
	HS Code	611596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재료 명세서	부품 품번	FTA-BOM-57-01	FTA-BOM-57-02	FTA-BOM-57-03	FTA-BOM-57-04	FTA-BOM-57-05
	부품명	합성 필라멘트 사	스판덱스	고무사	재봉사	라벨
	소요량	0.6	3.5	3.5	2.3	1
	단 위	Kg	Kg	Kg	Kg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540220	560610	560410	520411	580710
	HS Code[2007]	540220	-	560410	520411	580710
	HS Code[2002]	540220	-	560410	520411	5807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고	-	세번없음	-	-	-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6115.96호에 분류되는 면 양말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115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5106호~제5113호, 제5204호~제5212호, 제5307호~제5308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8호, 제5508호~제5516호 및 제6001호~제600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 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② 동시에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6115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5106호~제5113호, 제5204호~제5212호, 제5307호~제5308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8호, 제5508호~제5516호 및 제6001호~제600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전 품목이 HS 제61류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다.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이 합성필라멘트사(FTA-BOM-57-01)와 재봉사(FTA-BOM-57-04)가 있는데, 재봉사의 경우 역내산 물품이 사용되었으나 합성필라멘트사의 경우 역외산 물품이 사용되었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기준(완제품 총 중량의 7% 이내)을 적용할 경우 역외산 합성필라멘트사의 중량이 완제품 중량의 6%로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②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제외세번에 해당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를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공정 등 완제품 생산공정을 거쳐 합성섬유제 양말을 제조하거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의 제외세번 비원산지재료를 생산에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58 플라스틱 피복 장갑 (제6116.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가 분류되는데,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을 불문하고 모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장갑을 분류한다.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 손가락만 분리된 장갑·아래팔 또는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 또한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미완성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장갑을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9	기타
	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92	면으로 만든 것
	93	합성섬유로 만든 것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HS
제6116.10호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품명
플라스틱
피복 장갑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100	나일론, 점착사
2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85	고무사
3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50	71	폴리우레탄
4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42	포장비닐
5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	28	염료
6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7	14	착색제
7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14	PVC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 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14	종이박스
9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821.10	14	레이블
10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19	14	DMF
11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93	14	나일론 내피장갑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장갑의 기본 틀이 되는 나일론 내피를 편직한다. 이때 봉제선 없이 장갑형태로 짜여 진다. 코팅할 원료를 배합하여 저장탱크에 보관 후 장갑의 표면에 코팅 및 도팅 한 후 장갑의 불량여부를 확인 후 각 회사사양에 따라 포장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원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58
	제품명	플라스틱 피복 장갑
	HS Code	61161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재료 명세서	부품 품번	FTA-BOM-58-01	FTA-BOM-58-02	FTA-BOM-58-03	FTA-BOM-58-04	FTA-BOM-58-05
	부품명	합성 필라멘트 사	고무사	폴리우레탄	포장비닐	인쇄용 잉크
	소요량	0.6	3.5	2.5	1.0	2.4
	단위	Kg	Kg	Kg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540220	560410	390950	392329	320417
	HS Code[2007]	540220	560410	560410	392329	320417
	HS Code[2002]	540220	560410	560410	392329	320417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미 FTA)

제6116.10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피복장갑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116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5106호~제5113호, 제5204호~제5212호, 제5307호~제5308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8호, 제5508호~제5516호 및 제6001호~제600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② 동시에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6116.10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HS 제5106호~제5113호, 제5204호~제5212호, 제5307호~제5308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8호, 제5508호~제5516호 및 제6001호~제6006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전 품목이 HS 제61류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다.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합성필라멘트사(FTA-BOM-58-01)가 역외산 물품이 사용되었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기준(완제품 총 중량의 7% 이내)을 적용할 경우 역외산 합성필라멘트사의 중량이 완제품 중량의 6%로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②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제외세번에 해당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를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공정 등 완제품 생산공정을 거쳐 합성섬유제 양말을 제조하거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의 제외세번 비원산지재료를 생산에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59 나일론 장갑 (제6116.93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가 분류되는데,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을 불문하고 모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장갑을 분류한다.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손가락만 분리된 장갑·아래팔 또는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 또한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 미완성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장갑을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9	기타
	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92	면으로 만든 것
	93	합성섬유로 만든 것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6116.93호

품명 나일론 장갑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100	나일론사, 접착사, 폴리프로필렌사
2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88	고무사
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1	28	-
4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산화유도체	2917.32	13	DOP
5	연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13	-
6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10	13	폴리백
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49	13	-
8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09.53	13	-
9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방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용도를 불문한다)	4821	13	종이라벨
10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13	박스
1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13	-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2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12	13	-
13	금속드리사(metalised yarn)[짐프한(gimped)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5.00	13	-
14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6.00	13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 사, 접착사 등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나일론을 이용하여 장갑을 편직하는데 손목 편직시에는 고무사를 투입한다. 그 후 PP사를 이용해 손목 끝을 오바로크한 후 종이 라벨과 폴리백을 이용해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품)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품)을 갖춘 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품)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품)을 갖춘 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복합수산물 가공식품

화훼산업

섬유 · 의류 산업

기계 · 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59
	제품명	나일론 장갑
	HS Code	611693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재료 명세서	부품 품번	FTA-BOM-59-01	FTA-BOM-59-02	FTA-BOM-59-03	FTA-BOM-59-04	FTA-BOM-59-05
	부품명	합성 필라멘트 사	고무사	DCP	폴리백	종이라벨
	소요량	6.3	3.2	0.5	1	1
	단 위	Kg	Kg	Kg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540220	560410	291732	392321	480257
	HS Code[2007]	540220	560410	291732	392321	480257
	HS Code[2002]	540220	560410	291732	392321	480257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

제6116.93호에 분류되는 나일론 장갑의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115호가 생산되어야 하며, HS 제60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② 동시에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1류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6116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제외세번(HS 제6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 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61류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제외세번(HS 제60류)에 해당하는 품목이 없으므로 모든 원재료를 비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②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제외세번에 해당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를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공정 등 완제품 생산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피복 장갑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60 청소용 포(Wiping Cloth) (제6307.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3류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 여하를 불문)을 제품으로 한 섬유제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관세율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방직용 섬유제품, 직물과사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과 냅마가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10	마루닥이포·접시닥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20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6307.10호

품명
청소용 포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40	플라스틱 케이스
2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33	토너
3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33	33	폴리에스테르사
4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	27	극세사 원단
5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204	27	면사
6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20	재봉사
7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	20	봉제사
8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14	스폰지
9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	14	-
10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	13	염료
11	섬유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13	라벨
12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50	7	폴리우레탄
13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울룩불룩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20	7	지판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4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5603.94	7	-
15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 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7	-
16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7	-
17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32	7	극세사직물
18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32	7	-
19	포장용 빈 포대	6305.33	7	-
20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47	7	폴리에스테르사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극세사 등의 원단을 사용하여 편직 및 제직과정을 한 후 염료를 이용한 정련과 염색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로고를 인쇄하는 등의 후가공 작업을 거쳐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규격으로 재단한 후 봉제사를 이용해 봉제를 하고 검품 및 포장을 하면 완성된다.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것 및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E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직)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결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터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제품	제품 품번	FTA-BOM-60
	제품명	청소용 포(Wiping Cloth)
	HS Code	63071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재료	부품 품번	FTA-BOM-60-01	FTA-BOM-60-02	FTA-BOM-60-03	FTA-BOM-60-04	FTA-BOM-60-05
	부품명	플라스틱 케이스	면사	봉제사	스폰지	극세사 원단
	소요량	4.9	3.3	1.2	1	0.6
	단 위	Kg	Kg	Kg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392321	520411	550320	392111	540710
	HS Code[2007]	392321	520411	550320	392111	540710
	HS Code[2002]	392321	520411	550320	392111	5407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6307.10호 에 분류되는 청소용 포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외세번 포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3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307호가 생산되어야 하며, HS 제5007호, 제5111호~제5113호, 제5208호~제5212호, 제5309호~제5311호, 제5407호~제5408호, 제5512호~제5516호, 제5801호~제5802호 및 제60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면서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된 물품이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3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307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이 사용되고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63류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극세사 원단 (FTA-BOM-60-05)은 원산지물품이 사용되고, 이들 재료를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기준(완제품 총 중량의 10% 이내)을 적용할 경우 원재료로 투입되는 극세사 원단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도 무방하므로 0.6kg만이 사용되는 동 사례에서는 역외산 물품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650(400+100+100+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28.5\%$$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28.5%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4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부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계·자동차 산업 편



61 연마지 (제6805.2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805호에는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 지, 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을 분류한다.

제6805호에는 분쇄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글루 또는 플라스틱으로 방직용 섬유의 재료·지·판지·벌커나이즈드 파이버·가죽 또는 기타 재료에 도포(塗布)시킨 롤상 또는 특정 형상으로 자른 것(시트·띠·대·디스크·새그먼트 등), 사상 또는 끈상의 것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6805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20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30	기타재료를 기제로 한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연마지는 연마에 쓰이는 도구로 종이 등에 거친 가루를 입혀서 만드는데 여지(鑿紙)로도 부른다. 나무 등의 거친 표면에 연마지를 문질러서 거친 표면을 연마한다.

HS
제6805.20호

품명
연마지



복합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분기
특혜 수출입 실적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100	메틸
2	아크릴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90	100	아크릴 에스테르 중합체 등
3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	100	페놀 중합체
4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	67	종이포
5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67	
6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20	67	실리콘 카바이드
7	환식탄화수소	2902	67	톨루엔, 키살렌
8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	67	함석분말, 탄산칼슘
9	틸(ti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	33	
10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2	33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1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30	33	에폭시 수지
12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 ₂ O ₃)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33	산화철
13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31	33	
1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62	33	PET 필름
15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2904.10	33	
16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1	33	메탄올
17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70	33	
18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7	33	녹색 안료
19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11	33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20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9	33	우레탄 수지
21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33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PET필름에 1차 접착제를 도포한 후 FUSED AL OXIDE를 접착코팅하고 일정시간동안 건조시킨다.

접착코팅된 원단에 주문한 색상의 안료와 2차 접착제를 혼합하여 도포·건조시키고 원단의 표면에 피연삭체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S,C약품을 도포한 후 뒷면에 접착제를 도포해 VELCRO원단을 붙이고 건조시킨다. M,S,C처리가 끝난 원단을 주문한 크기로 재단하여 포장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61				
	제품명	연마지				
	HS Code	68052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 -61-01	FTA-BOM -61-02	FTA-BOM -61-03	FTA-BOM -61-04	FTA-BOM -61-05
	부품명	아크릴 에스테르 중합체	페놀 중합체	메틸	종이포	함석분말
	소요량	7.2	1.2	0.6	1	1.0
	단 위	Kg	Kg	Kg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390690	390690	340211	480210	253090
	HS Code [2007]	390690	390690	340211	480210	253090
	HS Code [2002]	390690	390690	340211	480210	25309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싱가포르·
한-미·
한-EFTA·
한-EU·
한-터키
FTA)

제6805.20에 분류되는 연마지의 한-싱가포르·한-미·한-EFTA·한-EU·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805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805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805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6805호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가 아닌 경우 모든 물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62 손톱광택기 (제6805.3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6805호에는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 지, 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을 분류한다. 제6805호에는 또한 연마재료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살포되어 있으며 결합물질로 방직용 섬유에 부착시킨 부직포로 만든 유사 물품도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6805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20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30	기타재료를 기제로 한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6805.30호

품명 손톱광택기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19	100	폴리우레탄 시트
2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	67	샌드페이퍼
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	67	폴리우레탄 시트
4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	50	
5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	33	수성안료
6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33	메탄올
7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k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	33	수성접착제
8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90	33	
9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33	에폭시 레진 등
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90	17	연마제
11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17	
12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민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50	17	탄산칼슘
13	환식탄화수소	2902.30	17	톨루엔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31	17	아세톤
15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90	17	
16	질소헥테로고리 화합물	2933.29	17	
17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90	17	
18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90	17	
19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3	17	
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17	
2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32	17	면
2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61	17	폴리에스터 천
23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9	17	돌가루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유리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삼변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주요 제조과정

원재료인 천과 EVA 등을 준비하여 합지한 후 유압프레스로 붙인다. 제품 로고를 붙이는 과정이 있다면 제품로고를 인쇄해주고 규격에 맞는 사이즈로 인쇄한 후 재단해준다. 단계별 제품들을 접착하는 공정을 거쳐 검사 및 포장을 완료하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적용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62
	제품명	손톱광택기
	HS Code	68053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62-01	FTA-BOM-62-02	FTA-BOM-62-03	FTA-BOM-62-04	FTA-BOM-62-05
	부품명	폴리우레탄 시트	샌드페이퍼	수성안료	수성접착제	에폭시 레진
	소요량	5.2	1.3	1.2	1.0	1.3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392119	680510	320611	350610	390730
	HS Code [2007]	392119	680510	320611	350610	390730
	HS Code [2002]	392119	680510	320611	350610	39073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페루 FTA)

제6805.30에 분류되는 손톱광택기의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805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6805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 이상인 물품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6805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6805호로 한다.

- 손톱광택기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680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샌드페이퍼(FTA-BOM-62-02)가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한-페루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기준(FOB 가격의 10% 이하)을 적용할 경우 비원산지물품의 사용도 가능하나 동 사례의 경우 샌드페이퍼의 가격이 100원으로 FOB가격의 10%인 91원을 초과하므로 비원산지 물품을 사용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이 불가능하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650(400+100+100+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28\%$$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28%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5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부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63 글래스 록(Glass Lock) (제7013.4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7013호에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는데 이는 식탁용품·부엌용품·화장실용품·사무용·실내장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호	소호	품명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유리 도자제의 것
	2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 (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22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28	기타
	3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 (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33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37	기타
	4	식탁용 유리제품 (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 (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4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2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49	기타
	9	그 밖의 유리제품
	9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7013.49호

품명
글래스 록



글래스 록은 유리로 만든 밀폐용기로 대표적인 주방용품이다. 반찬 같은 음식물을 저장하는데 쓰이며 플라스틱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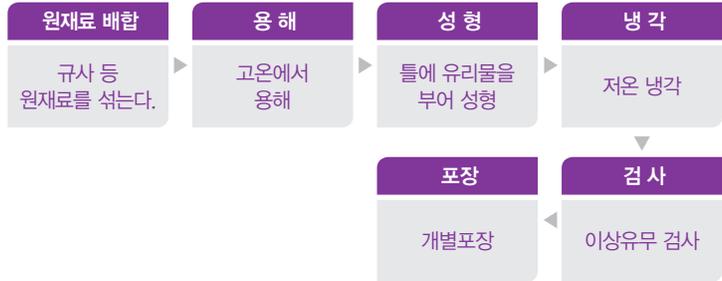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	100	규사
2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521.00	100	석회석
3	소다석회	3824.90	100	소다회
4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塊)	7001.00	100	파유리
5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50	
6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23.50	50	플라스틱 뚜껑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규사와 소다회, 석회석과 파유리 등의 원재료를 분해해서 섞어준 후 고온에서 용해를 한다. 그 후 틀에 유리물을 부어 모양을 만드는 성형공정을 거친 후 서서히 냉각시켜 굳혀준다. 냉각되어 모양이 갖춰진 유리기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 결정기준 (FTA 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7호부터 제702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유리제품을 절단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르지 않은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손에 잡고 붙여서 만든 유리제품을 수공 장식(실크스크린 프린팅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손에 잡고 붙여서 만든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제7009호부터 제701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7호 및 제70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 결정기준 (FTA 특례법)
터키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유리제품을 절단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르지 않은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손에 잡고 붙어서 만든 유리제품을 수공 장식(실크스크린 프린팅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손에 잡고 붙어서 만든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63
	제품명	글래스 록(Glass Lock)
	HS Code	701349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63-01	FTA-BOM-63-02	FTA-BOM-63-03	FTA-BOM-63-04	FTA-BOM-63-05
	부품명	규사	석회석	파유리	프로필렌 중합체	플라스틱 뚜껑
	소요량	6.9	1.2	0.3	1.6	1
	단 위	Kg	Kg	Kg	Kg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250510	252100	700100	390210	392350
	HS Code [2007]	250510	252100	700100	390210	392350
	HS Code [2002]	250510	252100	700100	390210	39235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7013.49호에 분류되는 글래스 록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가공공정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701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7013호가 생산되거나,
- ② 가공공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 유리제품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취입(吹入)작업*을 거쳐 생산된 비원산지 유리제품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공 장식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온에 용융된 유리를 손에 잡고 불어서 유리병 등의 형태로 만드는 공정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701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7013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글래스 록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701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모든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완제품의 4단위 세번과 다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② 가공공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 유리제품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비원산지 유리제품(HS 제70류)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르지 않은 비원산지(수입산) 유리제품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재료로 사용된 수입산 유리제품의 가격이 440원 이하일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 ③ 취입공정을 거쳐 생산된 비원산지 유리제품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공 장식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손에 잡고 붙여서 만든 유리제품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공장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르지 않은 비원산지(수입산) 유리제품 가격이 완제품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재료로 사용된 수입산 유리제품의 가격이 440원 미만일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64 모조다이아몬드(Rhinestone) (제7018.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7018호에는 유리제의 비드, 모조진주, 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직경이 1m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를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10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20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모조 다이아몬드란 크리스탈 등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깎아낸 것으로 고가인 다이아몬드와 모양은 유사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패션용품인 옷이나 반지, 목걸이 등에 많이 이용된다.

HS
제7018.10호

품명 모조 다이아몬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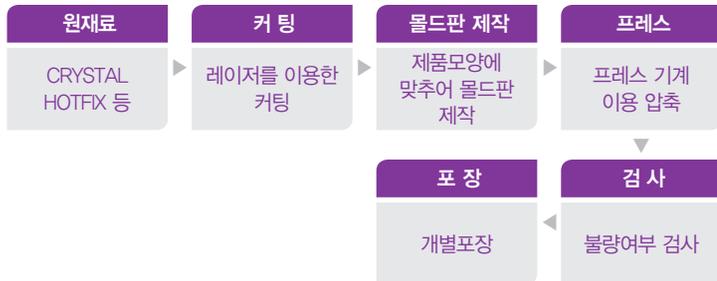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	100	모조 다이아몬드
2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를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90	75	실리콘 테이프
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윤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9	25	폴리 백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원재료인 크리스탈 및 핫픽스 등을 준비한 후 디자인한 대로 레이저를 이용해 커팅해 준다. 제품의 모양에 맞춘 몰드판을 제작한 후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압착하는 공정을 거친다. 만들어진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한 후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7호부터 제702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제7009호부터 제701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7호 및 제70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적용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64
	제품명	모조 다이아몬드
	HS Code	70181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64-01	FTA-BOM-64-02	FTA-BOM-64-03
	부품명	모조 다이아몬드	실리콘 테이프	폴리백
	소요량	9.9	0.1	1
	단 위	Kg	Kg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업체명	A-001	A-002	A-003
	구매단가(KRW)	400	200	150
	HS Code [2012]	701810	391990	392329
	HS Code [2007]	701810	391990	392329
	HS Code [2002]	701810	391990	392329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7018.10호에 분류되는 모조다이아몬드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7018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7018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7018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7018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7018호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모조다이아몬드의 세번은 완제품과 동일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역내산이 사용되어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다만,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기준(FOB 가격의 10% 이하)의 적용을 고려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FOB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동 사례의 모조다이아몬드제품에 투입되는 모조다이아몬드(FTA-BOM_64-01)을 비원산지물품으로 가정해 볼 경우 역외산 재료의 가격이 400원이므로 총 가격(FOB가격 910원)의 44%를 차지하게 되어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③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350(200+1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61\%$$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65 금 장식용품 (제7113.1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7113호에는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으로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이 호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된 부착구나 장식 등과 같은 물품을 제외한다. 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각종의 소형 신변 장식용품(반지, 팔찌, 귀걸이 등) 또는 일반적으로 포켓, 핸드백 또는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 등을 말한다.

호	소호	품명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	귀금속으로 만든 것
	11	은으로 만든 것
	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
	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으로 만든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금을 사용해서 만든 반지나 목걸이 등을 말하며 금 또는 금 얼로이를 압출하여 제조한다.

HS
제7113.19호

품명
금 장식용품



금류수산물 가공식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8	100	금
2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	64	은
3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펜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	7104.90	55	큐빅 지르코니아
4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39	18	로듐
5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3	18	동 얼로이
6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1	9	라벨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2) 주요 제조공정

금과 금얼로이를 혼합한 후 압연 및 압출공정을 통해 주물을 만들고 만들어진 주물을 사이즈별로 절단한 후 조립한다(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립과정은 생략가능). 큐빅 등 기타 보석들을 세팅하여 표면처리를 한 후 부착하여 도금하는 공정을 거치면 제품이 완성된다.

지도로 보는 2014 삼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제7113호부터 제711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1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65
	제품명	금 장식용품
	HS Code	711319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보	부품 품번	FTA-BOM -65-01	FTA-BOM -65-02	FTA-BOM -65-03	FTA-BOM -65-04	FTA-BOM -65-05
	부품명	금	규빅 지르코니아	로듐	동 얼로이	라벨
	소요량	1.0	5.0	2.7	1.3	1
	단 위	Kg	Kg	Kg	Kg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710812	710490	711039	740311	481210
	HS Code [2007]	710812	252100	700100	390210	-
	HS Code [2002]	710812	252100	700100	390210	-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세번 없음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7113.19호에 분류되는 금 장식용품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711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7113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711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7113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7113호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완제품과 동일세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물품이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750(400+100+100+100+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17.6\%$$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17.6%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4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부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이
가장 높은 금(FTA-BOM-65-01)을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5%로 높아지게 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66 모조신변장식용품 (제7117호)

1 관세율표 분류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으로서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시계용 체인 등으로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단,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것은 제7117호에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1	비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1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19	기타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진짜 금이나 보석이 아닌 도금을 하여 진짜 금이나 보석처럼 보이게 만든 모조품인 장식용품을 말하며 이는 반지, 목걸이, 브로치 등을 포함한다. 모조품인 만큼 가격이 싸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며 주로 잡화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한다.

HS
제7117호

품명
모조신변장식
용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45	플라스틱
2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	45	동 체인
3	모조 신변장식용품	7117	37	체인, 주석 등
4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mm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	33	글래스 비드
5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k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	25	에폭시 접착제
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	25	오링, 똑딱이 등
7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5	16	체인
8	정제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3	16	황동
9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 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amalgam)	2843	16	도금, 도금용 은
10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 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지름이 1m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7018	12	크리스탈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1	주석의 괴(塊)	8001	12	주석
12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8	
13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	8	잉크
14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8	플라스틱 가방
15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8	박스
16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020.00	8	크리스탈
17	구리의 선	7408.21	8	
18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 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구슬과 스팅글(spangle)	8308.90	8	
19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39	8	로듐
20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25	4	유산동
21	포스포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00	4	도금 안료
22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4	납 크리스탈

광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분기
특혜 수출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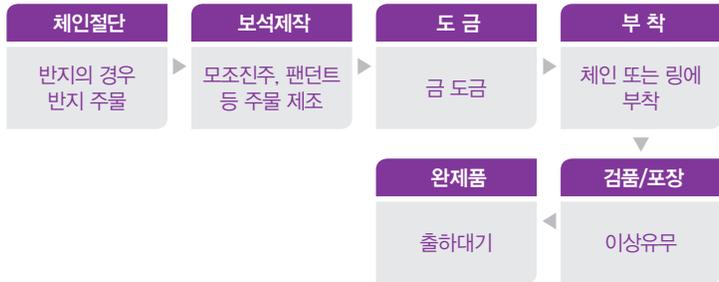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3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 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 로서 순중량이 1kg 이하인 것에 한한다)	3506	4	글루
24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 (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 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0.00	4	에나멜
25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 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과 화학공업이 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4	도금용 조제품
2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90	4	아크릴
27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50	4	우레탄
28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두껍·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4	포장지
29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4	포장재
30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 (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 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 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4	
31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 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썬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 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7104.90	4	큐빅
32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 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 로 한정한다)	7106.92	4	은
33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 한다)	7108.13	4	금
34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3.11	4	
35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907.00	4	
36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90	4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7	비금속(非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30 4		송진납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주석, 니켈, 구리 등의 원재료를 녹여서 틀에 부어준 후 보석을 제조하고 제조한 것에 금 도금을 한 후 외관을 검사해 이상유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포장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제7113호부터 제711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귀금속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되지 않은 비금속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귀금속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되지 않은 비금속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66
	제품명	모조 신변장식용품
	HS Code	711711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66-01	FTA-BOM-66-02	FTA-BOM-66-03	FTA-BOM-66-04	FTA-BOM-66-05
	부품명	동 체인	글래스 비드	플라스틱	에폭시 접착제	크리스탈
	소요량	5.1	2.2	0.5	1.2	1.0
	단 위	Kg	Kg	Kg	Kg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741910	701810	392640	350610	701310
	HS Code [2007]	741910	701810	392640	350610	701310
	HS Code [2002]	741910	701810	392640	350610	7013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7117호에 분류되는 모조신변장식용품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711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7117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711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7117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7117호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완제품과 동일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750(400+100+100+100+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17.6\%$$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17.6%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4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부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이 가장 높은 동 체인(FTA-BOM-66-01)을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5%로 높아지게 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67 알루미늄 주방용품 (제7615.19호)¹⁾

1 관세율표 분류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 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주방용품은 주방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품들인데 그 중 알루미늄 주방용품으로는 프라이팬 냄비 등이 있다. 프라이팬은 기름을 두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음식을 지지거나 부쳐 만드는 운두가 높지 않은 넓적한 냄비를 말하며 냄비는 음식을 끓이고, 튀기고, 삶고, 볶는 데 쓰는 조리 용구를 말한다.

1) HS 제5차 개정시 제7615.19호는 제7615.10호로 통합되었다

HS
제7615.19호

품명
알루미늄
주방용품



금속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삼분기
특혜 수출입 실적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	77	코팅 프라이머, 세라믹 등
2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54	볼트, 나사, 와셔 등
3	알루미늄의 괴(塊)	7601.20	53	알루미늄 합금
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38	
5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93	30	프레임 가드, 핸들
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	30	알루미늄 시트
7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9	23	알루미늄 트레이 등
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23	박스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61	15	코팅제
10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k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8	접착제
11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항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1.90	8	
12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8	실리콘
13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3924.10	8	핸들
1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4.59	8	칼라박스
15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59	8	포장지
16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	8	설명서
17	도지제의 그 밖의 제품	6914.90	8	코팅제
18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19	8	강화유리
19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90	8	내열도료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공정



알루미늄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금형으로 프레스를 해서 모양을 만드는 작업인 성형과정을 거친 후 뒷 바닥면에 스텐레스 판을 압착하는 과정을 거쳐 코팅과 도료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를 강한 압축공기를 이용해 거칠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준다.

내면에 테프론을 코팅해주고 외부로 고열로 구워주는 공정을 거쳐 페인트를 외면에 도장하고 다시 구워주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후 제품 뒷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나선을 형성하는 작업을 해준 후 손잡이를 부착하고 검사 및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67
	제품명	알루미늄 주방용품
	HS Code	761519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67-01	FTA-BOM-67-02	FTA-BOM-67-03	FTA-BOM-67-04	FTA-BOM-67-05
	부품명	알루미늄 트레이 등	코팅 프라이머	볼트, 나사 등	프레임 가드	코팅제
	소요량	1	1	1	1	0.5
	단 위	EA	EA	EA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761510	320910	731815	732310	390410
	HS Code [2007]	761519	320910	731815	732310	390410
	HS Code [2002]	761519	320910	731815	732310	39041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HS 2012 변경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EU· 한-터키 FTA)

제7615.19호에 분류되는 알루미늄 주방용품의 한-칠레·한-싱가포르·한-미·한-EU·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7615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7615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7615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7615호가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므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알루미늄 트레이(FTA-BOM-67-01)를 원산지물품으로 사용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알루미늄 트레이(FTA-BOM-67-01)가 비원산지물품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최소기준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완제품 가격(FOB 가격 910원)의 8%인 72.8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며 한-싱가포르와 한-미 FTA는 완제품 가격(FOB 가격 910원)의 10%인 91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또한 한-EU와 한-터키 FTA는 완제품 공장도가격(EXW 가격 880원)의 10%인 88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원산지 알루미늄 트레이(FTA-BOM-67-01)를 투입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 사례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트레이(FTA-BOM-67-01)의 가격이 400으로 역외산으로 사용시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68 프레스·스탬핑·펀칭용 공구 (제8207.3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는데, 호환성 공구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수공구·금속가공기계·광물성 재료의 가공기계 등에 부착하여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제작된 공구이며 마모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대체품으로 교환·사용된다.

호	소호	품명
8207	1	척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13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으로 만든 것
	19	기타 (부분품을 포함한다)
	20	금속의 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
	30	프레스용 스탬핑용 펀칭용 공구
	40	태핑용이나 드레딩용 공구
	50	드릴링용 공구 (척암기용은 제외한다)
	60	보링용이나 브로칭용 공구
	70	밀링용 공구
	80	터닝용 공구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프레스·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에는 금속판의 냉간프레스 또는 스탬핑용의 펀치와 다이, 드롭(drop), 단조용(鍛造用) 다이,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용 다이스와 절단용 다이스 및 펀치를 포함한다. 다이스란 “단조(鍛造), 드로잉 가공, 압출가공 또는 프레스 가공 등 금속의 소성가공(塑性加工)에 사용하는 틀[型]”로 정의하고 있다.

HS
제8207.30호

품명
프레스
스탬핑
펀칭용 공구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 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100	Compensation Block, Backing Plate
2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Retainer Washer
3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99	100	Driver
4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00	Block, Guide Bar
5	수공구용(동력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 프레스(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7.30	100	Upper Holder, Sti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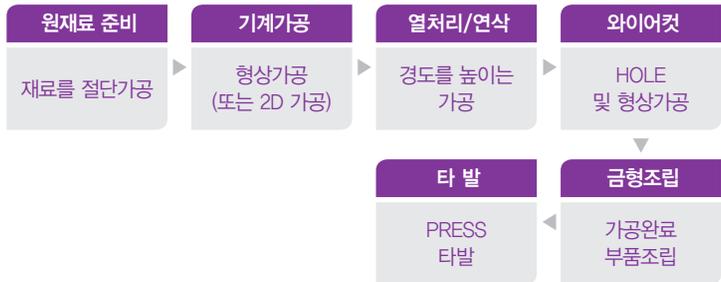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6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폴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	100	Wear Plate
7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7317.00	71	Pilot Pin
8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90	71	Gas Spring
9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	57	Coil Spring
10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42	
11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鐵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99	42	Strock and Block
12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303.00	29	파이프
13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	14	고속도강
14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90	14	Gas Cyliner Flange
15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구슬과 스팅글(spangle)	8308.10	14	Hook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14	Dampner
17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 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 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팔릿(pallet), 박스팔릿 (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 릿칼라(pallet collar)	4415.10	14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원재료를 사이즈에 맞추어 사각으로 절단하는 공정을 거쳐
형상가공을 실시한다. 기계가공된 재료에 경도를 높이는 열처리
및 연삭 공정을 거친 후 WIRE CUT EDM 기계로 HOLE 및
형상가공을 실시한다. 가공완료된 부품들을 조립한 후 PRESS
타발 공정을 거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68
	제품명	프레스·스탬핑·편칭용 공구
	HS Code	82073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68-01	FTA-BOM-68-02	FTA-BOM-68-03	FTA-BOM-68-04	FTA-BOM-68-05
	부품명	Compensation Block	Retainer Washer	Driver	Guider Bar	Stipper
	소요량	1	2.5	1	1	1
	단 위	EA	Kg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80
	HS Code [2012]	540220	731815	732599	732690	820730
	HS Code [2007]	540220	731815	732599	732690	820730
	HS Code [2002]	540220	731815	732599	732690	82073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한-EU·
한-터키
FTA)

제8207.30호에 분류되는 프레스·스탬핑·펀칭용 공구의 한-EFTA·한-EU·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가공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 '결합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2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207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207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207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프레스 공구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 (HS 제820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Stipper(FTA-BOM-68-05)가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므로 역내산 물품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다만,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완제품 공장도가격(EXW 가격 880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동일 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물품의 투입도 가능하므로 Stipper(FTA-BOM-68-05)의 가격이 88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동 사례의 경우 역내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역외산으로 대체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450(400+5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51.1\%$$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역외산재료 가격 비율이 51.1%로 4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동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역외산 재료 중 일부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격비중이 가장 큰 Compensation Block(FTA-BOM-68-01)이 원산지물품으로 대체되어야만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5.7%로 낮아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Compensation Block을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존 역내산이 투입되는 원재료 중 일부는 역외산으로 교체하여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가격비중이 가장 높은 Compensation Block(FTA-BOM-68-01)을 제외한 모든 원자재를 역외산으로 투입하여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즉,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어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Stipper(FTA-BOM-68-05)는 최소기준의 적용을 통해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이 가능해지고,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도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330(100+100+50+80)이 되어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37.5%가 되므로 충족이 가능해지게 된다.



69 밀링용 공구 (제8207.7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가 분류 되는데 호환성 공구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수공구 금속가공기계 광물성 재료의 가공기계 등에 부착하여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공구이며 마모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대체품으로 교환 사용된다.

호	소호	품명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예 : 프레스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 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 (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 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 용 다이(die)와 착압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1	착압용이나 굴착용 공구
	13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으로 만든 것
	19	기타 (부분품을 포함한다)
	20	금속의 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
	30	프레스용 스탬핑용 펀칭용 공구
	40	태핑용이나 드레딩용 공구
	50	드릴링용 공구 (착압기용은 제외한다)
	60	보링용이나 브로칭용 공구
	70	밀링용 공구
	80	터닝용 공구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밀링(milling) 공구는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절삭 공구 등의 공구를 일컫는다. 밀링머신은 가공물을 임의의 각도로 분할절삭 하거나 기어의 제작, 공구의 절삭 등에 사용된다. 밀링용 공구는 밀링 머신의 구성품으로서 제품의 절삭에 이용되는데, 밀링 공구에는 밀링 커터(플레인 커터 헤리컬 커터 스테저드 커터 앵글 커터), 기어커팅 홉 등이 포함된다.

HS
제8207.70호

품명
밀링용 공구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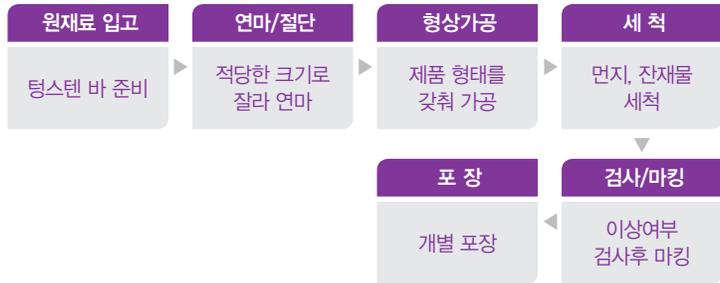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99	67	
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 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33	종이
3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92	33	Silver Foil
4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51	33	철강재
5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60	33	합금강
6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33	케이스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가공기계 스타트 라인에 원재료인 텅스텐 바를 준비하고 투입된 원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원통연마를 한 후에 규격에 맞게 엔드밀 형상가공을 한다. 가공이 완료되면 먼지, 가공 잔재물을 세척처리 한 후 이상여부를 검사하고 플라스틱 및 박스포장을 하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69
	제품명	밀링용 공구
	HS Code	82077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 -69-01	FTA-BOM -69-02	FTA-BOM -69-03	FTA-BOM -69-04	FTA-BOM -69-05
	부품명	텅스텐	종이	Silver Foil	합금강	케이스
	소요량	3	1	1	2	1
	단 위	Kg	EA	EA	Kg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10199	481910	710692	722860	392310
	HS Code [2007]	810199	481910	710692	722860	392310
	HS Code [2002]	810199	481910	710692	722860	39231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8207.70호에 분류되는 밀링용 공구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2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207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2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207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8207호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완제품과 동일세번에 분류 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50(400+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50\%$$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원산지물품이 사용되고 있는 3개 원재료 중 하나라도 역외산으로 대체되게 되면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9.6%로 낮아져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0 손톱깎이 (제8214.2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2류에는 공구, 도구, 칼붙이, 식탁용품 등의 성격을 갖는 비금속제의 특수한 제품이 포함된다. 제8214호에는 칼붙이의 기타 제품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 손톱줄 등을 분류하는데 이 호에는 페이퍼 나이프 편지개봉용 칼 문자 등을 지우는 칼, 연필깎이(포켓용 포함)와 날, 손톱 줄, 전기식이 아닌 수동식이발기, 정육점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초퍼와 칼붙이(cleavers) 및 민상용 칼 등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10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2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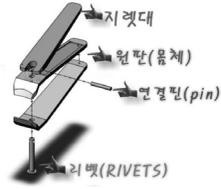
손톱깎이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손톱이나 발톱을 잘라 길이나 모양을 정리하는 도구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손톱깎이는 절단 및 정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절단이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곡선 형태의 날을 손톱 위아래로 끼운 후 뒤 손잡이 부분을 눌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절단 후 손잡이를 놓게 되면 손톱깎기 몸체의 판형 용수철의 탄성에 의해 날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된다. 또 손톱을 정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손톱깎이에는 갓 깎아 날카로운 손톱을 마모시키기 위한 줄칼이 있다.

HS
제8214.20호

품명
손톱깎이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506.10	44	니켈판
2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혹은(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33	철선
3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	33	냉연철판
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33	플라스틱 사출물
5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지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20	22	샌드페이퍼
6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2827.35	22	염화니켈
7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99	22	Steel Plate
8	황산염·염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24	11	유산니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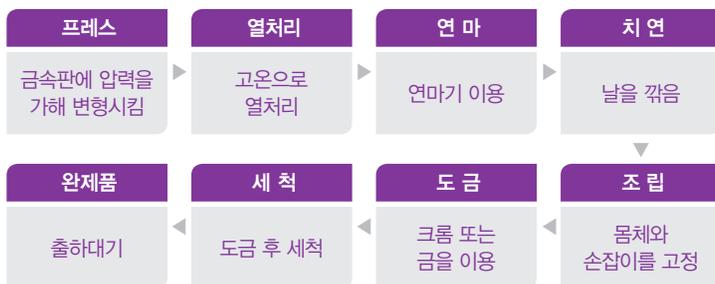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90	11	폴리우레탄 페인트
10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30	11	폴리에틸렌 수지
11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19	11	GPPS 수지
12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 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30	11	Ceramic Abrasive Plate
1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30	11	폴리스틸렌
14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20	11	Ceramic Abrasive Plate
1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2825.40	11	유산니켈
16	합금철(ferro-alloy)	7202.60	11	Metal Abrasive Plate Nickel
17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21	11	크롬
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11	Metal Abrasive Plate Stainless Steel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공정

금속판에 압축력을 가하여 변형시켜 모양을 만드는 프레스 공정을 거쳐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고 냉각 속도를 가감하여 필요한 조직과 성질을 갖게 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 후 연마구를 깔고 윤활제와 연마사 등을 뿌린 뒤에 연마기를 회전시켜 연마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고, 손톱깎이의 날을 깎는 치연을 하게 된다. 만들어진 몸체와 손잡이를 핀으로 고정하여 조립한 후 크롬이나 금 등을 사용해 표면을 도금하고 세척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다.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다.

2) 원산지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70
	제품명	손톱깎이
	HS Code	82142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70-01	FTA-BOM-70-02	FTA-BOM-70-03	FTA-BOM-70-04	FTA-BOM-70-05
	부품명	니켈판	철선	냉연철판	플라스틱 사출물	폴리우레탄 시트
	소요량	5.0	1.2	1.0	2.5	1
	단 위	Kg	Kg	Kg	Kg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750610	731815	721113	392690	390130
	HS Code [2007]	750610	731815	721113	-	390130
	HS Code [2002]	750610	731815	721113	-	39013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12년 신설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8214.20호에 분류되는 손톱깎이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214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214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214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214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8214호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완제품과 동일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50(400+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50\%$$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원산지물품이 사용되고 있는 3개 원재료 중 하나라도 역외산으로 대체되게 되면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9.6%로 낮아져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1 금고 (제8303.0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303호에 해당하는 금고는 일반적으로 철강제의 용기이고 그 벽이 장갑되어 있는 것(즉, 고강도의 합금강으로 만들어진 것) 또는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된 철강의 판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은행, 사무실, 호텔 등에서 사용되고 매우 안전도가 높은 자물쇠와 밀폐된 문과 이중벽으로 설비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중벽 사이에는 보통 내열물질이 충전되어 있다. 이 호에는 보다 넓은 저장공간이 요구되는 은행·보관소·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보강된 금고실의 문 및 금고(문틀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8303	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금고(金庫)는 돈이나 기타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상자이다. 주로 철이나 기타 금속으로 만들며 금고를 열려면 비밀번호를 맞추거나 열쇠로 열어야 하는데, 귀중품을 보관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며 철 등의 금속으로 만들 때 견고해야 하기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 만든다.

HS
제8303.00호

품명
금고



금류산업
기공식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100	서랍 손잡이, 명판
2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자동식),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	100	자물쇠, 매커니즘
3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	100	힌지, 경첩
4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 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75	고정판 체결용 드릴피스
5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75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6	전자집적회로	8542	50	CPU
7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20	50	트위스트 스프링
8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50	경보기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분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	50	철판
10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	50	포틀랜드 시멘트
11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90	25	페인트
12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25	방습제
13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30	25	
14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 디스크·링]	4006.90	25	합성고무
15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90	25	내화시험 스티커
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54	25	철판
17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5.91	25	
18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5	25	핸들링 고정용 나사
19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90	25	커패시터
20	인쇄회로	8534.00	25	
21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90	25	
22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20	25	보스핀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3	구리의 선	7408.22	25	용접봉
24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20	25	알루미늄분
25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8303.00	25	케이스
26	일차전지	8506.90	25	건전지
27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29	25	레지스터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철판을 절단하고 홀가공을 실시하며 절곡 등을 가공하는 가공 공정을 거쳐 연결부위를 용접하고 연마하는 용접공정을 거친다. 이때 연마석과 용접봉 등이 소모되며 전처리 공정을 통해 표면에 부착된 기름기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피막처리하게 된다. 그 후 도장처리를 하고 내화성능 혼합물질인 시멘트 등을 금고에 투입한 후 고객이 요청한 색상에 따라 도장을 한 후 시건장치 및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71
	제품명	금고
	HS Code	83030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연 재 비	부품 품번	FTA-BOM -71-01	FTA-BOM -71-02	FTA-BOM -71-03	FTA-BOM -71-04	FTA-BOM -71-05
	부품명	철판	포클랜드 시멘트	한지	메커니즘	고정판 체결용 드릴피스
	소요량	1	3	1	1	1
	단 위	EA	Kg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720915	252310	830210	830110	731811
	HS Code [2007]	720915	252310	830210	830110	731811
	HS Code [2002]	720915	252310	830210	830110	731811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8303.00호에 분류되는 금고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30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303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30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303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8303호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완제품과 동일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50(400+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50.5\%$$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5%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원산지물품이 사용되고 있는 3개 원재료 중 하나라도 역외산으로 대체되게 되면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9.6%로 낮아져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2 플렉시블 튜빙 (제8307.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3류에는 비금속의 성분에 관계없이 당해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되는데, 제8307호에는 제조과정에 따라 나선상으로 감아서 성형시킨 스트립으로 구성되는 플렉시블 튜빙과 표면이 매끄러운 관의 변형에 의하여 제조된 파상형(波狀形)의 플렉시블 튜빙이 있다.

호	소호	품명
8307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 (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철강제의 것
	90	기타 비(非)금속제의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8307.10호

품명
플렉시블
튜빙



1) 주요
자재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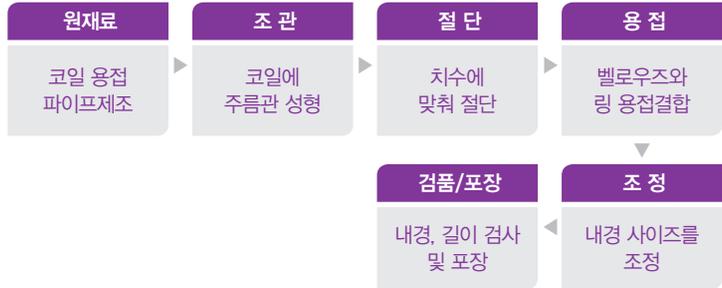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후크(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볼트
2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20	67	Strip Steel
3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90	67	캡
4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30	33	철사
5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35	33	스테인레스 판
6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307.29	33	링
7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인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7317.99	33	니플
8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9	33	EPDM 오링
9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33	SPCC 캡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공정

코일을 원형으로 만든 다음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 후 파이프를 만드는 조관공정을 거친다. 이후 파이프 속에 물을 넣고 밀봉한 후 압력을 가해 금형 모양대로 파이프가 성형되는 공정을 거치며 치수에 맞게 주름관 양쪽의 불필요한 부분을 절단하는 절단 공정을 거친다. 제품과 링을 용접하여 결속하는 용접 공정과 벨로우즈 ID 사이즈를 조정하는 공정을 거쳐 이상여부를 검사 후 포장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제품 품번	FTA-BOM-72
	제품명	플렉시블 튜빙
	HS Code	83071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 -72-01	FTA-BOM -72-02	FTA-BOM -72-03	FTA-BOM -72-04	FTA-BOM -72-05
	부품명	Strip Steel	스테인레스 판	링	니플	SPCC 캡
	소요량	3	2	1	1	1
	단 위	Kg	Kg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722011	721935	730729	830110	732690
	HS Code [2007]	722011	721935	730729	830110	732690
	HS Code [2002]	722011	721935	730729	830110	73269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8307.10호에 분류되는 플렉시블 튜빙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3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307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307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307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투입원재료는 HS 제8307호가 아닌 모든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원재료 중 완제품과 동일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50(400+5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4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50.5\%$$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0.5%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원산지물품이 사용되고 있는 3개 원재료 중 하나라도 역외산으로 대체되게 되면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9.6%로 낮아져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기계류와 전기기기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close-up photograph of an engine's internal components, including valves and springs. A semi-transparent purple rectangle is overlaid on the upper portion of the image, containing the title text. Faint, stylized gear icons are visible behind the text box.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slide features a diagonal split between purple and white.



73 액체펌프 (제8413.3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4류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제84류에는 전기기기 등은 제외되나 일정한 전기식의 기계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는데 액체 펌프란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기기를 의미한다.

호	소호	품명
8413		액체펌프(기계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1	펌프(기계를 갖춘 것이나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11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19	기타
	2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30	연료, 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40	콘크리트 펌프
	5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6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70	그 밖의 원심펌프
	8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1	펌프
	82	액체엘리베이터
	9	부분품
	91	펌프의 것
	92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HS
제8413.30호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품명
액체펌프



액체펌프는 압력작용에 의해 액체를 관을 통해서 수송하거나 저압의 용기 속에 있는 유체를 관을 통하여 고압의 용기 속으로 압송하는 기계이다. 토목 건축 관계에서는 배수, 양수, 송수, 압축용으로서 주로 액체 펌프가 사용된다.

액체 펌프는 그 기구상 ①회전식, ②왕복식, ③공기 부력식, ④기타로 나뉘며 ①에 속하는 것에 와권(渦卷) 펌프, 축류 펌프, ②에는 왕복 펌프, 왕 펌프, ③에는 기포 펌프 등이 있고 ④에는 웰포인트 등에 사용되는 진공 펌프, 보일러 급수용의 진공 펌프 등이 있다. 동력으로서는 인력, 전기 외에 증기, 압축 공기 등이 쓰인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91	100	BRACKET
2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9	100	RESERVOIR BODY
3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혹은(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BOLT
4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	100	BEARING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5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 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	67	GEAR
6	경질(硬質)고무[예 :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4017.00	67	CHECK VALVE
7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90	67	
8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 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10	67	
9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2.30	67	HINGE
10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	67	VALVE
11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	67	BALL
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33	
13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90	33	STEEL ROD
1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20	33	MECHANICAL SEAL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5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커니컬 실	8484	33	GASKET
16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23	33	CONVOLUTED HOSE
17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8512	33	WIPER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캐스팅과 라운드 바 등의 원재료와 구입품을 입고한 후 CNC선반에 고정시켜 내경가공을 한다. 그 후 MCT가공을 통해 주조품과 SHAFT의 키이홈을 가공하고 1차 가공품의 외경을 정밀 연삭하는 외경 연삭의 공정을 거쳐 양쪽 평면부를 정밀연삭하는 평면연삭 공정을 거치고 수작업으로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한 후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서 세척을 실시한다. 이 후 기어와 샤프트를 프레스로 압입하고 성능을 시험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73
	제품명	액체펌프
	HS Code	84133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보	부품 품번	FTA-BOM -73-01	FTA-BOM -73-02	FTA-BOM -73-03	FTA-BOM -73-04	FTA-BOM -73-05
	부품명	Bracket	Reservoir Body	Bolt	Check Valve	Hinge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41391	392329	731811	401700	722230
	HS Code [2007]	841391	392329	731811	401700	722230
	HS Code [2002]	841391	392329	731811	401700	72223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국립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8413.30호에 분류되는 액체펌프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1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413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1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413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액체펌프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41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Bracket(FTA-BOM-73-01)이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므로 역내산 물품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다만, 최소기준(완제품 공장도가격의 10% 이내)의 적용을 고려할 경우 당해

원재료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인 880원의 10%인 88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원산지 원재료를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동 사례의 경우 가격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최소기준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350(100+100+100+5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40\%$$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40%로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74 냉장 및 냉동기구 (제8418.6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가 분류되며, 제8418.69호에는 혈액 저장용 냉장고, 아이스크림 제조기, 아이스크류버, 냉수기 등 기타 냉장 및 냉동기구가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 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10	냉장고, 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가정형 냉장고
	21	압축식
	29	기타
	3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ℓ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ℓ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 [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6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61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9	기타
	9	부분품
	91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제8418.69호에는 압축식 냉장기기중 가정형 냉장고, 체스트형 냉장고, 직립형 냉장고 이외의 특수한 목적의 냉장 및 냉동기기가 분류되며, 여기에는 냉장차에 사용되는 냉동기도 포함된다.

냉장차는 냉장장치를 갖춘 창고를 갖춘 차를 말한다. 냉장차는 차체의 주위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코르크판이나 암면(岩綿) 등을 사용한 단열재를 넣어 외부 온도의 영향을 방지하는 차량이다.

HS
제8418.69호

품명
냉장
및 냉동기구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실리쿰수지[일차제품(primaryform)으로 한정한다]	3910	100	배수캡 패킹
2	플라스틱의관·파이프·호스와이들의연결구류 [예 :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	100	냉수출수관, 방진패드
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100	밴딩 스트립
4	플라스틱으로만든물품운반·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만든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100	PTC COVER
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물품의 제품	3926.9	100	보온재, 너트 등
6	종이나편지로만든레이블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100	스티커
7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52	100	철판류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철강으로 만든 관(管)연결구류[예 :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7307	100	온수공급/수출관
9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코치스크루(coachscrew) · 스크루훅(screw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 [스프링와셔(spring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나사, 용접부품
1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00	TUBE PLATE, 수실케이스
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29	100	튜브
12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70	100	펌프
13	냉장고 · 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 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 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99	100	드라이어, 방열판, 온수통 등
14	파이프·보일러용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이와유사한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	100	체크밸브, 레바 등
15	전기회로의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기기[예 :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 · 광섬유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8536	100	휴즈홀더, 고드부싱, 스위치 등
16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5	100	센서, 봉상온도계, 비중계
17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	100	압력 게이지, 온수밸브콘트롤
18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기기	9032	100	바이메탈수동/자동, 컨트롤러
19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 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산화유도체	2905	66	알콜
2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66	냉매

바탕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 · 의류 산업

기계 · 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1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 섬유 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부속품[제지용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90	66	EVA관1형, 모세관2형
2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만든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물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66	포장(상자)
23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69	66	앵글
24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핀·물걸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7317	66	스테이플
25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	66	진공펌프
26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사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	8419	66	냉수통
27	부품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90	66	Wire Harness
28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90	33	증류수
29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oil)	2710.19	33	템프 그리스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0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2827.59	33	냉매
31	그 밖의 무기화합물(중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공기, amalgam[귀금속의 amalgam]은 제외한다]	2853	33	Refrigerant
32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	33	페인트
33	금속 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납 불임용·땀질용·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 불임용·땀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33	후락스
34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 없다)	3919.90	33	테이프 필라멘트
3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12	33	비닐제품 포장
36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33	수축튜브
37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 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4008.29	33	SEAT RUBBER
38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33	설명서
39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020	33	Sight Glass
4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7304.59	33	스틸파이프
41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 오픈 심(open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병합한 것]	7306.3	33	온수 공급
42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29	33	온수통 몸체

광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별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43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9	33	육각 와사붙이
44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92	33	AL 테이프
45	비금속(非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 서플렉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스프레이(metalspraying)용 선과 봉	8311.30	33	용접봉
46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	33	열교환기
47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장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80	33	불규칙 히터
48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장체는 제외한다]	8533.40	33	PTC
49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33	Control Box Assembly
50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 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광섬유케이블(섬유를 개별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42	33	전선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냉동·냉장기구의 제조공정은 크게 본체작업과 배관용접 및 조립, 시험, 도장,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철판을 프라즈마로 사이즈에 맞춰 재단한 후 절삭하고 관판 및 지지판을 가공한 후 철판과 관판을 부착하여 용접작업을 통해 본체를 완성한다. 여기에 각 파트에 적합한 동관을 삽입하고 확장을 하며 이어 배관작업으로서 본체에 밸브 및 열교환기, 냉매펌프, 용액펌프, 각종 밸브 등을 용접한다.

이어서 본체에 각종 게이지 및 안전장치를 부착한 후 누설여부를 테스트하는데 테스트 시 냉매가스 및 헬륨가스의 누설확인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마무리 작업으로서 페인트를 이용하여 본체에 도장을 하고 각종 온도센서류 등의 배선작업을 실시한 후 시운전을 통해 최종검사 및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제품의 포장은 주로 비닐카바와 목재가 사용된다.



냉동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삼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제8418.61호부터 제8418.6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제8418.10호부터 제8418.6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8.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74
	제품명	냉장 및 냉동기구
	HS Code	841869
	EXW(KRW)	880
	FOB(KRW)	93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 -74-01	FTA-BOM -74-02	FTA-BOM -74-03	FTA-BOM -74-04	FTA-BOM -74-05	FTA-BOM -74-06
	부품명	철판류	END- CROSS TUBE	냉매	온수 콘트롤 밸브	WIRE HAR- NESS	수실케이스
	소요량	1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A-006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A-006
	구매단가 (KRW)	200	100	80	50	70	100
	HS Code [2012]	720852	741129	282759	902690	853890	732690
	HS Code [2007]	720852	741129	282759	902690	853890	732690
	HS Code [2002]	720852	741129	282759	902690	853890	732690
	원산지	역내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8418.69호에 분류되는 냉장 및 냉동기구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18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418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18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418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냉장 및 냉동기구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 (HS 제84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모든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4단위 세번에

속하는 것이 없으므로 전체 원재료를 역외산 물품으로 사용해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 역내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합이 총 가격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제법 적용시 국제운송비 등을 제외한 FOB가격(930)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300이다. 이를 공제법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 (93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 (300)}}{\text{FOB 가격 (930)}} \times 100 = 68\%$$

따라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68%로 원산지결정기준인 4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75 냉각기·배양기·가열기 등 온도변화장치 (제8419.8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419호에는 가열 조리 배소 증류 정류 살균 저온살균 증기가 열 건조 증발 응축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1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11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19	기타
	2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3	건조기
	31	농산물용
	32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39	기타
	40	증류기나 정류기
	50	열교환기
	60	기체 액화용 기기
	8	그 밖의 기기
	81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9	기타
	90	부분품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냉각기(Water Cooler)란 반도체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수냉식 쿨러이며, 가열기(Heating Block)는 임상·생화학·화학 등의 응용에 사용되는 기기로 샘플건조 가열 농축 배양 등의 실험에 적합하다.

HS
제8419.89호

품명 가열기/냉각기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	100	힌지
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100	형광등 아크릴 판, 단열재 등
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100	경첩, 손잡이 등
4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	100	벨트, 고무링 등
5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후크(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볼트단자, 스프링 와셔 등
6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307	100	
7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00	코드붓싱, 가스판넬, 메탈 가스켓 등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 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8419	100	온도센서 빈, 샤프트, 회전바 등
9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	100	니들 밸브 등
10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	100	베어링
11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	100	메인모터 감속기
12	기계펌프나 진공펌프·기계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	100	기계 냉각팬
13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	100	온도조절기
14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	100	압력 컨트롤러
15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100	전선
16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	100	PCB보드, 명판, 휴즈홀더

광림수산물 가공식품

회화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면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7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בל용 커넥터	8536	100	휴즈, 터미널 블록, 압력 스위치 등
18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	100	원두 도어 모터, 메인 모터 등
19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	100	안정기, 트랜스
2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7304	80	프로파일
21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80	
22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99	80	
23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4	60	크립
24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	60	실린더 등
25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	60	
26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90	60	세라믹 판
27	전기식의 즉식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장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80	40	히터
28	실리콘수지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90	40	호스
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30	40	
3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7306	40	스테인레스 튜브
31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	40	스테인레스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2	구리로 만든 관(管)	7411.29	40	동관, 모세관
33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412.20	40	동 엘보
34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99	40	
35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	40	개스킷
36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	40	
37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를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90	20	양면테이프
38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40	20	냉매
3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20	박스
40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90	20	
4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20	
4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2.90	20	
43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10.00	20	
44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과 이와 유사한 제품	6909.90	20	

광물·수산물
기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45	안전유리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19	20	강화유리도면
46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020.00	20	
47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301.10	20	철판
4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예 : 다리, 교량, 수문, 탑, 격자주(格子柱),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 대, 봉, 형재(形材),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90	20	육각지지대
49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29	20	
50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뿔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	20	
51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20	판 스프링
52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99	20	
53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인플(제 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21	20	
54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21	20	할로겐 부라켓트
55	알루미늄의 괴(塊)	7601.10	20	순 알루미늄
56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609.00	20	커플링
57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40	20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58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탠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304.10	20	핸들
59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0.00	20	명판
60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90	20	고압 호스
61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예: 스펀들·스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중광(heald)·중광 프레임·메리아스용 바늘]	8448.33	20	스펀들
62	조제 드라이어	3211.00	20	드라이어
63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20	
64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속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90	20	가스쇼바
6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19	20	고열 자석
66	일차전지	8506.80	20	배터리
67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 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 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40	20	

아름다운날 기념품

확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산업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68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20	
69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30	20	콘덴서
70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 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20	휴즈
71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차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20	컨트롤러
72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90	20	노이즈 필터
73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5.90	20	센서
74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90	20	전류 센서
75	감량(感量) 50mg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16.90	20	타이머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철제와 스테인레스 원재료들을 이용해 판금을 한 후 절곡 및 용접작업을 통해 BODY를 구성한다. POWDER를 이용해 도장을 한 후 부품들을 조립한다. 센서와 컨트롤러, 와이어 등을 연결하는 배선작업 후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75
	제품명	냉각기 · 배양기 · 가열기 등 온도변화장치
	HS Code	841989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75-01	FTA-BOM-75-02	FTA-BOM-75-03	FTA-BOM-75-04	FTA-BOM-75-05
	부품명	온도센스 빈	니들 밸브	메인모터 감속기	기계 냉각팬	압력 컨트롤러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41911	848110	848310	841410	902610
	HS Code [2007]	841911	848110	848310	841410	902610
	HS Code [2002]	841911	848110	848310	841410	90261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8419.89호에 분류되는 냉각기·배양기·가열기 등 온도변화 장치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19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419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19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419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냉각기·배양기·가열기 등 온도변화장치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419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온도센스 빈(FTA-BOM-75-01)이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므로 역내산 물품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350(100+100+100+5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40\%$$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40%로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76 물 정화기 (제8421.9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421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호	소호	품명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1	원심분리기 (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11	크림분리기
	12	의류탈수기
	19	기타
	2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29	기타
	3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39	기타
	9	부분품
	91	원심분리기 (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물을 걸러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구(器具)를 말하는데 형태로 분류하면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는 직결형과 물을 용기에 담아서 필터를 통과하도록 하는 저장형이 있다. 정수원리나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자연 여과식·직결 여과식·이온교환 수지식·중류식·역삼투압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 여과식은 저장된 물이 중력으로 세라믹 필터를 통과하면서 정수된다. 세라믹 필터의 기공의 크기보다 작은 바이러스·중금속·발암물질·화학오염물질 등 미세한 오염물질 제거에 한계가 있다. 청소와 필터교환을 자주 해야 한다.

직결 여과식은 수도꼭지에 정수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물이 수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터를 지나면서 불순물이 걸러진다. 자연여과식과 마찬가지로 미세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가 힘들며, 필터를 자주 갈아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온교환 수지식은 이온교환수지 필터를 이용하여 물속에 녹아 있는 금속 이온을 분리·제거하는 방식이다. 유기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중류식은 물이 끓을 때 생기는 수증기를 식혀서 정수하는 방법이다. 용존산소나 미네랄까지 파괴되는 단점이 있다. 역삼투압식은 압력으로 물이 반투막을 통과하도록 하여 불순물을 걸러주는 방식이다. 오염물질뿐 아니라 미네랄까지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다.

HS
제8421.99호

품명
물 정화기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솔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90	-	레신
2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3	-	Plate Ring Seal, 와셔 등
3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 함유·탄소함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99	-	Mineral Stones
4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	Filter Media
5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99	-	Micro Sponge Filter
6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80	-	Water Tap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ABS, SAN등 원재료를 입고하고 검사한 후 건조로를 이용하여 1~2시간 정도 건조를 시킨다. 물통과 뚜껑 등의 부품들을 사출한 후 파손 등 이상여부를 검사한다. 물통도 수입 후 검사를 실시하며 사출 및 수입된 개별 부품들을 조립하고 최종검사를 수행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76
	제품명	물 정화기
	HS Code	842199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

비 재 전	부품 품번	FTA-BOM -76-01	FTA-BOM -76-02	FTA-BOM -76-03	FTA-BOM -76-04	FTA-BOM -76-05
	부품명	Plate Ring Seal	레신	Mineral Stones	Micro Sponge Filter	Water Tap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401693	391190	681599	842199	848180
	HS Code [2007]	401693	391190	681599	842199	848180
	HS Code [2002]	401693	391190	681599	842199	84818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8421.99호에 분류되는 물 정화기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2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421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2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421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물 정화기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42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Micro Sponge Filter(FTA-BOM-76-04)는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므로 역내산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700(400+100+10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0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79.5\%$$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79.5%로 50%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 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레신(FTA-BOM-76-02), Mineral Stones(Mineral Stones), Water Tap(FTA-BOM-77-05)의 세 가지를 원산지 물품으로 대체하면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45.5%가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들 3개 원자재는 역외산 물품을 사용하고 Plate Ring Seal(FTA-BOM-76-01)을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34.1%로 낮아지게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77 포장기계 (제8422.4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422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 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해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 또는 계측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강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1	접시 세척기
	11	가정형
	19	기타
	2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30	병·강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40	그 밖의 포장기계 (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90	부분품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물품을 포장하는 기계의 총칭으로 자동포장기계(automatic packaging machinery)와 같은 말이다.

개개의 기계를 가리킬 때는 포장기(packaging machine), 자동포장기(automatic packaging machine)라고 하며, 포장기계는 포장대상품과 포장재료의 공급방식에 따라 전자동포장기계와 반자동포장기계로, 포장대상품의 취급 범위에 의해 범용포장기계, 검용포장기계, 전용포장기계로, 포장의 종류에 따라 개장용이나 내장용 기계와 외장용 기계로 각각 분류된다.

HS
제8422.40호

품명
포장기계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	100	개스킷, 고무발
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위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100	박스
3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혹(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볼트, 너트 등
4	인쇄회로	8534.00	100	PCB 보드, 볼륨, 퓨즈 등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בל용 커넥터	8536	100	휴즈, 스위치 등
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00	프레임, 핸들
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85	우레탄 롤러, 버튼
8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20	85	스프링
9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42	85	전원코드
1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90	71	라벨
1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7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12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 기기[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장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80	57	히터센서선
1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30	42	ABS 수지
14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7220	42	스테인레스 판
15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20	42	파이프
16	전동기와 발전기(발전기세트는 제외한다)	8501	42	AC 모터
17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8504	42	트랜스포머
18	부품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90	42	릴리스 스위치
19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28	스펀지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28	컨트롤 박스
21	전자집적회로	8542.31	28	Micom
22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	28	캐퍼시터
23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28	베어링
24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	4006.90	14	고무링
25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9.42	14	
26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	14	운모판
27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7019.52	14	
28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21	14	
2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20	14	
3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3.00	14	열선
31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2	14	체인
32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91	14	알루미늄 판
33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905.00	14	열방지판
34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30	14	칼날
35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31	14	실린더
36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59	14	송풍기

광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면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7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40	14	기어
38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19	14	
39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 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90	14	히터
40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20	14	스위치
41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14	
42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90	14	근접센서
43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14	온도 컨트롤러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공정

스테인레스판 및 철판을 절단 및 프레스 공정을 통해 가공하고 홀 가공 및 탭핑 공정을 거쳐 절단면을 고르게 연삭하는 연마/절삭 공정을 거치게 된다. PCB BOARD를 제작하여 제품을 조립하고 검사 및 포장공정을 거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제품	제품 품번	FTA-BOM-77
	제품명	포장기계
	HS Code	84224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20

원재료	부품 품번	FTA-BOM-77-01	FTA-BOM-77-02	FTA-BOM-77-03	FTA-BOM-77-04	FTA-BOM-77-05
	부품명	PCB Board	휴즈 스위치 등	프레임	몰드	개스킷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53400	853610	732690	842290	401610
	HS Code [2007]	853400	853610	732690	842290	401610
	HS Code [2002]	853400	853610	732690	842199	4016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한-EU·한-터키 FTA)

제8422.40호에 분류되는 포장기계의 한-EFTA·한-EU·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22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422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22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422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포장기계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42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몰드(FTA-BOM-77-04)는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므로 역내산 물품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700(400+100+100+100) 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0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80\%$$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80%로 50%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즈·스위치 등(FTA-BOM-77-02), 프레임(FTA-BOM-77-03), 개스킷(FTA-BOM-77-05)의 세 가지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면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45.5%가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들 3개 원자재는 역외산물품을 사용하고 PCB Board(FTA-BOM-77-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34.1%로 낮아지게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78 사출식 금형 (제8480.71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 [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10	금속 주조용 주형틀
	20	주형 베이스
	30	주형 제조용 모형
	4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41	사출식이나 압축식
	49	기타
	50	유리 성형용 주형
	6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7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71	사출식이나 압축식
	7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금속성의 형(型)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주물(鑄物)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철이나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주형(鑄型), 플라스틱 등의 성형용(成型用)으로 사용되는 것, 위아래의 형(型) 사이에 금속의 얇은 판이나 플라스틱판 등을 끼우고 정해진 형상으로 압축해서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제 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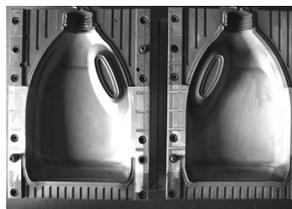
주물용 금형인 경우에는 부어 넣는 금속의 녹는점이나 부어 넣을 때 녹은 금속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을수록 강력한 형이 요구된다. 보통 금형 주물로는 보통강이 쓰이나 필요에 따라서 내열강·공구강(工具鋼)이 사용된다. 플라스틱 성형용 형의 경우 성형압(成型壓)이 높을 때에는 경화(硬化)한 강이 사용되고 저압력일 때에는 구리합금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의 정밀한 모양의 성형에는 베릴륨구리의 금형이 이용된다. 이러한 성형용 금형은 모서리 등이 빨리 닳아 모양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크롬도금을 한다.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조각을 하는데 복잡한 형은 조각비가 많이 들고 제품의 수량이 적으면 값이 높아진다.

앞에서 말한 베릴륨구리는 이에 대해 정밀주조로 형이 만들어 지므로 형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유리하다.

HS
제8480.71호

품명
사출식 금형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혹(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와셔, 볼트류, 오링
2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90	100	회전방지핀, 코어 핀
3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속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90	100	고정판, 다리, 밀판, 코어 등
4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60	블록
5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 드릴봉	7228	60	스틸 바
6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	60	몰드 베이스
7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	50	저탄소 합금 공구강
8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	40	스프링
9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307	40	로케이트 링
10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9	30	우레탄, 오링
11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30	스위치
12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20	
13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	20	샷 카운터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4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팔렛(pallet), 박스팔렛(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렛칼리(pallet collar)	4415.10	10	나무 케이스
15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90	10	구조용 강철판
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 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90	10	구조용 강철 판
17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90	10	
18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90	10	
1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9.22	10	스팀호스
2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7317.00	10	링
21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99	10	스틸
22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409.90	10	
23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91	10	
2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90	10	PP 필름
25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33.00	10	
26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9025	10	온도센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농림수산물
기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주요 제조공정

제품과 금형을 설계하고 원통형의 제품을 만드는 선반공정을 거친다. 그 후 공작물의 평면가공을 하는 밀링공정을 거쳐 가공 전극과 같은 형상을 공작물에 표현하는 방전가공공정을 한다. 공기대신 와이어에 전기를 흘려 커팅하고 광택과 평활유지를 위해 연마공정을 거친다. 가공물의 조립과 마무리 작업인 사상공정을 거쳐 시험사출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제품 품번	FTA-BOM-78
	제품명	사출식 금형
	HS Code	848071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5

원재료	부품 품번	FTA-BOM-78-01	FTA-BOM-78-02	FTA-BOM-78-03	FTA-BOM-78-04	FTA-BOM-78-05
	부품명	핫 런너	블록	몰드 베이스	로케이트 링	온도센스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47790	732690	848010	730711	920590
	HS Code [2007]	847790	732690	848010	730711	920590
	HS Code [2002]	847790	732690	848010	730711	92059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
한-터키
FTA)

제8480.71호에 분류되는 사출식 금형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80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480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80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480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사출식 금형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48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몰드 베이스(FTA-BOM-78-03)는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므로 역내산 물품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650(4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73.9\%$$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73.9%로 45%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핫 런너(FTA-BOM-78-01)을 원산지 물품으로 대체하면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28.4%가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79 밸브 (제8481.80호)

아름다운물 기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1 관세율표 분류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탭·밸브 등은 비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재료제이지만 기타의 재료제(비경화가황고무제·도자제 또는 유리제를 제외한다)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호	소호	품명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10	감압밸브
	2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30	체크 (논리턴) 밸브
	40	안전밸브
	80	그 밖의 기기
	90	부분품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8481.80호

품명
밸브



밸브란 유체를 통하게 하거나 차단 또는 제어하기 위해 통로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한 가동 기구를 가진 기기의 총칭으로 밸브는 용도, 구조상의 형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 또는 호칭된다. 밸브의 구조상에 있어서 밸브란 밸브 시트에 안착하거나 밸브 시트로부터 떨어지거나 하여 유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	100	개스킷, 오링
2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리벳
3	구리로 만든 못·압정·체도용 핀·스테인플(제 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	100	Brass Lock Plate, Shaft Body
4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	100	Ball Valve, Indicator, Worm Bush 등
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00	클램프
6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	38	스프링
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38	플리카보네이트
8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림(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38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 [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 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 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	38	합성고무
1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	25	개스킷
11	에틸렌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25	폴리에틸렌
1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2.11	25	Round Bar
13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25	폴리프로필렌
1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 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광택 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4	25	페인트
1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 름·박(箔)·스트립	3921.11	25	PE
1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 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25	
17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 막대 (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 디스크·링]	4006.90	25	오링
1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 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 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 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25	박스
19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00	13	카본 블랙
2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13	실리콘
21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예 :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40	13	
22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 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 블드럼, 나무로 만든 팔릿(pallet), 박스팔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릿칼러 (pallet collar)	4415.20	13	박스

환경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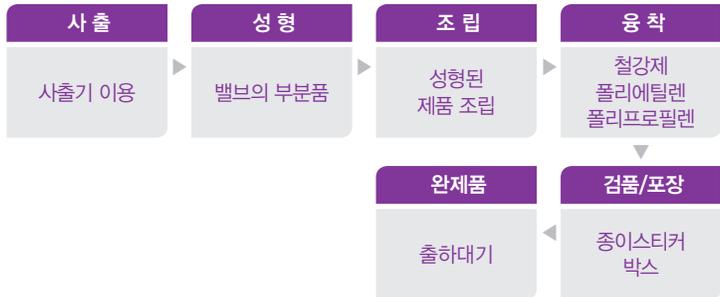
지도로 보는 2014 삼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3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1	13	스티커
24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99	13	
25	부직포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3.11	13	
26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	13	주물품
27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90	13	
28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307.21	13	플랜지
2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면침·돛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90	13	스프링 핀
3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99	13	핸들 휠
31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3.22	13	
32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21	13	
33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99	13	Lock Washer
34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90	13	
35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2.91	13	
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쇼트·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בל용 커넥터	8536.50	13	스위치
37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בל(동축케이בל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11	13	전선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철강재 및 플라스틱제의 원료를 사출기에 넣고 필요한 부품을 사출한다. 사출된 부품을 사이즈에 맞게 성형한 후 수작업으로 조립하고 열을 가해 융착 시킨 후 제품을 검수하고 스티커와 박스를 이용해 포장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1.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징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79
	제품명	밸브
	HS Code	84818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2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79-01	FTA-BOM-79-02	FTA-BOM-79-03	FTA-BOM-79-04	FTA-BOM-79-05
	부품명	Ball Valve	개스킷	리벳	Brass Lock	클램프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48110	401690	731811	732690	741510
	HS Code [2007]	848110	-	731811	732690	741510
	HS Code [2002]	848110	-	731811	732690	74151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세번없음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한-EU·
한-터키
FTA)

제8481.80호에 분류되는 밸브의 한-EFTA·한-EU·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8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481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481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481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밸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48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Ball Valve(FTA-BOM-79-01)는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 되므로 역내산 물품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35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40\%$$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40%로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기준 또한 충족하고 있다.



80 인버터 (제8504.4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된다. 정지형 변환기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해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호	호	품명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10	방전응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2	유입식 변압기
	21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22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3	그 밖의 변압기
	31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2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3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4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0	정지형 변환기
	50	그 밖의 유도자
	90	부분품

HS
제8504.40호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품명
인버터



인버터는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역변환장치)로 인버터를 동작방식으로 분류하면 자려식(自勵式)과 타려식(他勵式)이 있다. 자려식은 회로 자체의 진상장치(進相裝置 : 정류장치)에 의해 전류(轉流)하고, 외부로부터는 무효전력의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며 회로방식에는 직렬형과 병렬형이 있다. 타려식은 외부로부터는 무효전력의 보상을 받는데 회로로서는 단상·다상 정류회로가 그대로 인버터를 형성하고 있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90	-	Tray
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20	-	박스
3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50	-	코일, 인덕터
4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셋)으로 한정한다]	8532	-	전해 캐패시터, 적층세라믹콘덴서
5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21	-	저항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6	인쇄회로	8534.00	-	PCB
7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69	-	커넥터
8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9	퓨즈	8536.10	-	휴즈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공정



4 원산지결정기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제8404.10호부터 제8504.5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원재료 명세서	제품 품번	FTA-BOM-80
	제품명	인버터
	HS Code	85044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

원재	부품 품번	FTA-BOM-80-01	FTA-BOM-80-02	FTA-BOM-80-03	FTA-BOM-80-04	FTA-BOM-80-05
	부품명	Tray	Coil	전해 캐패시터	저항	PCB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392390	850450	853210	853321	853400
	HS Code [2007]	392390	850450	853210	853321	853400
	HS Code [2002]	392390	850450	853210	853321	85340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8504.40호에 분류되는 인버터의 한-EFTA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04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504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04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504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인버터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50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Coil(FTA-BOM-80-02)은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 되므로 역내산 물품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650(4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73.9\%$$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73.9%로 50%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해 캐패시터(FTA-BOM-80-03), 저항(FTA-BOM-80-04), PCB(FTA-BOM-80-05)의 세 가지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면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45.5%가 되어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들 3개 원자재는 역외산물품을 사용하고 Tray(FTA-BOM-80-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28.4%로 낮아지게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81 축전지 (제8507.8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507호의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호	소호	품명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 축전지
	20	기타의 연산 축전지
	30	니켈 카드뮴 축전지
	40	니켈 철 축전지
	50	니켈 수소 합금 축전지
	60	리튬이온 축전지
	80	기타의 축전지
	90	부분품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8507.80호

품명
축전지



축전지란 양과 음의 전극판과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학 작용에 의해 직류기전력을 생기게 하여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 사이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횟수가 1회에 한정되는 것은 1차 전지, 여러 번 가능한 것은 2차 전지이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100	튜브, 테이프
2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	100	양극활물질
3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	100	음극활물질
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100	전해액
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100	
6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90	100	전극전도체, 케이스, 커버 등
7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100	Safety Plug
8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30	100	
9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4008.11	100	바닥 패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볼트류, 너트
11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m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11	100	동박
12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	100	알루미늄 호일
13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31	66	전극 첨가제로 한정한다]
14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00	66	도전재, 카본블랙
15	천연 흑연	2504	66	Natural Graphite
16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66	N-Methyl Pyrrolidone
1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	66	PET 튜브
1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66	포장재
19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	66	AL TAB
20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99	66	알루미늄 파우치
21	폴리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산화유도체	2917.11	33	Oxalic Acid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2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접목용 퍼티(putty) ·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 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 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33	실리콘
23	조제 유희유유희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 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 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 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 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 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19	33	방청액
24	실리콘수지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33	모듈 실런트
25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 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33	포장재
26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 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6.90	33	
27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 [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 ·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70	33	
28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3	33	오링
29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 [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10	33	도전재
30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뿔바늘·코바 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90	33	
31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99	33	
32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506.10	33	음극 탭
33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 는지에 상관없다)	8414.59	33	배터리 쿨링 팬
34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90	33	연료 센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바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주요
제조과정

활물질, 도선제, BLINDER를 배합하여 SLURRY형태로 만든다. FOIL 위에 혼합된 SLURRY를 코팅한 후에 건조시키고 폭에 맞춰 절단한다. 코팅된 FOIL을 셀 크기에 맞춰 절단한 후 전해액과 함께 알루미늄 POUCH에 넣는다. 전지를 활성화하여 전기적 성능을 갖추게 하고 외관검사를 통해 불량셀 여부를 선별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국립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81
	제품명	축전지
	HS Code	85078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3

선유 · 의류 산업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81-01	FTA-BOM-81-02	FTA-BOM-81-03	FTA-BOM-81-04	FTA-BOM-81-05
	부품명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전해액	전극 바인더	Safety Plug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284130	380110	382490	390469	853610
	HS Code [2007]	284130	380110	-	390469	853610
	HS Code [2002]	284130	380110	-	390469	8536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12년 신설	-	-

기계 · 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산업기
특혜 수출입 실적

3) 결정기준
해설
(한-EU·
한-터키
FTA

제8507.80호에 분류되는 축전지의 한-EU·한-터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507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07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507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축전지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50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역외산물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85.2\%$$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85.2%로 45%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 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극 활물질(FTA-BOM-81-01)을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39.8%로 낮아지게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복합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업 실적



82 시동발전기 (제8511.4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511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정치기관용의 여허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피스톤 또는 기타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및 개폐기도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8511		볼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 (예 :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 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10	점화 플러그
	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30	배전기와 점화코일
	40	시동전동기와 검용의 시동발전기
	50	기타의 발전기
	80	기타의 기기
	90	부분품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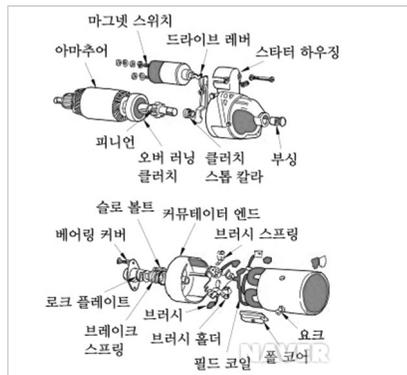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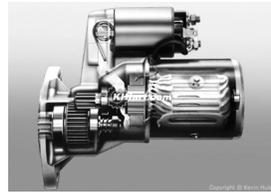
엔진 시동용 모터로 토크를 발생하는 전기부와 토크를 전달하는 기계부로 구성되어 있다. 시동 때에는 시동 모터의 피니언이 엔진의 플라이휠 링 기어에 맞물려 엔진을 회전시키다가 시동이 된 후에는 맞물림이 풀어지면서 피니언을 원위치 시키게 된다.

작은 회전력을 큰 힘으로 증대시켜 엔진에 전달시키는데 엔진이 자력으로 회전하게 되면 시동 모터는 엔진과 반대로 회전하게 되어, 피니언과 일체로 된 아마추어가 신속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파손되므로 둘 사이에 오버러닝 클러치가 설치되어 있다.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전동기 부분, 회전력을 엔진에 전달하는 동력 전달 기구, 피니언을 접동시켜 링 기어에 물리게 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S
제8511.40호

품명
시동발전기



INSEER

1) 주요
자재명세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50	100	카본 스틸바
2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 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	100	Liquid Bonderite, Liquid Grease
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100	이름판
4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	100	고무 링
5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307	100	Inner Flange, Sleeve Metal
6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혹은(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볼트류, 너트류 등
7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00	기어부품
8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	100	팬, 밸브, 하우징 플레이트 등
9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착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90	100	롤러, Sleeve Metal, Stator 등
1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0.10	50	파우더 에폭시
11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50	Liquid Cleaner
12	에틸렌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90	50	Liquid Varnish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19	50	필름 폴리메스테르 Lumirror
14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90	50	
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99	50	스틸 바
16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랄봉	7228.50	50	
17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90	50	
18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20	50	
19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806.00	50	
20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90	50	
21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50	베어링
22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50	50	
23	가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가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	50	

광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4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90	50	오일 실링
2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90	50	기어 부품
26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50	메인 다이오드
27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11	50	
28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20	50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프론트 브라켓에 베어링을 압입하고 리테이너를 조립 후 체결한다. 그 후 프론트 ASSAY를 로타 ASSAY에 조립하고 스페이서 및 풀리를 조립하는 공정을 거친다. 풀리를 고정하기 위해 HEX NUT를 체결하고 스테이터, 렉터, 레귤레이터를 프론트에 조립하는 공정을 거쳐 조립품을 압입하고 프론트 및 리어부품의 고정을 위해 관통볼트를 체결한 후 레귤레이터를 체결한다. 이어서 구출선과 리드선을 용접하고 커버를 조립하여 성능검사까지 완료하면 제품이 생산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제품	제품 품번	FTA-BOM-82
	제품명	시동발전기
	HS Code	85114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

원재료	부품 품번	FTA-BOM-82-01	FTA-BOM-82-02	FTA-BOM-82-03	FTA-BOM-82-04	FTA-BOM-82-05
	부품명	카본 스틸바	기어부품	하우징	이름판	Sleeve Metal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725150	732690	841410	392610	730711
	HS Code [2007]	-	732690	841410	392610	730711
	HS Code [2002]	-	732690	841410	392610	730711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세번없음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한-EU·한-터키 FTA)

제8511.40호에 분류되는 시동발전기의 한-EFTA·한-EU·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1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511호가 생산되거나,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1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511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시동발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5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역외산물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 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85.2\%$$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85.2%로 50%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 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본 스틸바(FTA-BOM-82-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39.8%로 낮아지게 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카본 스틸바(FTA-BOM-82-01)를 역외산재료를 사용하고 나머지 원재료들을 역내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45.5%가 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83 사우나 캐빈 (제8516.7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 헤어 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8516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10	전기식의 즉시식,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2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29	기타
	3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나 손 건조기
	31	헤어 드라이어
	32	그 밖의 이용기기
	33	손 건조기
	40	전기다리미
	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60	그 밖의 오븐, 쿠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로스터
	7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71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호	소 호	품 명
	72	토스터
	79	기타
	80	전열용 저항체
	90	부분품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사우나란 증기욕과 열기욕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열한 돌에 물을 뿌려서 증기를 일으켜 몸을 덥게 한 다음, 자작나무가지로 두들겨 마사지를 하거나 때를 밀어 내고 냉수 샤워나 눈으로 몸을 식혀 전신의 혈행(血行)을 촉진시키는 목욕이다.

사우나 캐빈은 가정 내에서 이러한 사우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줄여서 만든 것이다.

HS
제8516.79호

품명
사우나 캐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100	컴퓨터용 와이어, 캡코드
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100	플라스틱 피트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00	LED 갓
4	전기식의 즉식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 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장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	100	히터, 반사판, 센서망 등
5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86	베니아 합판
6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	85	샌딩, 페인트, 라카 등
7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85	스위치, 커넥터 등
8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19	71	강화유리
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71	박스
10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	71	오공본드 등
11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혹은(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71	히터고리, 볼트 등
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	71	알루미늄 케이스
13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0	71	워닝, 시리얼 명판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4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	8518	71	스피커
15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울룩불룩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	57	포장 속지, 코너 팩 등
16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30	57	피스 나사못
17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	57	경첩, 클립
18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도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6302.91	43	타올
19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43	컨트롤러
20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뜯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3.20	42	적삼목
21	지재목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0	42	목재
22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	42	테입
2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90	42	밴딩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4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nish) 제거제	3814.10	29	신나
25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1	29	그린매트
26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 [블록가공·흠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	29	내부심재
27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90	29	포장용 박스
28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204.20	29	모헤어
29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8303.49	29	전기명판 (알루미늄)
30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5.11	29	온도계
31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10	28	연마제, 와일드 페이퍼
32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신발의 나무로 만든 굽	4417.10	14	목재 손잡이
33	페인트와 바니시(va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90	14	Water Soluable Paint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4	마르케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4420.90	14	사우나 박스
35	그 밖의 목제품	4421.10	14	타월 걸이
36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2.19	14	
37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31	14	안정기
38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11	14	자석
39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90	14	
40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21	14	할로겐 전등
41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90	14	필름히타(카본)
42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14	램프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2) 주요 제조공정

선별한 목재를 약 7일간 자연건조 시킨 후 골조생산을 위한 가공을 한 후 골조에 목재를 조립 및 접착하고 완성된 캐빈에 페인트를 이용하여 도장을 한다. 캐빈에 히터 및 전기조립을 한 후 품질검사를 완료해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16.8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83
	제품명	사우나 캐빈
	HS Code	851679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0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83-01	FTA-BOM-83-02	FTA-BOM-83-03	FTA-BOM-83-04	FTA-BOM-83-05
	부품명	강화유리	베니아합판	플라스틱 피트	커텍터	LED 갓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700719	441210	392610	853610	732690
	HS Code [2007]	700719	441210	392610	853610	732690
	HS Code [2002]	700719	441210	392610	853610	73269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HS2002 441213외 8개 존재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8516.79호에 분류되는 사우나 캐빈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16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516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16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516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사우나 캐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 (HS 제851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역외산물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 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600(400+10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0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34\%$$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34%로 40%를 초과하지 못 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 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라스틱 피트(FTA-BOM-83-03) 또는 LED 갓(FTA-BOM-83-05) 중 하나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 가치 발생비율이 45.1%로 높아지게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84 유무선 송수신장치 (제8517.6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 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1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11	유선전화기 [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8	기타
	6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61	기자극
	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69	기타	
70	부분품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8517.62호

품명
송수신장치



송수신 장치란 음성이나 데이터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무전기의 경우 근거리 통화자의 의사가 전파에 의해 송수신되도록 하는 기기장치로 무선통신 방법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데이터 송수신장치의 경우 컴퓨터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데,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다른 장치로 전송할 경우에 사용된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2	100	탄탈륨 캐패시터, 기타 캐패시터 등
2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	100	레지스터
3	인쇄회로	8534.00	100	PCB
4	전자집적회로	8542	100	CPU, IC 등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100	스위치, 커넥터
6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100	다이오드, 엘이디, 트랜지스터
7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	100	인덕터
8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7.70	100	사시, 파워 증폭기, 전원 공급기, 안테나 등
9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90	60	
10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60	포장박스
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40	윈도우 라벨
12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	40	CPU 보드
1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40	케이스
14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10	40	키패드
1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40	40	

광통신물 기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변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6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40	케이블
17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20	엘이디 지지대
18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90	20	라벨
19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	20	캔
2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1	20	볼트
21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20	20	Isolator
22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k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20	실런트, 밸브
23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20	폼 테입, 아크릴
24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29	20	스피커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 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60	20	블루투스 모듈
26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20	안테나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송수신장치의 원재료인 케이스와 LCD, PCB 등 조립할 자재를 입고 및 조립을 준비한다. KEY PCB에 터치패드를 붙인 후 메인 PCB에 TX모듈을 부착한다. 상판 CASE에 LCD와 PCB를 조립하고 메인 PCB까지 조립한 후 검품을 하고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아세안	1.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같은 소호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송신기기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84
	제품명	유무선 송수신장치
	HS Code	851762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2

원 재 비 준	부품 품번	FTA-BOM -84-01	FTA-BOM -84-02	FTA-BOM -84-03	FTA-BOM -84-04	FTA-BOM -84-05
	부품명	PCB	CPU	인덕트	전원공급기	레지스터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53400	854231	850410	851770	853310
	HS Code [2007]	853400	854231	850410	851770	853310
	HS Code [2002]	853400	854231	850410	847330	8533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HS2002 854221 외 3개 존재	-	HS2002 847330 외 2개 존재	-

무선·유선 기기 부품

확산산업

선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3) 결정기준 해설 (한-EU· 한-터키 FTA)

제8517.62호에 분류되는 시동발전기의 한-EU·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1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517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1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517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유무선 송수신장치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51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전원공급기(FTA-BOM-84-04)는 반드시 원산지물품이 사용 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700(400+100+10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0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79.5\%$$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79.5%로 45%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 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PCB(FTA-BOM-84-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34.1%로 낮아지게 되어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85 휴대용 오디오 (제8519.81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519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장치 또는 매체(자기 테이프, 광학 매체, 반도체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된다.

호	소호	품명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20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기타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50	전화응답기
	8	기타의 기기
	81	자기식·광학식 또는 기타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8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8519.81호

품명 휴대용 오디오

오디오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역 내의 음파 및 그것을 변환한 전기신호를 다루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라틴어의 ‘audire(들다)’에서 유래하였는데, 음악이나 사람의 목소리, 자연음 등 가청 주파수대역 내의 음파(보통 30~16,000 Hz)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기록(녹음) 또는 기록된 신호를 음파

에너지로 변환하여 공간에 방사(재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휴대용 오디오는 이들 오디오를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줄인 것으로 여기에는 C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100	행거 등
2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9	100	고무류
3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100	박스
4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99	100	데코레이션 카드
5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30	100	
6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8504	100	이답타, 인덕터
7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 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	100	스피커, 이어폰
8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90	100	
9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	100	칩
10	인쇄회로	8534.00	100	PCB
11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100	스위치, USB 커넥터
12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 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100	다이오드, 인디케이터 등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3	전자집적회로	8542	100	앰프, IC 등
1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100	USB 케이블, 포트
15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를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90	50	스티커
16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50	
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50	스티커
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 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	50	비드
19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90	50	배터리 잠금
20	일차전지	8506.10	50	배터리
21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인지에 상관없다)	8507.80	50	배터리
22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40	50	안테나 칩
2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50	퓨즈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공정

손잡이, 로고, 스피커 등의 사출물을 조립하여 케이스를 조립한 후 조종 패널 등 각종 스위치를 자리에 부착하고 메인 PCB, LED 및 RF수신기 유닛을 준비해 조립한다.

라디오수신기 부품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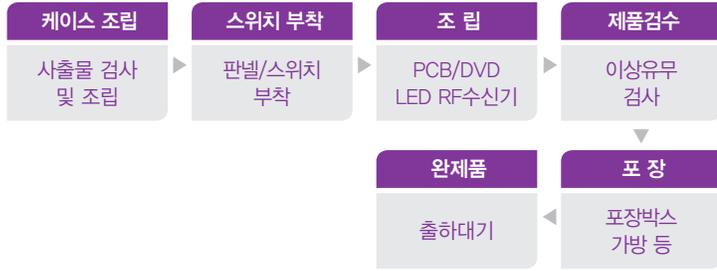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자도로 보는 2014 삼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조립이 완료되면 제품 검수를 통해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2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1.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기타의 음성재생기 : 제8519,8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2. 디케이팅기, 기타의 마그네틱 테이프녹음기, 데크, 기타의 음성기록기 : 제8519,8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품목번호 8520.32부터 8520.33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제품	제품 품번	FTA-BOM-85
	제품명	휴대용 오디오
	HS Code	851981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2

원재료	부품 품번	FTA-BOM-85-01	FTA-BOM-85-02	FTA-BOM-85-03	FTA-BOM-85-04	FTA-BOM-85-05
	부품명	칩	PCB	인디케이터	커넥터 등	배터리
	소요량	1	1	1	1	1
	단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53210	853400	854110	853610	390710
	HS Code [2007]	853210	853400	854110	853610	390710
	HS Code [2002]	853210	853400	854110	853610	3907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8519.81호에 분류되는 휴대용 오디오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19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519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19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519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휴대용 오디오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 (HS 제8519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역외산물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 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17\%$$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17%로 4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칩(FTA-BOM-85-01)을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로 높아지게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칩(FTA-BOM-85-01)을 역외산물품을 투입하고 나머지 원재료들을 역내산 물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6.0%로 높아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86 CCTV 카메라 (제8525.8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525호에는 송수신기기와 텔레비전·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된다. 제8525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하며,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처리하기 위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호	소호	품명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50	송신기기
	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80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텔레비전(TV)은 방송국이 수집한 영상과 음성을 전파나 전용선을 통해 원거리에서 수신하여 재현하는 전자제품이다. 영상은 TV용 카메라를 통해 수집하며 다양한 제품이 있고 제품마다 사양이 달라 녹화할 수 있는 화질도 다양하다.

CCTV란 공간에 전파를 발사하지 않고 유선계(系)속에 전파를 집어

넣어 텔레비전 신호를 전송하는 것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도 한다. 유선에 의해 텔레비전 신호를 전송한다는 점에서 말한다면 CATV(Community Antenna TV)나 MATV(Master Antenna TV)도 CCTV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대중을 위해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을 지칭할 때가 많다.

HS
제8525.80호

품명
텔레비전
및 CCTV 카메라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스크루 태핑, 렌치, 육각Nut 등
2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90	100	카메라 모듈, 전원보드 등
3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셋)으로 한정한다]	8532.21	100	커패시터
4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	100	저항
5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2	100	렌즈, 고해상도 필터 등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100	스위치
7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100	다이오드, 인덕터, 칩 트랜지스터, IC
8	전자집적회로	8542	100	IC메모리, 증폭기, 프로세서 등
9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100	와이어, 커넥터 등
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91	더미 플레이트, LED홀더, 오링 등
11	인쇄회로	8534	73	PCB
1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54	박스
13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	54	인덕터, 칩 코일 등
14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	45	카메라 브라켓
15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를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	36	테이프, 보호필름
16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	36	매뉴얼
17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1	36	스티커, 라벨 등
18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	27	LED 패드

광통신물 기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산업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9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	27	캡, 고무
20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인플(제 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 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	18	마그넷 스크루
2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2	18	실리카겔
22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	18	브라켓
2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99	9	그리스
24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예 :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31	9	수축 튜브
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61	9	
26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1	9	비닐백
27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브제의 상자·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4819	9	기프트박스
28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9	스티커
29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 (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90	9	고어텍스
3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6.00	9	글래스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1	안전유리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19	9	강화유리
32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90	9	태양막
3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3.21	9	서포트
34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21	9	
35	구리의 백철[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m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21	9	PCB
36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	9	태양막
37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907	9	렌즈홀더
38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90	9	탄탈
39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59	9	팬
40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90	9	마그넷
41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80	9	배터리
42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x)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40	9	
43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90	9	도장
44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90	9	스위치
45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49	9	IR LED

다량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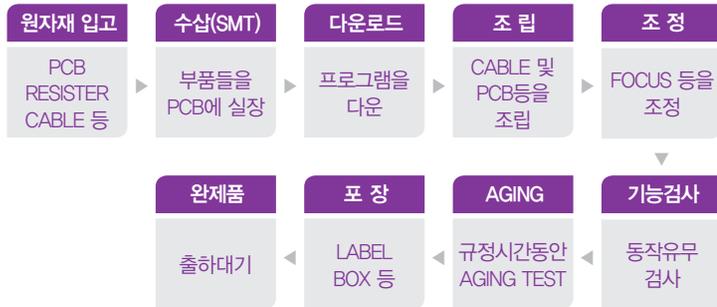
지도로 보는 2014 삼분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46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90	9	필터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공정

부품이 입고되면 각종 전자부품들을 PCB에 실장하고 UB실행 및 포트설정 등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제품 케이블과 PCB 등을 조립한다. 조립품의 FOCUS 정상동작 유/무를 확인한 후 기능검사를 실시하고 AGING공정을 진행한 후 진행 완료된 제품을 포장하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1. 텔레비전 카메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없음
터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안 제 품	제품 품번	FTA-BOM-86
	제품명	CCTV 카메라
	HS Code	85258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2

원 재 비	부품 품번	FTA-BOM-86-01	FTA-BOM-86-02	FTA-BOM-86-03	FTA-BOM-86-04	FTA-BOM-86-05
	부품명	카메라 모듈	렌즈	커패시터	IO메모리	스위치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52990	900211	853221	854231	853610
	HS Code [2007]	852990	900211	853221	854231	853610
	HS Code [2002]	852990	900211	853221	854221	8536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HS2002 854221 외 3개 존재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8525.80호에 분류되는 휴대용 오디오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25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525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25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525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CCTV카메라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52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역외산물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 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17\%$$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17%로 4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메라 모듈(FTA-BOM-86-01)을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로 높아지게 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카메라 모듈(FTA-BOM-86-01)을

역외산물품을 투입하고 나머지 원재료들을 역내산 물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6.0%로 높아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복합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87 산업용 모니터(제8528.5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528호에는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2)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텔레비전 세트) (3)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기기(예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기) 등을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음극선관 모니터
	41	제84714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49	기타
	5	기타 모니터
	5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59	기타
	6	프로젝터
	6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69	기타
	7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1	영상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
	72	기타 (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73	기타 (단색의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모니터는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컴퓨터에서 생성한 정보를 화면상의 점행렬 소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주는 화면 출력 장치로 단색 또는 컬러가 있으며 글자나 그래픽을 나타낼 수 있다.

그 활용도는 다양해서 현재는 TV수신까지 가능한 모니터가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 있으며 LCD뿐만 아니라 LED를 넣어 더욱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량하고 있다.

HS
제8528.59호

품명
산업용
모니터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8504	100	아답타, 비드 칩, 인덕터 등
2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 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	100	LCD패널, 케이스, 센서판 등
3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 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	100	터치패널, 보드, 브라켓 등
4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	100	칩 탄탈, 칩 세라믹
5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100	LED칩, 다이오드, 크리스탈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6	전자집적회로	8542	100	IC, 컨버터, 오디오 파워 앰프, CPU 등
7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100	케이블 등
8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100	손잡이, 라벨, 커버 등
9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100	퓨즈, 스위치, 커넥터
10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	77	세라믹 레지스터, 저항, 스위치 등
11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29	66	고무 스피커
12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66	볼트, 스크류
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 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80	55	LCD 패널
14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55	박스
15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	44	
16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90	44	스위치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7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33	플리백
18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99	33	본드
19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80	33	배터리
2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	22	테이프, 보호지
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90	22	발포지, 패드
22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90	22	브라켓
2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70	22	리모콘, 사진센서
24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	22	CD
25	인쇄회로	8534.00	22	PCB
2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9	11	고무 Foot
27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5.93	11	박스
28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807.00	11	박스
29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 구류[예 :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32	11	블루투스 칩 Ant
30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99	11	매뉴얼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산업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31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 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6302.93	11	극세사
32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 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92	11	와이어
33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mm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 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23	11	코일
34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1	케이스
35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907.00	11	케이스
36	단탈롭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을 포함한다]	8103.90	11	단탈롭
37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 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 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0.00	11	라벨
38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 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 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8536	11	커넥터
39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 립을 위하여 주소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 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 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 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90	11	수축튜브
40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90	11	센서
4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2	11	방습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PCB, 케이블 등의 원자재의 외관 상태를 검사한 후 PCB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다. 그 후 각 부자재를 이용하여 TOP면과 BOTTOM면을 각각 조립하고 결합시켜 해당 스크루를 이용해 조립완료 시킨 후 기능과 외관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품이 완성된다.



아름다운 상품
기공식품

확신산업

선유 · 의류 산업

기계 · 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업 실적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품목번호 8529.90의 디지털 미소반사 표시기를 포함한 평판 스크린 어셈블리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9013.80 및 8529의 기타 물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품목번호 8529.90 또는 9013.8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터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87
	제품명	산업용 모니터
	HS Code	852859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2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87-01	FTA-BOM-87-02	FTA-BOM-87-03	FTA-BOM-87-04	FTA-BOM-87-05
	부품명	LCD패널	터치패널	LED 칩	케이블	CPU 등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52841	852910	854110	854411	854231
	HS Code [2007]	852841	852910	854110	854411	854231
	HS Code [2002]	847160	852910	854110	854411	854221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HS2002 854221 외 3개 존재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8528.59호에 분류되는 산업용 모니터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28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528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28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528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산업용 모니터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528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LCD 패널(FTA-BOM-87-01)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35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61.5\%$$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5%로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88 안테나 (제8529.10호)

1 관세율표 분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해 제8529호에는 제8525호(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제8526호(레이더기기, 행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제8527호(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제8528호(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호	소호	품명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그 부분품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HS
제8529.10호

품명 안테나

안테나는 무선통신에서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간에 효율적으로 전파를 방사하거나, 전파에 의해 효율적으로 기전력을 유기(誘起)시키기 위해 공중에 가설한 도선을 말한다.

송신용 안테나나 수신용 안테나도 그 기본원리는 같으나 사용하는 주파수(파장)에 따라 모양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사용하는 주파수에 공진(共振)시킬 필요가 있다. 수직형 안테나는 동축안테나 또는 슬리브(sleeve) 안테나라고도 하는데 그 길이를 사용하는 파장의 1/4 또는 1/2로 하면 공진하지만, 실제로는 안테나가 너무 길어지므로 코일이나 콘덴서를 사용해서 공진시키고 있다. 또한 단파나 초단파에서는 파장이 짧으므로 1/2파장의 안테나를 쓰고 있으며, 동축안테나는 택시무선이나 기타 초단파를 사용하는 통신장치의 송수신 안테나로서 많이 사용된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100	우드락, 볼리백, 랩
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100	Cable Clamp, 고무, 플라스틱 커버 등
3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00	Base Stopper, 베어링, 케이블 등
4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99	100	어댑터, Base Post, Cable Guide, Flange
5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	100	안테나 플레이트, 코일, 커버
6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	83	실리콘, 스티커, 테입
7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9	83	벨트, 고무 등
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83	박스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67	케이블
1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67	스크루, 나사, 너트
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99	67	
12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31	50	모터, Stepping Motor
13	구리의 선	7408.29	33	튜너
14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33	브라켓
15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속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 포함하지 않으며, 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90	33	오링
1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33	커넥터
1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99	17	격자 필름
18	그 밖의 목제품	4421.90	17	팻릿
19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17	라벨
20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99	17	메뉴얼
21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 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33	17	넛 류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2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99	17	
23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 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8204.11	17	스패너
2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	17	개스킷
25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40	17	
26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49	17	프로그램 CD
27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	8526.91	17	GPS
28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20	17	VFD
29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29	17	
30	인쇄회로	8534.00	17	PCB
31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 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17	컴퍼스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광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주요 제조공정



YAW, BODY, LEVEL, SENSOR 각 모듈별로 기구를 조립한 후 모듈 간에 조립을 한다. 그 후 MOTER 및 기타 부속품들을 부착하는 공정을 거쳐 WIRING작업 및 SPEC적용, CABLE정리 및 BUC, LNB를 적용하는 공정을 실시한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육안검사와 기타 테스트를 하는 QA테스트를 거쳐 검사를 완료하고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88
	제품명	안테나
	HS Code	85291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2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88-01	FTA-BOM-88-02	FTA-BOM-88-03	FTA-BOM-88-04	FTA-BOM-88-05
	부품명	안테나 플레이트	우드락	어댑터	Cable Clamp	Base Stopper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52910	392310	761699	392690	732690
	HS Code [2007]	852910	392310	761699	-	732690
	HS Code [2002]	852910	392310	761699	-	73269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비 고	-	-	-	12년 신설	-

과립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삼분기
특혜 수출입 실적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FTA)

제8529.10호에 분류되는 안테나의 한-EFTA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29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529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29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529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안테나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529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안테나 플레이트(FTA-BOM-88-01)는 반드시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300(100+10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0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34.1\%$$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34.1%로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89 전기제어용 패널 (제8537.1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537호의 물품은 제8535호 및 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호	소호	품명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차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10	전압 1,000 볼트 이하인 것
	20	전압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품명 터치패널

CRT나 LCD 등과 조합시켜 문장과 그림 등이 표시되어 있는 장소를 직접 누름으로써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투명 스위치 패널.

HS
제8537.10호

투명스위치에는 적외선을 사용한 광학식과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ITO(인듐산화 주석)막을 피복한 투명 도전막의 접점을 사용하는 투명전극식, 스테인리스 강선을 투명 도전성 필름에 묻은 투명 도전성 필름, 정전용량의 변화를 검출하는 정전용량식, 패널에 닿은 손끝의 압력을 패널 주변에 배치한 압력센서에 대한 힘의 배분으로부터 위치를 감지하는 것 등이 실용화되고 있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	100	전해캐패시터
2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100	휴즈, 서킷 브로텍터, 마그네틱 콘택터
3	부품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90	100	콘트롤러, 메인 보드, 터치, 조이스틱 등
4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100	다이오드, FET, 트랜지스터
5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	83	트랜스, Power Supply, 인버터
6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미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67	박스, 트레이
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67	USB 커버, Power Cap
8	전자집적회로	8542.39	67	직접회로
9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	67	칩 저항
10	인쇄회로	8534.00	50	PCB
11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шит·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	3919	50	테이프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2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50	절연전선, 케이블, 와이어
13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 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50	박스
14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19	33	잉크
15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을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90	33	테이프
16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33	라벨
17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 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80	33	LCD 패널
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33	스크루
19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33	패널, 클램프
2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	33	Steel Bracket, LCD Bracket
21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3	17	고무 개스킷
22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90	17	노이즈 필터

아름다운물 기공식품

화신산업

선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변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3	일차전지	8506.30	17	배터리
24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17	반전 Ag
2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 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50	17	
26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70	17	IR Module
27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17	메뉴얼
28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17	ITO 글라스
29	퓨즈	8536.10	17	휴즈
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33	17	디스플레이 미터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공정



FRONT PCB를 비롯한 TOUCH조립 공정을 거쳐 LCD를 조립해준 후 LCD패널 및 메인PCB와 각종 BRACKET을 조립하면 반제품이 완성되는데, 1차 기능검사를 통해 시험 가동

하는 과정을 거쳐 50도 이상의 고온에서 4시간 가량 테스트 하는
ELT검사 공정을 거친다. 기능검사와 ELT검사 모두 이상이 없다면
포장을 하고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8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89
	제품명	터치패널
	HS Code	85371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1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89-01	FTA-BOM-89-02	FTA-BOM-89-03	FTA-BOM-89-04	FTA-BOM-89-05
	부품명	메인보드	직접회로	PCB	전해 캐패시터	휴즈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53890	854239	853400	853210	853610
	HS Code [2007]	853890	854239	853400	853210	853610
	HS Code [2002]	853890	854221	853400	853210	8536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HS2002 854221 외 3개 존재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한-터키 FTA)

제8537.10호에 분류되는 터치패널의 한-EU·한-터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3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537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3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8537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터치패널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853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 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85.2\%$$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85.2%로 45%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메인보드(FTA-BOM-89-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39.7%로 낮아지게 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90 전기절연 케이블 (제8544.42호)

1 관세율표 분류

제8544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스트립·봉 등]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해저 또는 가공전선 및 케이블)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호	소호	품명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권선용 전선
	11	동제의 것
	19	기타
	20	동축 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30	접착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4	기타의 전기도체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49	기타
	60	기타의 전기도체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0	광섬유 케이블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나전선을 고무·지·면사·견사 등으로 피복하거나 에나멜(enamel)등으로 말아 놓은 절연을 위한 전선으로, 1종 및 2종 먼 절연전선, 고무 절연선, 비닐 절연선 등 용도에 의해 각종 절연 케이블이 있다. 일반적으로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고무 등의 속에 전선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선을 포함할 수 있다.

HS
제8544.42호

품명
전기절연
케이블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100	PVC 와이어, 케이블, 홀더
2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90	40	
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90	40	커넥터, 터미널
4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90	40	플러그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5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40	PVC, PE 도전성
6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20	지퍼백
7	고무와 그 제품	40류	20	열가소성 고무
8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20	박스
9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11	20	계재사
10	구리의 선	7408.19	20	구리선
11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m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12	20	탄셀동박
12	납의 괴(塊)	7801.10	20	납
13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90	20	자석선
14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20	20	레신
15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90	20	압착단자
16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20	20	커넥터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동선에 1차 절연전선을 압출하는 내피 압출공정을 거쳐 2차 압출 과정인 외피 압출공정을 거친 후 케이블을 절단하고 탈피하고 단자를 압착시키는 가공공정을 거친다.

압착된 단자를 PLUG성형하는 공정을 거쳐 도통, 극성, 내전압 검사를 거친 후 BOX로 포장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없음
터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90
	제품명	전기절연 케이블
	HS Code	854442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2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90-01	FTA-BOM-90-02	FTA-BOM-90-03	FTA-BOM-90-04	FTA-BOM-90-05
	부품명	PVC와이어	터미널	플러그	계재사	틴세동박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54411	853590	853690	540211	741012
	HS Code [2007]	854411	853590	853690	540211	741012
	HS Code [2002]	854411	853590	853690	540210	741012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8544.42호에 분류되는 전기절연 케이블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44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544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8544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8544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전기절연 케이블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 (HS 제854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PVC 와이어(FTA-BOM-90-01)는 원산지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35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61.5\%$$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5%로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A close-up photograph of an engine's internal components, specifically the cylinder head area, showing valves and springs. The image is overlaid with a semi-transparent purple rectangle. Inside this rectangle, the Korean text '광학용품 및 잡품' is written in white. To the right of the text, there is a faint, stylized gear icon with radiating lines, suggesting mechanical or industrial themes.

광학용품 및 잡품



91 콘택트 렌즈 (제9001.3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9001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 그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을 분류하여, 연마한 물품과 성형 후 연마한 물품이 제9001호에 속한다. 다만, 단순히 앞에서 설명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연마되지 않은 물품은 이 호에 해당되지 않고 제70류에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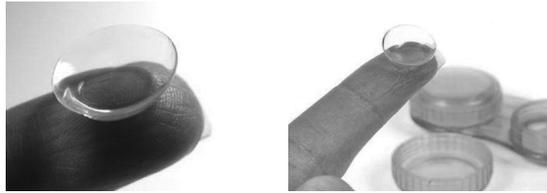
호	소호	품명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 (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10	광섬유·광섬유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20	편광재료제의 판
	30	콘택트렌즈
	40	유리제의 안경렌즈
	50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콘택트 렌즈란 안구(眼球)의 전면에 렌즈를 직접 콘택트(密着)시켜 좋은 시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늘날 사용되는 것은 각막과 공막(鞏膜: 검은 눈동자와 그 주위의 흰 부분)에 장착하는 공각막(鞏角膜) 렌즈와 각막부에 장착하는 각막 렌즈가 있다.

HS
제9001.30호

품명
콘택트
렌즈



의료수산물
기공수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100	EGDMA
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822.00	67	MMA
3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50	CHROMOPHTHAL, 염료
4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2927.00	34	AIBN
5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34	BLISTER
6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90	17	디메틸, 핵산
7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31	17	EGDMA
8	유기-황화합물	2930.90	17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산업기
특혜 수출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00	17	TRIS
10	질소헥테로고리 화합물	2933.79	17	NVP
11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41	17	염료
12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5.90	17	AIBN
13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00	17	NVP
14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6.90	17	씰링지
15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50	17	박스
16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9001.30	17	DRY LENS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수지 배압료 등 원재료를 교반하여 몰드에 주입해 렌즈를 생산하는데 컬러렌즈의 경우 생산된 렌즈에 착색을 하는 공정을 거친다.

생산한 렌즈에 열처리를 통해 성형을 시킨 후 외관에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식염수에 넣어 캡핑을 한 후 고압증기로 멸균을 시키면 최종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91
	제품명	콘택트 렌즈
	HS Code	90013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g)	2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91-01	FTA-BOM-91-02	FTA-BOM-91-03	FTA-BOM-91-04	FTA-BOM-91-05
	부품명	EGDMA	MMA	AIEN	염료	ELISTER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291611	382200	292700	320411	392310
	HS Code [2007]	291611	382200	292700	320411	392310
	HS Code [2002]	291611	382200	292700	320411	3923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한-EU·한-터키 FTA)

제9001.30호에 분류되는 콘택트 렌즈의 한-EFTA·한-EU·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00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9001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001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9001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콘택트 렌즈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900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 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85.2\%$$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85.2%로 45%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EGDMA(FTA-BOM-91-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39.7%로 낮아지게 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92 안경렌즈 (제9001.5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9001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 그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을 분류하므로, 연마한 물품과 성형 후 연마한 물품이 제9001호에 속한다. 다만, 단순히 앞에서 설명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연마되지 않은 물품은 이 호에 해당되지 않고 제70류에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 (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10	광섬유·광섬유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20	편광재료제의 판
	30	콘택트렌즈
	40	유리제의 안경렌즈
	50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렌즈는 유리와 같이 투명한 물질의 면을 구면(球面)으로 곱게 갈아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으거나 발산시켜 광학적 상(像)을 맺게 하는 물체이다.

가운데가 두꺼워 빛을 모으는 작용을 하는 볼록렌즈(집광렌즈)와 주변 쪽이 두꺼워 빛을 발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오목렌즈(발산 렌즈)로 나눌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안경렌즈·확대경·사진렌즈 등이 있고 현미경·망원경 등에서는 물체에 가까운 쪽에 있는 대물렌즈, 눈에 가까운 쪽에 있는 접안렌즈 등으로 나눈다.

HS
제9001.50호

품명
안경렌즈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90	IPP, 하드액, 코팅약품, 크롬광 배소물
2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2	45	인동산화물
3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00	45	촉매제, 이형제
4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90	36	이형제, 모노머 촉진제
5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	36	모노머
6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	36	하드코팅 솔루션
7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 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99	36	
8	유기-황화합물	2930.90	27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9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99	27	UV 흡수제
1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90	27	실리콘 테입
11	환식탄화수소	2902	27	톨루엔 화합물, 스티렌 모노머
12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9001.50	27	코팅렌즈
13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90	18	
14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합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	18	렌즈봉투
15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39	9	
16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20	9	산화알루미늄
17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2846.90	9	YTTRIUM OXIDE
18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40	9	
19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3.00	9	CREMETS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렌즈를 가공할 몰드를 세척한 후 몰드 2개를 제조할 렌즈 두께에 맞게 붙인다. 이형제 등을 배합해서 몰드에 주입한 후 가열하여 중합과정을 거친 후 몰드와 렌즈를 분리한다.

만들어진 렌즈의 가변부를 갈아내는 공정인 면치기를 해준 후 한 번 더 중합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품이 만들어진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92
	제품명	안경렌즈
	HS Code	90015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g)	15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92-01	FTA-BOM-92-02	FTA-BOM-92-03	FTA-BOM-92-04	FTA-BOM-92-05
	부품명	IPP	인동산화물	촉매제	모노머 축진제	모노머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382490	281122	293100	291990	292910
	HS Code [2007]	-	281122	-	291990	292910
	HS Code [2002]	-	281122	-	291990	2929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12년 신설	-	세번 없음	-	-

3) 결정기준
해설
(한-EFTA·
한-EU·
한-터키
FTA)

제9001.50호에 분류되는 안경렌즈의 한-EFTA·한-EU·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001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9001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001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9001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안경렌즈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900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85.2\%$$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85.2%로 45%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IPP(FTA-BOM-92-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39.7%로 낮아지게 되어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93 램프 (제9405.4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9405호에는 또한 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를 포함하는데 이들 물품은 집중된 광선(대개 조절할 수 있음)을 반사경과 렌즈에 의하거나 단지 반사경만을 갖추어 일정한 거리를 지나서 지점이나 표면에 비쳐진다.

호	소호	품명
9405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산데리아와 기타의 천장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 (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3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40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	부분품
	91	유리제의 것
	92	플라스틱제의 것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램프는 일괄적으로 빛을 발하는 광원의 포괄적인 총칭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발하는 장치이지만,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발하는 것을 램프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컴퓨터실에서는 CRT 디스플레이(CRT display)의 발광 등을 고려하여 광원의 밝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HS
제9405.40호

품명
램프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100	다이오드, LED, RESISTOR 등
2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혹은(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83	스크루, 볼트 등
3	인쇄회로	8534	83	PCB
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58	케이블, 전선
5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	48	양면 테이프, 접착테이프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6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40	박스
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30	34	EPOXY
8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	32	CHIP RESISTOR
9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32	커넥터, 소켓
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32	브라켓
11	전자집적회로	8542	24	IC
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99	24	HEAT SINK, 알루미늄 형체
13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	24	안정기
14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7405.92	16	하우징
15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21	8	가스
1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8	사출레진
17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30	8	
18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8	TEFLON CAP
19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50	8	전극 캡
20	기화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3	8	고무 부싱
2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8	메뉴얼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22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차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90	8	유리제 외피
23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8	비스
24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21	8	슬리브
25	비금속(非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30	8	무연납
26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90	8	램프 부분품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X100

2) 주요 제조과정

PCB모듈에 LED CHIP을 SMT한 후 드라이브 등 각종 부품들을 자삽하고 드라이브를 수삽하여 와이어를 조립하고 점등을 검사한다.

LED모듈을 HEAT SINK에 부착하고 DRIVE PCB에 절연지 작업을 한 후 DRIVE모듈과 LED모듈을 조립한다. 와이어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케이스 및 커버까지 조립한 후 최종검사와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터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작성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93
	제품명	램프
	HS Code	94054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2

원 재 보	부품 품번	FTA-BOM -93-01	FTA-BOM -93-02	FTA-BOM -93-03	FTA-BOM -93-04	FTA-BOM -93-05
	부품명	LED	LED COVER	PCB	케이블	소켓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854110	940510	853400	854411	853610
	HS Code [2007]	854110	940510	853400	854411	853610
	HS Code [2002]	854110	940510	853400	854411	853610
	원산지	역외산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광통신용 기공식품

회선산업

선유 · 의류 산업

기계 · 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분기
특혜 수출입 실적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9405.40호에 분류되는 램프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405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9405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405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9405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램프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940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LED COVER (FTA-BOM-94-02)는 원산지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어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650(4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6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28.6\%$$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28.6%로 4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역외산물품 중 일부를 역내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LED(FTA-BOM-93-01)를 역내산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72.5%가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94 조립용 키트 (제9503.0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9503	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조립용 키트란 사용자가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부품을 말하며 아동용 장난감에 주로 이용된다. 형태는 배, 비행기 등 다양하며 재료도 플라스틱, 나무를 비롯해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하다.

HS
제9503.00호

품명
조립용 키트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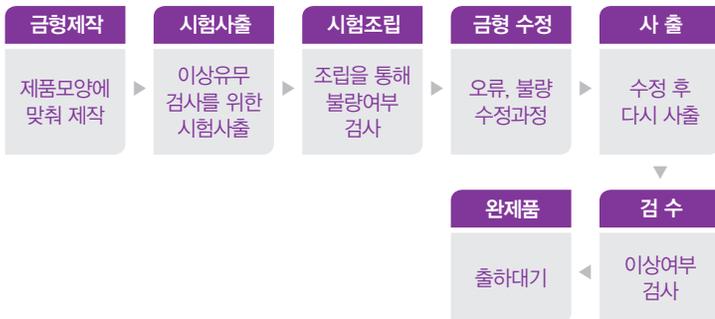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19	-	레신
2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	PE 비닐
3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99	-	SANTOPRENE
4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 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	박스
5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lsomania)]	4908.90	-	전사지
6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	설명서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개발된 제품의 모양에 맞춰 금형을 설계한 후 시험 사출을 한다. 시험 사출된 키트를 조립하여 불량 여부를 검사한 후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사출한다. 한번 더 이상 유무를 검사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2) 주요 제조공정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1. 어린이용으로 탈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인형용의 차 : 제9503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인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제9503호의 제3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3.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503호의 제1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1. 어린이용으로 탈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인형용의 차 : 제9503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사람모형의 인형 : 제9503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 기타 : 제9503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1.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름다운날 기념품

확산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산업기
특혜 수출입 실적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터키	1.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전거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적용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94
	제품명	조립용 키트
	HS Code	95030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0.5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94-01	FTA-BOM-94-02	FTA-BOM-94-03	FTA-BOM-94-04	FTA-BOM-94-05
	부품명	SANTOPRENE	레신	PE 비닐	전사지	설명서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400299	390319	392310	490890	491110
	HS Code[2007]	400299	390319	392310	490890	491110
	HS Code[2002]	400299	390319	392310	490890	4911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9503.00호에 분류되는 조립용 키트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50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9503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50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9503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조립용 키트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 (HS 제950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85.2\%$$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85.2%로 50%를 초과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SANTOPRENE(FTA-BOM-94-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외산 재료의 투입비율이 39.7%로 낮아지게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95 클레이 샌드 (제9503.0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9503	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클레이 샌드는 아이들이 직접 만지면서 놀 수 있는 장난감용 찰흙으로 티셔츠, 가방, 모자, 액자 등 다양한 모양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클레이를 통해 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독서력을 기르고 두뇌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HS
제9503.00호

품명
클레이 샌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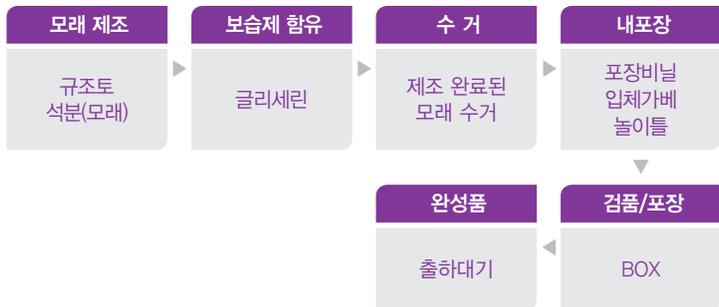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90	-	석분 (모래)
2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45	-	글리세린 99%
3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90	-	규조토 (CELATOM)
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49	-	포장비닐
5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00	-	종이박스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규조토와 모래 등 원재료를 혼합하여 모래를 제조한 후 보습제 오일인 글리세린을 함유시킨다. 제조 완료된 모래를 수거해서 내포장을 하고 입체가베 등의 기구들까지 포장을 한 후 품질 검사를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1. 어린이용으로 탈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인형용의 차 : 제9503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인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제9503호의 제3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3.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503호의 제1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1. 어린이용으로 탈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인형용의 차 : 제9503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시람모형의 인형 : 제9503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 기타 : 제9503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1.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미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터키	1.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전거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원재료 명세서 적용사례

원 재 품	제품 품번	FTA-BOM-95
	제품명	클레이 샌드
	HS Code	95030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2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	FTA-BOM	FTA-BOM	FTA-BOM	FTA-BOM
		-95-01	-95-02	-95-03	-95-04	-95-05
	부품명	모래놀이틀	석분(모래)	글리세린	포장비닐	규조토
	소요량	1	1	0.2	1	0.5
	단 위	EA	Kg	ℓ	EA	Kg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950300	250590	290545	392049	380290
	HS Code [2007]	950300	250590	290545	392049	380290
	HS Code [2002]	950100	250590	290545	392049	38029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HS2002 950100 외 13개 존재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EU 및
한-터키
FTA)

제9503.00호에 분류되는 클레이 샌드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50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9503호가 생산되거나,
-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50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9503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클레이 샌드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950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모래 놀이틀(FTA-BOM-95-01)은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35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50)}{\text{EXW 가격}(880)} \times 100 = 40\%$$

따라서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40%로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96 러닝머신 (제9506.91호)

1 관세율표 분류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 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 등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ing pool)용품
	1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11	스키
	12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19	기타
	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21	세일보드(sailboard)
	29	기타
	3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31	골프채 (완제품으로 한정한다)
	32	골프공
	39	기타
	40	탁구용구
	5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 지에 상관없다)
	51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59	배드민턴 라켓
	6	공 (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호	소호	품명
61	론테니스(lawn-tennis) 공	
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69	기타	
7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9	기타	
91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99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러닝머신은 제자리에서 걷거나 뛸 수 있도록 벨트를 이용한 운동 기구로 천천히 걷기, 조깅 등 자신의 체력수준에 따라 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나 기술향상은 물론 설정된 목표에 알맞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다.

또한 경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실내에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등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날씨나 환경 등 실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없고 실제 도로에서보다 신체가 받는 충격이 적다.

HS
제9506.91호

품명
러닝머신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핵(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 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00	와셔, 소켓
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물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100	박스, 핸들 서포트
3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100	스티커
4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99	100	테이프, 렌치
5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10	100	러닝 벨트
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	100	스플릿
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20	100	보호랩, PP BAND
8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100	라벨, 튜브그립, 가스킷
9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	100	롤러, 베어링
10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100	모터, Incline 모터
11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8504	100	인버터, 트랜스포머, 초크코일
12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בל용 커넥터	8536	100	서킷 브레이커

아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변기
특혜 수출입 실적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3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 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100	케이블, 볼트, 너트
14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90	100	가슴벨트
15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50	오링
16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91	50	쿠션
17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을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50	테입
18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3.00	50	러닝 데크
19	부식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3.12	50	부식포
20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50	Latch Disk
21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인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7317.00	50	아연도금 클립
22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90	50	
2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40	50	레지스터
24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품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90	50	노이즈 필터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원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러닝머신은 하부 프레임과 POST, 상단 프레임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우선 하부의 LEVEL FOOT을 메인프레임에 가조립하고, 메인프레임과 인클라인 프레임을 조립시킨 후 데크 쿠션 및 데크를 조립한다.

롤러와 벨트를 조립하고 모터를 조립한 후 ACTUATOR를 조립하며 인버터와 컨버터, 바디와 커버를 조립하고 배선장치를 연결하면 완성된다. 상부는 PCB와 계기표시물들을 부착하여 배선장치를 연결하고 하단 프레임과 연결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적용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96
	제품명	리닝머신
	HS Code	950691
	EXW(KRW)	880
	FOB(KRW)	910
	중량(kg)	5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96-01	FTA-BOM-96-02	FTA-BOM-96-03	FTA-BOM-96-04	FTA-BOM-96-05
	부품명	메인 프레임	서킷 브레이커	가슴벨트	쿠션	러닝데크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950691	853610	902990	400591	441300
	HS Code[2007]	950691	853610	902990	400591	441300
	HS Code[2002]	950691	853610	902990	400591	44130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9506.91호에 분류되는 러닝머신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506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9506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506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9506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러닝머신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950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메인 프레임 (FTA-BOM-96-01)은 원산지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 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35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61.5\%$$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5%로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97 칫솔 (제9603.21호)

1 관세율표 분류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 청소기·모프와 깃 먼지떨이, 비와 브러시제조용으로 묶였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가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떨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였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2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21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29	기타
	3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40	페인트용·디스텨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5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칫솔은 치약과 더불어 사용되는 구강위생을 위한 도구로 털을 심은 부분의 형태도 볼베이형·스트레이트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구강위생상으로는 현재 스트레이트형이 일반적이다.

치아를 닦는 방법은 회전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 방법을 실시하기 쉽도록 칫솔 자루에 인간공학적인 각도가 주어져 있다.

HS
제9603.21호

품명
칫솔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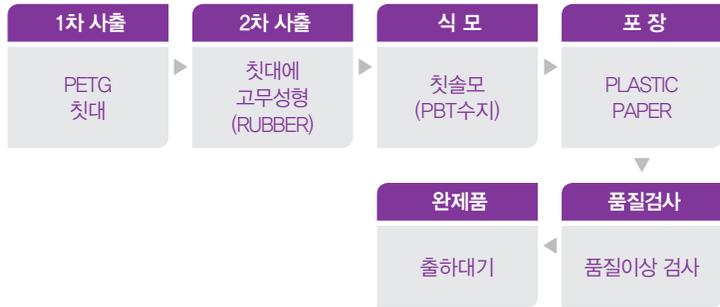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m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m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4.19	66	PBT 칫솔모, 솔
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66	칫솔 손잡이, PP(뚜껑)
3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66	칫솔 포장용 플라스틱, PETG수지
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62	33	PET 성형물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5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 [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백(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33	칫솔대 인쇄용 필름
6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33	LDPE (손잡이)
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19	33	블리스터
8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 [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99	33	합성고무
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40	33	칫솔 포장용 종이패드
10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90	33	종이
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99	33	Ivory 대지
1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47	33	PBT
13	구리의 선	7408.21	33	평선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PETG칩대를 1차로 사출한 다음 칫대에 고무를 성형하여 2차로 사출한다. 사출된 칫대에 PBT수지로 제조된 칫솔모를 식모한 후 종이 등을 이용해 포장을 하고 품질검사를 완료하면 칫솔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1. 비·브러시(담비 또는 다람쥐 털로 제조한 마당비·이와 유사한 것 및 브러시는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만 해당한다)·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1. 비·브러시(대빛자루 및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또는 다람쥐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1. 비·브러시(대빗자루 및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또는 다람쥐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쿠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적용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97
	제품명	칫솔
	HS Code	960321
	EXW(KRW)	880
	FOB(KRW)	910
	중량(g)	5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97-01	FTA-BOM-97-02	FTA-BOM-97-03	FTA-BOM-97-04	FTA-BOM-97-05
	부품명	PET 칫솔 모	칫솔 손잡이	칫솔 포장용 플라스틱	칫솔대 인쇄용 필름	칫솔 포장용 종이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540419	390210	390710	321210	481940
	HS Code [2007]	540419	390210	390710	321210	481940
	HS Code [2002]	540410	390210	390710	321210	48194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9603.21호에 분류되는 칫솔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60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9603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60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9603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칫솔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960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 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17.6\%$$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17.6%로 4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 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PET 칫솔 모(FTA-BOM-97-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5%로 높아지게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PET 칫솔 모(FTA-BOM-98-01)를 역외산물품을 투입하고 나머지 원재료들을 역내산 물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6.0%로 높아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98 화장품 브러시 (제9603.29호)

1 관세율표 분류

제9603호에서 ‘비 또는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이라 함은 수모·식물성섬유 또는 기타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한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바로 비 또는 브러시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선단에 트리밍과 같은 세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호	소호	품명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2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라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품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21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29	기타
	3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40	페인트용·디스탬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5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화장에 쓰이는 브러시를 말하며 크고 끝이 둥글며 부드럽고 유연한 털이 달린 솔로 가루분을 찍어서 바르는 데 사용한다.

HS
제9603.29호

품명
화장용
브러시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100	플라스틱 바디, 헤드, 핸들
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38	박스
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38	포장지, 뚜껑
4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솔(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 [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	25	반제품 헤어브러시
5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90	25	착색도금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6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25	나이론, 헤어모 (모노필라멘트)
7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25	폴리백
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	25	알루미늄 파이프, 튜브
9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	25	페인트
10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 [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19	13	고무 손잡이
11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30	13	ABS 플라스틱
12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13	PVC
13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19	13	인쇄용 잉크
14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k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	13	접착제
15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m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straw)](시 폭이 5m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4.19	13	PBT
16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20	13	METAL

광섬유산업
기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산업기
특혜 수출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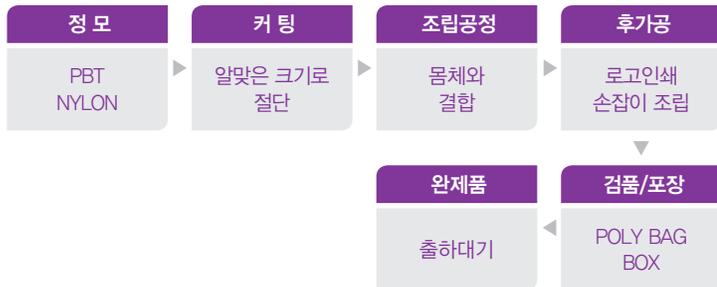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7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13	스텐철사
18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9	13	알루미늄 튜브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다발씩 묶여있는 인조모를 가지런히 정모하는 공정을 거쳐 정모된 인조모를 사이즈에 맞게 기계로 커팅해 주고 커팅한 인조모를 건조하여 몸체와 결합하는 공정을 거친다.

결합된 제품에 로고를 인쇄하는 등의 후가공 작업을 거친 후 포장을 완료하면 완성된다.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1. 비·브러시(담비 또는 다람쥐 털로 제조한 마당비·이와 유사한 것 및 브러시는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만 해당한다),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 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U	1. 비·브러시(대빗자루 및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또는 다람쥐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1. 비·브러시(대빗자루 및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또는 다람쥐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름다운 물품

확신

선유 · 의류 산업

기계 · 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삼번기
특혜 수출입 실적

2) 원재료 명세서 적용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98
	제품명	화장용 브러시
	HS Code	960329
	EXW(KRW)	880
	FOB(KRW)	910
	중량(g)	5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98-01	FTA-BOM-98-02	FTA-BOM-98-03	FTA-BOM-98-04	FTA-BOM-98-05
	부품명	헤어모	알루미늄 파이프	플라스틱 바디	착색도금	고무 손잡이
	소요량	1	1	1	2	1
	단 위	EA	EA	EA	g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540211	760810	392690	382490	400219
	HS Code [2007]	540211	760810	-	-	400219
	HS Code [2002]	540210	760810	-	-	400219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12년 신설	12년 신설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9603.29호에 분류되는 화장용 브러시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603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9603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603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9603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화장용 브러시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 (HS 제960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 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17.6\%$$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17.6%로 4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 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헤어 모(FTA-BOM-98-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5%로 높아지게 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헤어 모(FTA-BOM-99-01)를 역외산물품을 투입하고 나머지 원재료들을 역내산 물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6.0%로 높아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99 마커 (제9608.20호)

1 관세율표 분류

제9608호에는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 팁으로 된 펜 및 마커(만년필형의 것 포함), 만년필·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펌프·카트리지·플러저·진공식 등)(펜촉 또는 포인트의 유무를 불문한다), 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 홀더, 펜슬 홀더 및 이와 유사한 홀더(예 : 크레용용 홀더·회화용 목탄의 홀더) 등을 분류한다.

호	소호	품명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 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볼펜
	20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30	만년필, 스틸로그래프 펜과 기타의 펜
	40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60	볼펜용의 심 (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9	기타
	91	펜촉과 납포인트
	99	기타

HS
제9608.20호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품명
마커



펠트(felt) 천을 사용한 펜의 일종으로 디자인 작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용구이다. 크기나 색의 종류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러프스케치는 물론 완성도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전 단계에 활용된다.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과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90	100	잉크, 염료
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50	폴리프로필렌
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20	25	필름
4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50	25	PVC
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25	
6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90	25	포장카드
7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comania)]	4908.90	25	전사라벨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20	25	에틸 알코올
9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3821.12	25	전사인쇄필름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용기의 원자재인 PP를 이용하여 몸통, 캡 등을 사출하며 여기에 상품라벨을 전사한다. 용기 몸체에 필터를 조립하고 내용물을 주입한 후 잉크가 충전된 용기에 NIB를 조립한 후 제품을 지정된 사양으로 개별 또는 묶음 포장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사용 될 수 있다.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사용 될 수 있다.

2) 원재료 명세서 적용사례

원재료 명	제품 품번	FTA-BOM-99
	제품명	마커
	HS Code	96082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g)	20

원재료	부품 품번	FTA-BOM-99-01	FTA-BOM-99-02	FTA-BOM-99-03	FTA-BOM-99-04	FTA-BOM-99-05
	부품명	촉	잉크	폴리프로필렌	전사필름	포장카드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 [2012]	960810	321590	390210	481690	482390
	HS Code [2007]	960810	321590	390210	481690	482390
	HS Code [2002]	960810	321590	390210	481690	482390
	원산지	역내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9608.20호에 분류되는 마커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608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 으로부터 HS 제9608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608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9608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마커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9608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축((FTA-BOM-99-01))은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 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35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3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61.5\%$$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5%로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100 화장용 스펀지 (제9616.20호)

가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섬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를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1 관세율표 분류

제9616호에는 향수·향유 및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분무기, 화장용 분무기의 마운트, 화장용 분무기의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안면 분첩·연지·활석분첩 등) 등이 분류된다.

호	소호	품명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20	화장용 분첩과 패드

2 물품의 특징 및 용도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바르기 위해 사용하는 스펀지로 얼굴에 직접 닿기 때문에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 피부에 닿아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HS
제9616.20호

품명
화장용
스펀지



3 주요 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1) 주요 자재명세서

연번	HS 품명	HS	비중(%)	세부품명
1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 [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	100	라텍스
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	75	Antioxdant
3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50	다반
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50	스폰지
5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6.20	25	규불화소다
6	유기-황화합물	2930.20	25	EZ
7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20	25	MZ
8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1	25	염료
9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90	25	Cosmetic Applicator Handle
10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클로이드황	2802.00	25	Sulphur
11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5.12	25	Coagulant Agent
12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25	실
13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5.19	25	원단
14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90	25	라벨

* 비중(%)=해당원재료 사용업체 수/완제품 총 제조업체 수×100

2) 주요 제조과정



원재료인 라텍스와 합성고무 등을 배합한 후 촉매제를 통하여 발포 공정을 거친 후 이를 긴 통 형상의 몰딩에 넣어 1차 제품 형상을 갖추게 하고 적절한 온도로 가열한다.

개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제품을 알맞은 크기로 절단하고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연마 공정을 거치고 검품 및 포장하여 완제품을 완성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1)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FTA관세특례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인도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원재료 명세서 적용사례

완 제 품	제품 품번	FTA-BOM-100
	제품명	화장용 스펀지
	HS Code	961620
	EXW(KRW)	880
	FOB(KRW)	910
	중량(g)	10

원 재 료	부품 품번	FTA-BOM-100-01	FTA-BOM-100-02	FTA-BOM-100-03	FTA-BOM-100-04	FTA-BOM-100-05
	부품명	라텍스	다반	스펀지	염료	실
	소요량	1	1	1	1	1
	단 위	EA	EA	EA	EA	EA
	업체코드	A-001	A-002	A-003	A-004	A-005
	업체명	A-001	A-002	A-003	A-004	A-005
	구매단가(KRW)	400	100	100	50	100
	HS Code[2012]	400211	340211	392111	320411	540110
	HS Code[2007]	400211	340211	392111	320411	540110
	HS Code[2002]	400211	340211	392111	320411	540110
	원산지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역외산
	비 고	-	-	-	-	-

3) 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

제9616.20호에 분류되는 화장용 스펀지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616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9616호가 생산되거나,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9616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HS 제9616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 화장용 스펀지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 (HS 제961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② 공제법에 따라 계산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40% 이상 이어야 한다.
- 공제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FOB가격이 910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750(400+100+100+50+100)이다.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frac{\text{FOB 가격}(910)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750)}{\text{FOB 가격}(910)} \times 100 = 17.6\%$$

따라서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17.6%로 4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 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경우 라텍스(FTA-BOM-100-01)를 원산지물품으로 대체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61.5%로 높아지게 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라텍스(FTA-BOM-101-01)를 역외산물품을 투입하고 나머지 원재료들을 역내산 물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이 56.0%로 높아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40%를 초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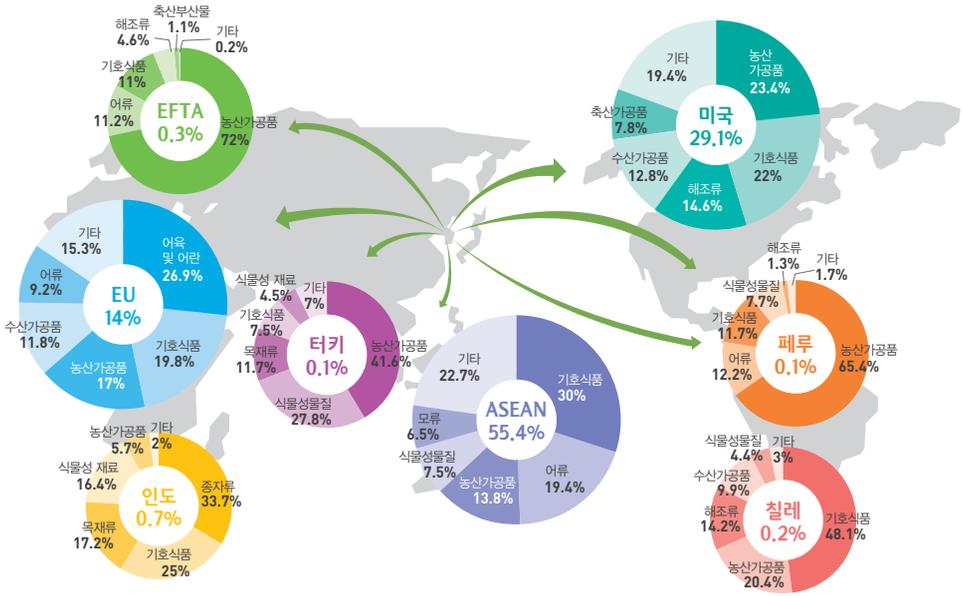
부록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수출 (농수산물 가공식품)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566,668 (5%)	11,705,812 (95%)	12,272,480 (100%)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 수출금액

총액 566,668.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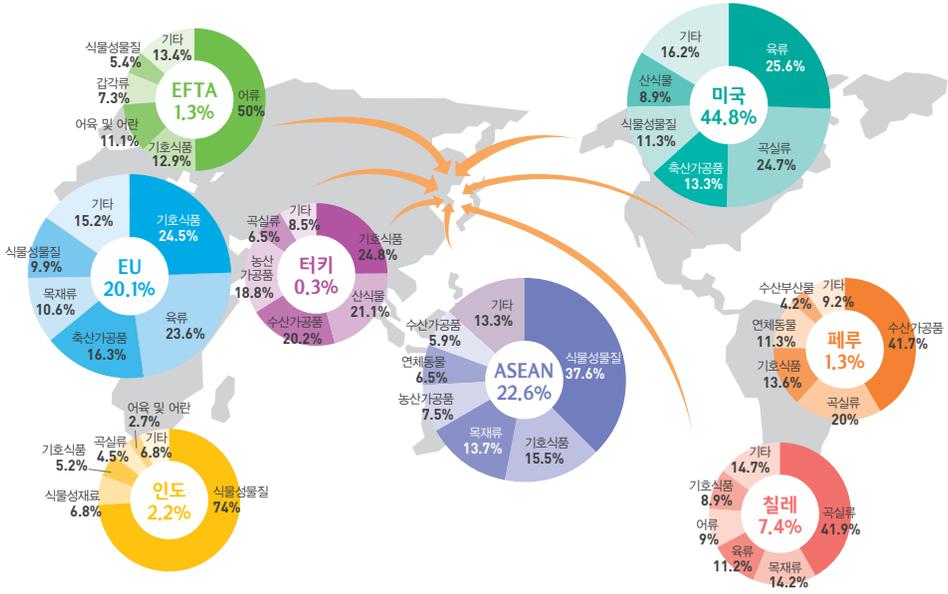
ASEAN	314,153,285
미국	164,720,856
EU	80,414,516
인도	3,811,837
EFTA	1,637,204
칠레	945,895
터키	611,270
페루	373,586

농림수산물 특혜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호식품	148,148.624	26.1
2	농산가공품	97,937.947	17.3
3	어류	72,568.861	12.8
4	해조류	44,582.242	7.9
5	수산가공품	37,435.510	6.6
6	식물성 물질	25,977.990	4.6
7	어육 및 어란	25,750.148	4.5
8	축산가공품	24,231.329	4.3
9	식물성 재료	22,861.001	4.0
10	모류	20,581.159	3.6
총계		566,668.449	100.00

수입 (농수산물 가공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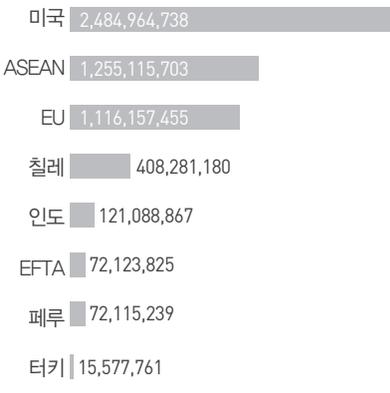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5,545,425 (10%)	51,092,083 (90%)	56,637,508 (100%)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 수입금액

총액 5,545,424,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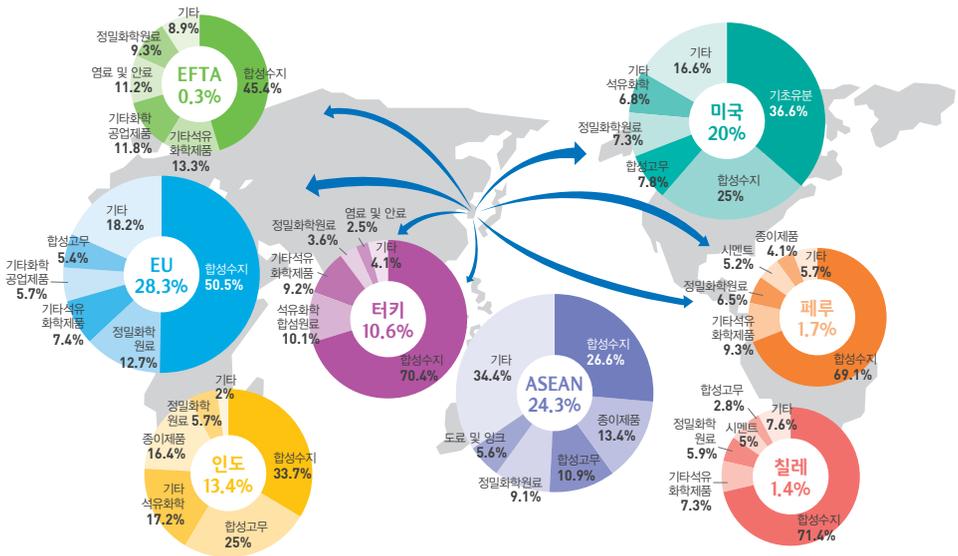
농림수산물 특혜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식물성 물질	958,483,093	17.3
2	유류	944,737,793	17.0
3	곡식류	829,815,765	15.0
4	기호식품	718,263,795	13.0
5	축산가공품	536,809,871	9.7
6	목재류	380,012,553	6.9
7	산식물	274,143,321	4.9
8	농산가공품	254,840,895	4.6
9	수산가공품	164,807,231	3.0
10	연체동물	110,467,417	2.0
	총계	5,545,424,768	100.00

수출 (화학산업)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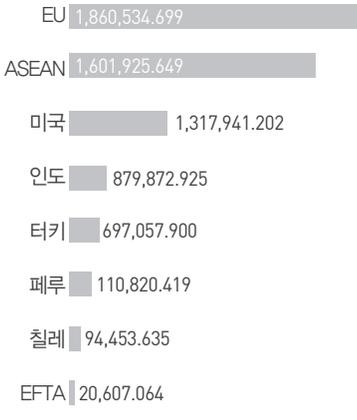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6,583,213 (5%)	114,978,628 (95%)	121,561,841 (100%)

협정별 화학산업 특혜 수출금액

총액 6,583,213.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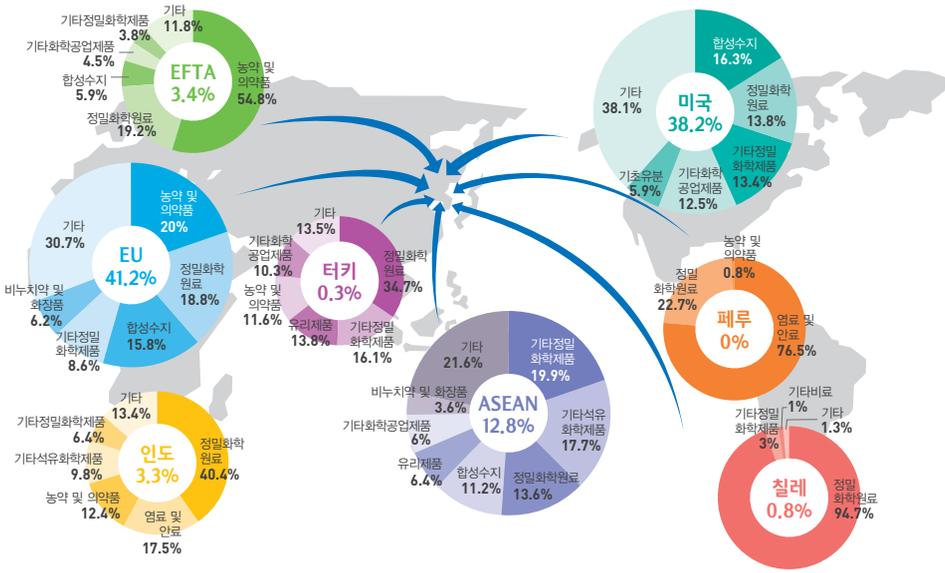


화학산업 특혜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합성수지	2,558,090.753	38.9
2	정밀화학원료	582,078.856	8.8
3	합성고무	560,928.864	8.5
4	기타 석유 화학제품	529,667.746	8.0
5	기초유분	517,545.271	7.9
6	종이제품	365,011.179	5.5
7	기타 화학공업제품	228,774.254	3.5
8	농약및의약품	196,371.814	3.0
9	기타 정밀 화학 제품	165,998.334	2.5
10	석유화학합성원료	150,710.616	2.3
총계		6,583,213.493	100.00

수입 (화학산업)



단위: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7,018,189 (8%)	84,778,459 (92%)	91,796,648 (100%)

협정별 화학산업 특혜 수입금액

총액 7,018,189.110

EU	2,892,628.866
미국	2,681,547.913
ASEAN	897,880.163
EFTA	240,022.077
인도	229,869.745
칠레	54,671.303
터키	20,482.566
페루	1,086.477

화학산업 특혜 수입품목순위

단위: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정밀화학원료	1,234,559.734	17.6
2	합성수지	1,016,583.947	14.5
3	농약 및 의약품	897,426.446	12.8
4	기타 정밀 화학제품	813,835.238	11.6
5	기타 화학 공업제품	585,625.274	8.3
6	기타 석유 화학제품	478,859.063	6.8
7	비누 치약 및 화장품	366,515.394	5.2
8	염료및안료	320,310.518	4.6
9	유리제품	205,762.882	2.9
10	기초유분	187,599.943	2.7
총계		5,545,424.768	100.00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화학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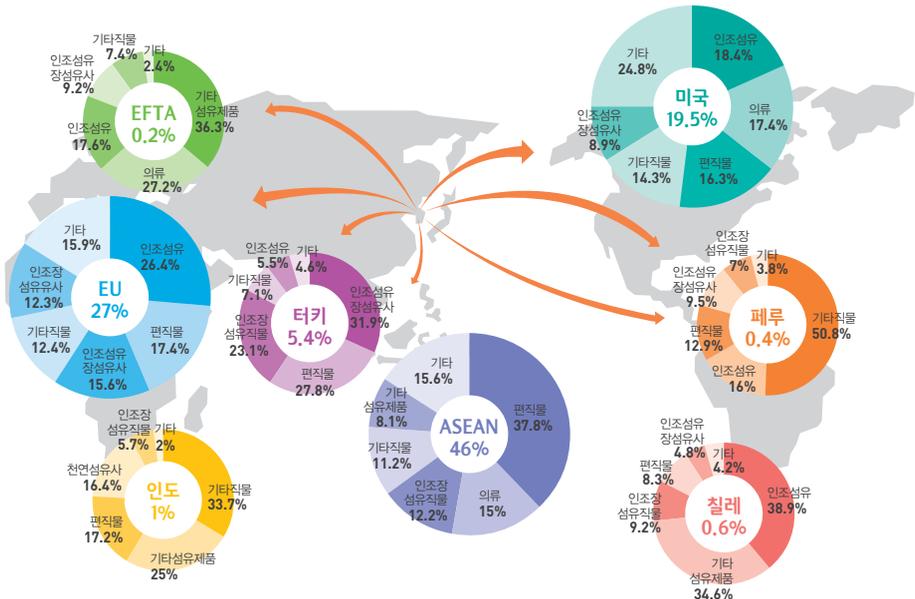
석유·의류 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지도로 보는 2014 상반기
특혜 수출입 실적

수출 (섬유·의류 산업)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518,319 (9%)	24,741,481 (91%)	27,259,800 (100%)

협정별 섬유류 특혜 수출금액

총액 2,518,319.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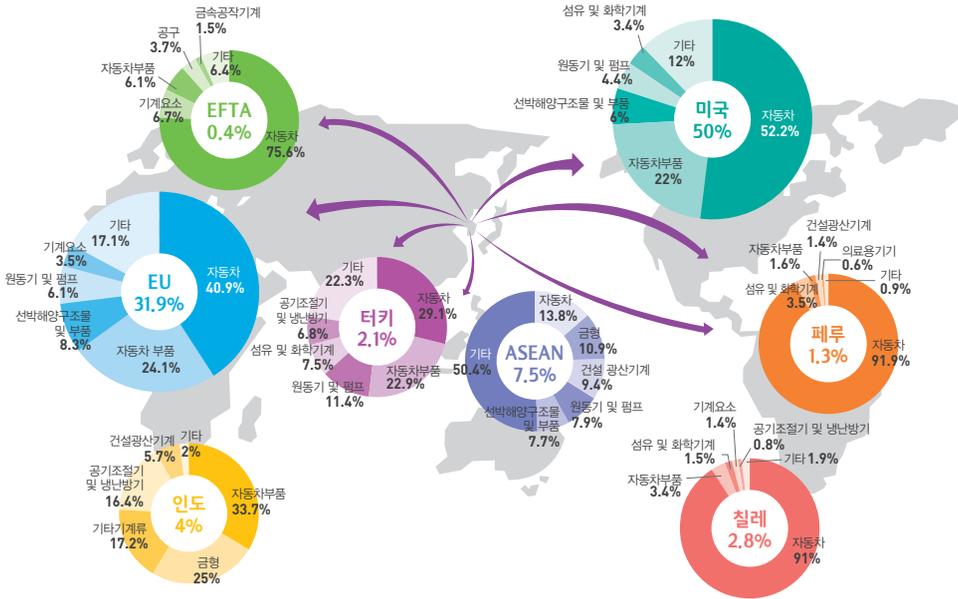
섬유류 특혜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면직물	679,243.689	27.0
2	인조섬유	312,266.413	12.4
3	의류	312,201.403	12.4
4	기타직물	308,601.753	12.3
5	인조장 섬유직물	293,422.364	11.7
6	인조섬유 장섬유사	230,177.517	9.1
7	기타섬유제품	194,641.886	7.7
8	면직물	73,187.900	2.9
9	인조단섬유직물	39,310.507	1.6
10	재생섬유	33,907.378	1.3
총계		2,518,319.104	100.00

수출 (기계·자동차 산업)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국가의 비중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4,519,052 [8%]	271,711,417 [92%]	296,230,469 [100%]

협정별 기계·자동차류 특혜 수출금액

총액 24,519,05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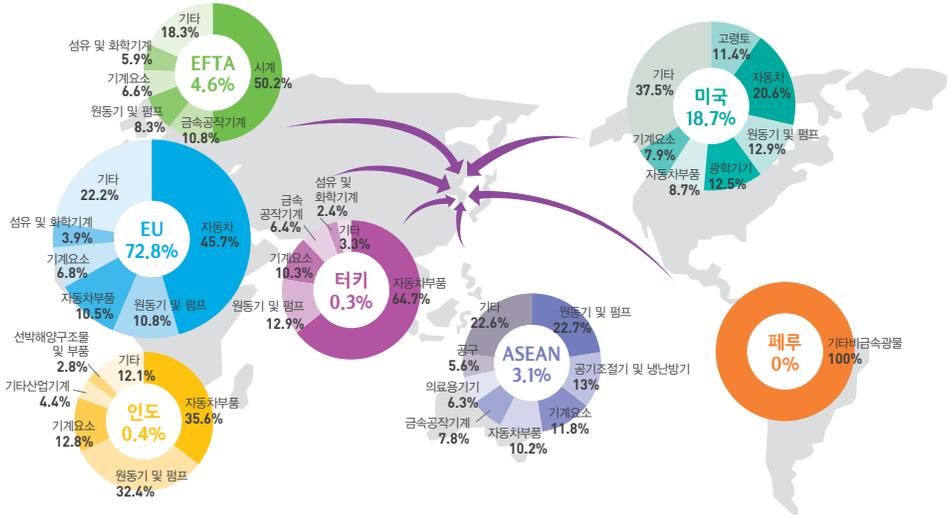
미국	12,247,558.239
EU	7,825,631.335
ASEAN	1,845,880.693
인도	991,863.336
칠레	685,355.788
터키	518,106.982
페루	314,744.625
EFTA	89,910.802

기계·자동차류 특혜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10,983,399.452	44.8
2	자동차부품	5,322,577.241	21.7
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526,297.453	6.2
4	원동기및펌프	1,235,629.766	5.0
5	기계요소	689,182.589	2.8
6	건설광산기계	684,521.217	2.8
7	섬유 및 화학기계	662,557.729	2.7
8	금속공작기계	583,689.825	2.4
9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574,220.661	2.3
10	금형	573,240.943	2.3
총계		24,519,051.800	100.00

수입 (기계·자동차 산업)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8,733,612 [8%]	102,034,473 [92%]	110,768,085 (100%)

협정별 기계·자동차류 특혜 수입금액

총액 8,733,611.809

EU	6,361,797.581
미국	1,633,641.838
EFTA	400,551.627
ASEAN	272,351.397
인도	38,069.506
터키	27,199.860
칠레	0
페루	0

기계·자동차류 특혜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3,246,817.442	17.3
2	원동기 및 펌프	1,007,473.533	17.0
3	자동차부품	874,050.988	15.0
4	기계요소	626,620.783	13.0
5	금속공작기계	336,121.629	9.7
6	광학기기	332,622.964	6.9
7	섬유 및 화학기계	329,953.944	4.9
8	기타기계류	314,098.685	4.6
9	시계	204,568.291	3.0
10	의류용기기	192,413.818	2.0
총계		5,545,424.768	100.00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

통합 편

발 행 일 2015년 1월

발 행 처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28 / FAX 042)481-7753
<http://fta.customs.go.kr>

편 집 인 이명구 FTA 집행기획관
제영광 FTA 집행기획 과장
정재호 사무관
고현주 행정관

디자인·인쇄 아미고디자인
www.amigodesign.co.kr
Tel. 02)517-5043

이 책의 저작권은 관세청에 있습니다. 본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FTA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28 / Fax. 042-481-7753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